연구보고서 2021-12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 방안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 손 태 주 | 라 해 문 | 이 해 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12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 방안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손태주(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라해문(마을문화기획가·제주도 마을만들기위원회 위원)
이해응(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기 간 : 2021년 5월 ~ 11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발 간 사

최근 제주지역 행정리 단위의 일부마을에서는 전통 지역사회의 자치규약인 마을운영규약을 여성 대표성 제고와 성별 불평등 해소 등 기본방향에서 성평등 마을규약으로 개정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면·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이 운영하는 지역을 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성 주류화 전략으로 여성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개인적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전환하여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9년부터 마을여성의 대표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민주적 마을 운영을 위한 주민의 의무와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성평등 방향으로 마을운영 기반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리 단위 작은 마을에서의 성평등은 성별을 이유로 능력이나 역할이 고착되는 의식과 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일 생활권에 사는 주민들끼리 '동등한 파트너'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여성 역할과 가치 인식을 공유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마을운영 기반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성평등마을을 '모든 주민이 민주적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며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생활공간'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도출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9~2020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8개 마을의 시범사업 TF팀 등 참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 및 자치회원 등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주지역에서의 성평등마을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연구책임을 맡은 손태주 연구위원, 공동 참여해 주신 이해응 연구위원과 라해문 마을문화기획가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 관계자분들과 시범마을별 리사무소의 이장님, 사무장님 외 관계자분들, 그리고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보고서가 제주 사회에 성평등 마을을 확산해 나가는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 무 숙**

연구 요약

연구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제주지역 행정리 단위의 일부마을에서는 전통 지역사회의 자치규약인 마을규약을 성평등마을규약으로 개정하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성별 불평등 해소 등의 기본 방향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마을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11~2015) 수립과 함께, 2011년 12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은 이후 2020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2021년 재지정 신청 시점에 놓여 있음

○ 이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제주여민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연합회가 추진사업단을 만들어 마을의 부녀회를 중심으로 성평등마을규약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추진해 왔음. 그 결과, 2019년 전국 최초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을 마련하고 마을에서부터 일상 구조에 성평등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음. 향후 성평등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점검을 통한 개선 방향 등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 자료를 검토하여 성평등마을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범마을의 마을운영규약 및 인구현황 검토, 지역의 생활여건 실태 분석, 시범사업 TF팀 등 참여자 대상 FGI 및 자치회원 등 주민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안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성평등마을 개념 정의 및 관련 정책 고찰, 제주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진단
- 제주도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사례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 제주지역의 성평등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2019~2020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참여 8개 마을 사례조사를 위해 사업 TF팀 등 참여자 대상 FGI 및 주민 대상 설문조사, 관계자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제2장 성평등마을 정의 및 관련 정책 고찰

1. 마을에서 성평등 관련 이슈

○ 마을은 일상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삶의 공간임. 생활공간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접근은 여성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강조하고 민주적 절차 등에 따라 재구성하며, 마을운영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을문화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함

○ 정부차원에서도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통하여 성별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제도적·정책적 노력은 이루어져 왔지만, 현실적으로 정치·경제·행정·사회·문화의 제반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조연숙, 2015)

○ 마을이 지속되는 한, 변화하는 마을의 새로운 가치를 담은 마을규약의 제·개정은 물론 모든 연령과 계층, 세대가 평등하게 존중 받고 민주적인 자치의 힘을 배양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임(현혜경·라해문, 2021)

○ 결과적으로 성평등마을은 마을의 오래된 전통을 살리면서도 마을의 모든 일에 대해 모든 이들이 민주적 참여와 절차를 존중하는 마을로의 변화를 실천해 나가는 것임. 이를 위한 마을에서의 성평등 관련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남성중심의 경제·사회적인 권리 구조

○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전반에서 동등한 파트너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조연숙, 2015). 그러나 여전히 생활공간인 마을 현장에서 사회문화적으로 남아있는 관습 등은 성별 불평등한 구조인 경향이 있음

○ 특히 제주마을의 규약은 매우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마을의 전통과 문화가 결집된 공동체의 산물이자 약속 또는 규율로서 주민 권리가 부여되지만, 세대주 중심으로 주민의 자격은 물론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현혜경·라해문, 2020)

○ 따라서 성평등마을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남성이 중심이 된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정 공동체 구조에서 주민 모두의 권리와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인식 공유가 필요함. 이와 함께 성평등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

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

○ 마을의 의사결정체계는 마을자치의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서 심의와 의결 구조로 되어 있으며, 마을이라는 공간적 범위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 간의 협의와 주체적 결정으로서 민주적 통제의 수단임(현혜경・라해문, 2020)

○ 특히 제주의 '괸당' 문화는 남성중심, 위계질서로 대표됨. 대부분 개발위원회, 마을총회, 자치회 등에는 부녀회를 제외하면 모두 남성 중심임.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역시 남성 중심으로 민주적인 방식보다는 연장자의 결정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강함. 이런 특성으로 인해 마을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에 부녀회장 자격의 당연직 참여를 제외하면 주민의 권리를 가진 여성이라도 의견 반영이 어려움

○ 따라서 마을에서 각종 위원회의 성별 현황, 대표자 선출 기준과 절차, 임기 등을 파악하고,「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근거로 마을운영체계에서 여성들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여성할당 등 정책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다. 이분법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참여 구조

○ 생활공간인 마을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다양한 공적・사적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여성은 가정에서 돌봄과 가사를 책임지는 역할의 연장선에서 마을 일에 참여하는 방식에서도 그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음. 이 같은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리사회에서 잔존하는 가부장적 문화와 연관되어 있음

○ 특히 제주지역 행정리 단위의 마을은 가정과 일터 간의 경계가 애매하고, 제주 특유의 공동체 문화인 '괸당' 문화가 형성되어 가족과 동네 이웃 등과의 강한 결속력을 보이게 됨. 이로 인해 대소사가 얽히는 문제가 생김. 마을 대소사와 행사는 품앗이와 유사한 제주의 '수눌음' 정신인 상부상조의 협업체계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많은 것들을 나누고 돌보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오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성평등마을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주민 권리의 문제를 넘어 민주적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마을운영규약 등에 그 내용을 담고, 마을여성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서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차별적 의식과 관행이 없도록 성평등마을로 지역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2. 성평등마을 관련 법·제도 검토 및 개념 정의

가. 성평등마을 관련 법·제도 검토

○ 양성평등에 대해「양성평등기본법」제3조 1항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함. 이를 적용하기 위해 지역성평등지수는「양성평등기본법」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3항에 따라 '성평등 사회 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3개 정책영역으로 구성하고 수치화함

○ 지역성평등지수 측정결과, 제주는 16개 시·도 중 2015~2016년 중상위 지역으로 상승한 이후부터 2017~2019년까지 상위지역임. 분야별로 보면, '성평등 사회참여' 영역의 의사결정(10위), 교육·직업훈련(9위) 분야,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안전 분야(15위),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문화·정보 분야(6위)는 중하위수준임

○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의 성주류화 전략으로서,「양성평등기본법」제39조를 근거로 2021년 현재 모두 96개 시군구에 이르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에「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4항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사업화하여 돌봄의 사회적 분담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함

나. 성평등마을의 개념 정의

○ 성평등 관련 법·제도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과거와는 다르게 지자체의 역할과 범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내의 사회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의식을 공유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역정책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임

○ 무엇보다 제주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기본계획에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및 가치증진' 과제에 '여성친화(성평등)마을 조성 확산' 사업을 제시하였음

○ 특히 마을이라는 맥락에서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같거나 같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전반에서 '동등한 파트너'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새로운 가치로서의 실천적 의미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성평등마을이란 '모든 주민이 민주적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는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생활공간'이라고 정의**하고자 함

3. 소결: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분석 방향 도출

○ 선행연구, 관련 법·제도 검토 및 성평등마을 개념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성평등 규약 시범마을 사례 탐색을 위한 구성요소는 성평등 가치를 공유하는 방향에서 '민주적 마을운영 기반 구축', '마을공동체 및 주민 역량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환경 조성',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등으로 정함

- '민주적 마을운영 기반 구축'은 마을을 성평등 인식이 공유되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마을규약 내용 검토 및 개선 등과 관련이 있음
- '마을공동체 및 주민 역량강화'는 마을에서 성평등 이슈를 개선하고 민주적 마을 운영을 위해 성평등 관점의 사고와 시각을 갖춘 사람들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음
-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환경 조성'은 차별적 요소와 위험요소가 없고 자연감시 기능이 가능한 여성친화적인 물리적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 주체들을 연결하여 주는 소통의 통로를 말하는 것으로 상호 연대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음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현황

1.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사업 추진 현황

가.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제주여민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연합회(이하 전여농제주도연합)가 추진사업단을 만들어 마을의 부녀회를 중심으로 '성평등마을규약'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진행된 사업임(제주여민회, 2019)

〈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을 위한 연도별 추진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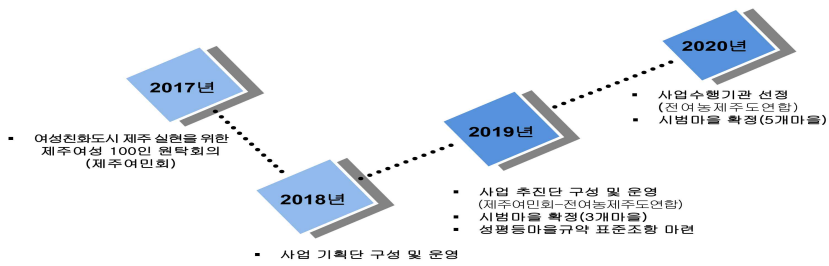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단을 운영함(제주여민회, 2019)

- 사업추진단은 제주여민회와 행정리 단위 회원이 집중되어 있고 마을 내 여성과소대표성 문제에 대한 현장 이해도가 높은 전여농제주도연합과 컨소시엄을 맺고 운영함

○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은 마을규약에서 필요 조항들만 추려서 조항 수준으로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도출함. 표준조항은 목적 조항, 주민권리 조항, 주민의무 조항, 의결권·선거권 조항, 마을임원 조직 조항의 5개 조항으로 구성·제시함

〈 제주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목적’ 조항	‘주민권리’ 조항	‘주민의무’ 조항	‘의결권·선거권의 평등’조항	‘마을임원 조직’ 조항
주민 스스로가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규정	마을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권리	연령·성별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의무 및 마을 내 인권문제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마을내 의결권·선거권은 1인 1표를 기본으로 설정	개발위원회 구성 시 남녀 평등한 참여를 위해 위촉직 개발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

○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을 시범마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반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자 부녀회를 위한 마을 성평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과정 속에 마을규약안을 작성해보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성함(제주여민회, 2019)

- 성평등 프로그램 기획안의 내용에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여성영화 감상 및 소감나누기, 퍼실리테이팅 워크숍 및 부녀회 모의 임시회의 등 총 3회로 구성되어 있음

○ 시범마을은 2019년에는 대정읍 신도3리, 한림읍 한림3리, 성산읍 신산리 등 3개 마을이, 2020년에는 대정읍 신도1리, 한림읍 금악리, 구좌읍 월정리, 성산읍 난산리 등 5개 마을이 선정됨. 즉, 2019~2020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을은 총 8개 마을임

○ 시범마을이 선정된 이후에는 마을별로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사전 협의를 해나갈 활동 주체로 이장, 부녀회장과 부녀회원 2명을 추천받아 TF팀을 구성하고, 시범마을별 성평등마을규약 부녀회(안) 만들기를 총 3단계 과정으로 추진함

○ 이상의 과정을 통해 성평등규약 표준조항안은 시범마을에 참여했던 각 마을별

총회에 상정되었음. 그 결과, 마을주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2021년 9월 현재기준, 대정읍 신도3리, 신도1리와 한림읍 한림3리, 안덕면 대평리가 양성평등한 권리 혹은 여성비율 30% 이상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을규약이 개정되었음

○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과 제주마을운영규약 개선방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및 제주마을운영규약 개선방안 비교 〉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2019) [제주여민회(2019)]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개선방안(2020) [제주연구원(2020)]
	① 개념의 정의와 이해 마을, 마을주민 마을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필요
① '목적' 조항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리 행정과 마을 자치의 구분** 행정 보조 업무 및 서비스 전달 역할의 마을과 주민자치조직으로서 마을 구분 필요
② '주민권리' 조항 마을 여성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확보하도록 참여권·발언권 명시에 관한 사항	**③ 주민과 마을회원의 자격 구분** 주소와 거소를 비롯하여 참여 의사, 회원 가입과 소멸 절차를 통해 주민자격 구분 필요
③ '주민의무' 조항 관습적 차별을 극복하기 이한 배려·존중 의무 여성 등 마을 내 사회적 약자 보호 의무 추가에 관한 사항	
④ '마을 임원 조직' 조항 여성이 과소 대표되는 개발위원 등 여성참여율 증대에 관한 사항	**④ 마을총회 및 마을기구의 심의 의결의 명확성** 주민자격을 기준으로 총회 성립 필요. 마을 운영 전반과 특별사업 위원회 구분 필요
⑤ '의결권·선거권의 평등' 조항 마을 여성들의 의사 반영 현실화를 위해 1세대 1표 대신 1인 1표 기본 설정 관한 사항	**⑤ 선거권 및 피선거권, 평등의 원리** 주민 권리와 연동, 선거권·피선거권에서 평등의 원리 적용
	⑥ 마을자산관리와 청구자격의 분리 마을자산성립의 기원과 구분에 따른 청구 자격의 구분 필요
	⑦ 새로운 미래 가치 전통과 문화의 조화, 환경권, 성평등권, 세대 계층, 자치성 등 새로운 미래 가치 반영 필요

나.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인구 및 마을규약 현황

○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2019년과 2020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대정읍 신도3리 신도1리, 안덕면 대평리, 한림읍 한림3리 금악리, 구좌읍 월정리, 성산읍 신산리 난산리 등 총 8개 마을의 인구 현황과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별 전체 인구 중 여성 비율은 8개 마을 모두 제주도 전체 인구의 여성비율(49.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인구 및 여성비율 현황(단위: 명, %) 〉

구 분			인구(비율)	여성	여성비율(%)
제주시	한림읍		21,249(100.0)	10,363	48.8
		금악리	1,097(5.2)	520	47.4
		한림3리	165(0.8)	81	49.1
	구좌읍		15,546(100.0)	7,555	48.6
		월정리	740(4.8)	360	48.6
서귀포시	대정읍		21,764(100.0)	11.206	51.5
		신도1리	353(1.6)	172	48.7
		신도3리	229(1.1)	106	46.3
	성산읍		15,412(100.0)	7,354	47.7
		난산리	543(3.5)	249	49.1
		신산리	1,223(7.9)	600	45.9
	안덕면		11,982(100.0)	5,808	48.5
		대평리	551(4.6)	273	48.5

○ 성평등규약시범마을 규약 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9월 현재 4개 마을이 성평등 조항을 반영한 마을규약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1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음

○ 주민 선거권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인 1표 금악리, 신도3리, 대평리 난산리 등 4개 마을, 1세대 1표 1개 마을이 있고, 신산리는 대의원에게만 투표권이 있음. 마을규약에서 투표권의 투표유형을 확인할 수 없는 마을도 2개 마을임

○ 주민총회 다음으로 마을의 최고 의결기구는 개발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임

○ 시범마을의 성평등규약개정 사항 중 여성위원의 40% 이상 의무 구성 여부를 반영한 마을을 살펴보면, 신도1리와 신도3리가 여성위원 30% 이상 개발위원, 운영위원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다. SWOT 분석을 통한 제주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현황 진단

○ 앞서 검토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 및 시범마을규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범마을의 규약개정은 8개 마을 중 4개 마을이 성평등 조항을 반영한 마을규약 개정을 완료하여 마을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와 양성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남.

그러나 규약개정 논의 중 핵심 쟁점인 여성위원 40%이상 의무 구성 사항 관련 해서는 실제 위원구성과 운영으로 실행한 마을이 1개 마을에 불과함

○ SWOT 분석을 통한 제주지역의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을 진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주지역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사업 SWOT분석 〉

S (강점) · 행정-여성단체-마을 간의 협력을 통한 성평등 제도 개선 노력 · 전국 최초 성평등마을규약 표준 조항 마련 등 가시적 성과 도출 · 제주도정의 지역 성주류화 정책 확산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 및 제주도비 투입 및 지원 · 시범사업 과정에서 역량이 향상된 주민과 공동체 연대체계 기반 형성	W (약점) · 성인지 역량 갖춘 마을 활동 인적 자원 부족 · 보조금사업 방식의 행정주도 민간 단체 지정 사업 추진 구조 · 성평등 가치 지향 및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마을사업 관련 유관 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미약
O (기회) · 성평등 이슈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증가 및 소통기반 마련 ·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신설 이후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증가 · 시범마을 참여자 및 관련 단체와의 외연확장 등 네트워크 구축	T (위협)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마을 인구 구조의 변화 · 마을운영에 참여할 청장년 연령대 부족 및 공동체 붕괴 우려 · 주민공동체 형성 미약 및 주민 참여 인적자원 기반 취약

2. 제주마을의 여성 대표성 및 지역 생활 여건 실태

가. 제주 마을리더의 여성 대표성

○ 2019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이장 총 172명 중 여성 이장은 4명(2.3%)뿐이고, 통장 총 568명 중 여성 통장 비율은 38.7%로 나타나, 마을단위의 행정 의사결정구조의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이해웅 외, 2020)

나. 제주 지역 생활 여건 실태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주변 환경의 안전 및 가족친화 환경, 지역사회 활동 여건 등은 제주거주 만 18세 이상 도민 1,045명 대상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에 대한 수요조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0) 결과를 참고하여 관련 내용 중심으로 재분석하여 살펴봄

- (**안전 여건**)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 안전 여건에 대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안전하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고, 여성 집단 및 남성 집단 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 서비스나 장치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불안 여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불안한 환경 여건을 살펴보면, 서귀포시 동부읍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특히 여성 집단 내에서 제주시 동부읍면이 5.16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 지역에서의 성별격차(여성-남성)는 3.56점으로 여성들의 불안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가족친화 여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가족친화 여건(7점 만점)은 대체로 불충분하다고 인식함. 특히 제주시 서부읍면 여성 2.80점, 남성 2.50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 지역에서는 '여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 활동 여건)**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의 전반적인 여건(7점 만점)을 살펴보면, 여성 집단 및 남성 집단 모두 제주시 서부읍면 여성 3.01점, 제주시 서부읍면 남성 2.78점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제주시 동부읍면과 서귀포시 서부읍면은 '주민 중심의 다양한 공동체·마을모임'을, 서귀포시 동부읍면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3. 소결 및 시사점

❍ **첫째, 민주적 마을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 제주지역 동일 생활권 기반의 행정리 마을은 현재 고령화와 같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참여 인적자원 기반 약화, 주민공동체 형성 미약, 문화·여가 편의시설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성평등마을 조성 과정에서는 각 마을별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 성인지 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 **둘째, 소통과 연대가 가능한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을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해 오면서 2019년에는 제주여민회-전여농제주도연합의 컨소시엄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 민관 협력 방식으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향후 성평등마을 조성과정에서 역량이 향상된 주민이 활동가로서 경험을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행정 및 관련 기관들과의 연대체계 강화가 필요함

제4장 제주지역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사례 탐색

1.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는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9~2020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8개 각 시범마을별 의결기구, 자생단체, 주민 등 총 120명 대상으로 2021. 8. 11. ~ 9. 25. 간에 진행함

○ 생활복지 시설 유무 및 접근성 수준

- '생활복지 시설이 마을에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마을회관'과 '경로당' 100%로 나타났고, 이어서 '복지회관' 72.5%, '약국' 11.7%, '여성회관' 7.5%, '돌봄시설'과 '보건지소' 각 3.3% 순, '병·의원' 0%임

○ 마을에서 겪는 어려움_성별

- '현재 마을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건강시설 여건이 불편하다' 37.9%로, 남성은 '문화, 여가,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다'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마을에서 폭력 발생 시 대응

- '마을에서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53%) 남성(55.6%) 모두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여성 '잘 모르겠음' 16.7%**, 남성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 14.8%로 나타남
- 이는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의 '주민의무 조항'에 마을 내 인권문제(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폭력 등)발생 시 주민회원 누구나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의무와 관련하여 성평등 마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모색 필요**함

〈 마을에서 폭력 상황 시 대응 _ 성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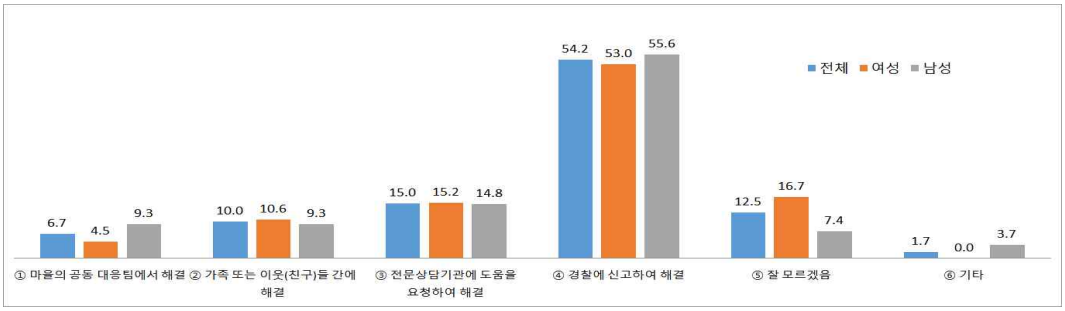

○ **성평등마을 수준**

- '다른 마을에 비해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이 농가소득 및 재산에 대한 여성 소유권 인정, 마을운영에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인정,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정 등 성평등마을 수준이 어떠한 지'(4점 만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2.69점으로 여성 2.15점보다 더 높게 조사됨**.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이 더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마을의사결정 참여형태별로 살펴보면, '마을의결기구참여 수준별'은 남성 2.91점으로 여성 2.65점보다 더 높게 나타남. 반면 '자생단체조직참여 수준별'은 여성 3.02점 남성 2.70점, '주민공동체참여 수준별'은 여성 2.37점, 남성 2.15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남. 즉, **남성은 '마을의사결정기구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은 '자생단체조직참여' 수준 및 '주민공동체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더 성평등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응답자들의 성평등마을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를 마을의사결정 참여형태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마을의결기구참여 수준별', '자생단체조직참여 수준별', '주민공동체참여 수준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이 결과를 토대로 회귀분석한 결과, **'주민공동체참여 수준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즉, 자발적 주민공동체 참여수준이 높은 여성 응답자일수록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이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여성 역할의 재조명과 가치 인식을 공유하고 주민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 성평등마을 수준에 대한 인식 _ 성별, 의사결정참여 형태별(단위: 점/4점 만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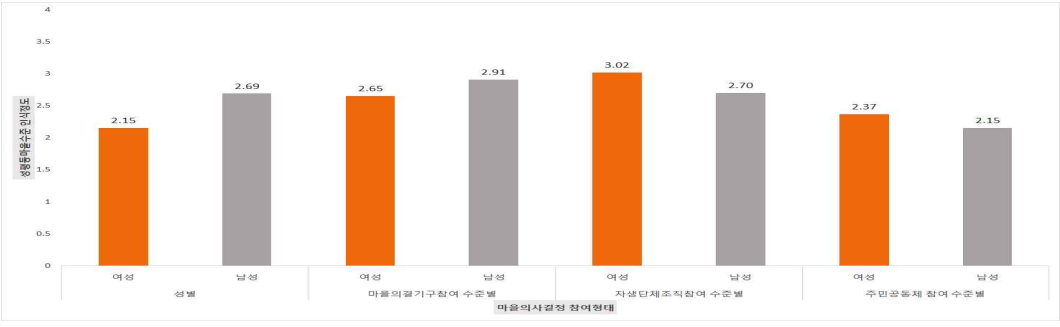

○ 마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성평등 이슈

- '마을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4점 만점) 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00점 환산점수로 살펴보면, '가사 및 육아에 남성의 낮은 참여 경향' 76.1점, '폭력, 범죄 등에 무관심' 71.4점 순으로 높음. 특히, **'폭력, 범죄 등에 무관심' 71.4점 결과는 전술한 '마을에서 폭력 발생 시 대응'에서 여성 응답자 중 '잘 모르겠음' 16.7%로 나타난 결과와의 맥락으로 살펴보면 가정 내 사적인 일로 여겨 관여하지 않고 주민들 간에 묵인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등 우려가 예측됨**
- 무엇보다 마을 내에서 성별 고정관념, 폭력과 범죄 무관심, 여성 과소대표성, 차별적 시선 등 **인식에 변화를 이끄는 것은 단회기로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평등마을 조성과정에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역량강화와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과 평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것임**

〈 마을에서 성평등 이슈에 대한 성별 격차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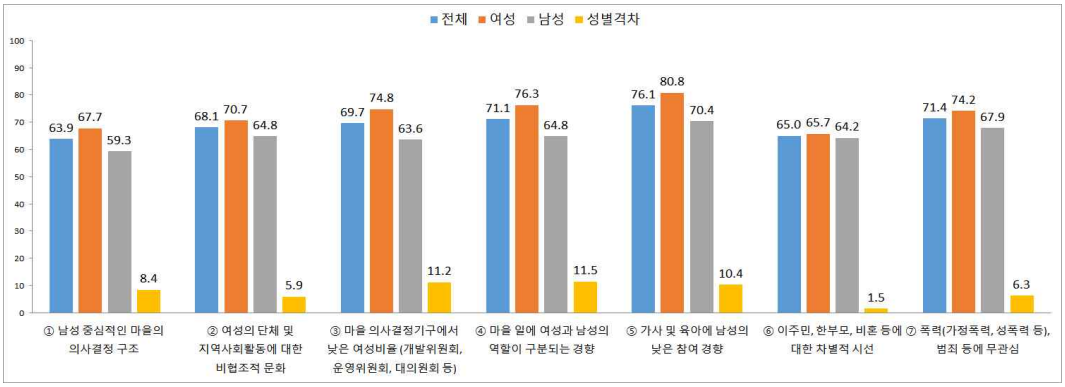

○ 마을규약 개정 필요성

- '현재 마을규약을 시대흐름에 맞게 성평등규약으로 제(개)정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자의 대다수가 '규약 개정이 필요 있다'(77.5%)라고 응답함
- **'규약 개정이 필요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대상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주민권리와 의무, 마을의결기구의 여성참여, 선거권 등 평등한 권리 보장 등 규약 개정의 내용에 대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함. 다만, **규약 개정 요구 정도가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규약개정 ‘필요 있다’ 이유 _ 성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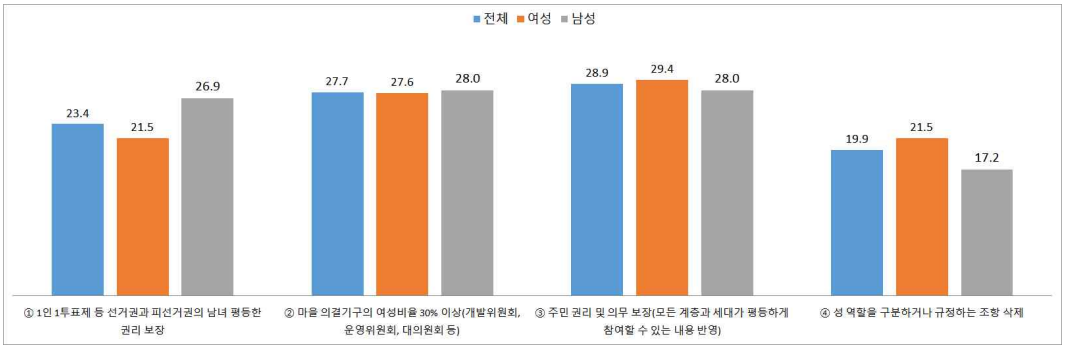

- ‘**규약 개정이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대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성별로 살펴보면 조사에 참여한 마을 중에는 이미 성평등규약으로 개정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과를 제외하고 볼 때, **전통적 자치 규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즉, **현재 행정리 마을의 실제 마을위원회 구성에 남성의 참여 비율이 높고** 청년층과 노인층의 **인식의 차이도 커서 적극적 인식개선이 필요한 지점임**. 또한 8개 시범 마을 중 성평등규약으로 개정하고 **실제 마을위원회 위원 구성에 여성비율 30%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1개 마을에 불과하다는 지점과도 연관성이 예측됨**. 따라서 주민들 스스로 마을에서의 성평등 가치와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성평등마을 조성 과정에서 주민 성인지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임

〈 규약개정 ‘필요 없다’ 이유 _ 성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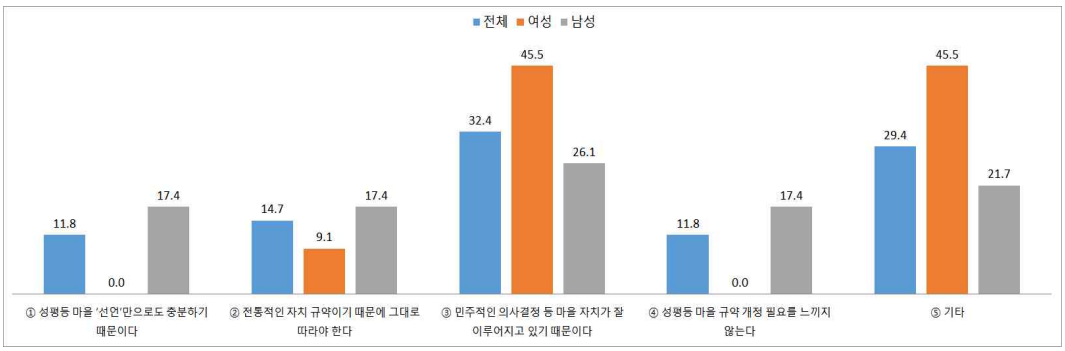

주. ‘개정이 필요 없다’ 응답자 중 10명은 ⑤ 기타 의견에 대해서 ‘이미 개정함’이라고 응답함.

□ 시사점

○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인지 관점 추진방안 모색 필요

- 응답자들은 접근하기 편리한 건강, 보건·의료 시설, 돌봄 시설, 문화·여가 시설 등의 낮은 접근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제주도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양성평등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강력한 권고 추진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주민 성인지 역량강화 필요

-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마을에서 폭력 발생 시 대응방법이나 성평등마을 수준에 대한 인식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마을에서 일어나는 폭력 상황에 대해 가정 내 사적인 일로 묵인되지 않도록 성별 고정관념, 폭력과 범죄 무관심, 여성 과소대표성, 차별적 시선 등 인식 변화를 위한 주민 역량강화 지원 필요함

○ 마을 의사결정기구 여성 참여 확대 강화 필요

- 응답자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 주민권리와 의무, 마을의결기구의 여성참여, 선거권 등 평등한 권리 보장 등 기존의 규약에 성평등규약의 내용으로 개정될 필요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또한 기존 규약을 성평등규약으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실제 마을현장에서 마을위원회 구성에 남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응답자들은 소통과 연대의 중요성과 민주적 마을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인지하고 있음. 또한 부족한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음. 따라서 마을생활에서 소외되는 남녀 모든 청년들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지향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 소통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FGI는 시범사업 참여과정의 어려움과 정책 요구 등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성평등 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 TF팀, 리장/부녀회장/청년회장 등 총 36명 대상 마을별 집단을 구성하고 2021. 8. 18 ~ 9. 25. 간 진행함

○ 전체 FGI 참여자는 총 36명이고, 참여자 비율로 보면 여성 53%, 남성 47%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대 25%, 50대 61%, 60대 14% 순임

□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동기와 성과

○ 마을규약은 마을작동 시스템 역할

○ 사업 참여자들의 민주적 마을운영의 필요성 깨닫는 계기

○ 성평등마을의 기본 요소는 민주적 파트너십의 참여와 소통

○ 주민의 낮은 참석률 및 규약개정의 현실적 장벽 등 어려움 호소

○ 여성 대표성 확대 및 일부 마을 규약개정 등의 가시적 성과

○ 남성 참여자들의 성평등 관점 인식 전환 계기

□ 마을에서의 의사결정 참여 구조

○ 마을 이장과 남성 중심 의사결정 구조

○ 고령 인구 비중 높아 의사결정에 지장

○ 주민의 성인지 역량 강화 필요

□ 정책 요구

○ 시범사업 이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성과 평가 필요

○ 성평등마을 사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체계 필요

○ 소통과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시사점

○ 민주적 마을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 우선 마을주민들이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사업의 효과가 있다는 것임. 현재의 시범사업과 같이 시범마을별 TF팀과 관련 단체들 중심으로 이 사업을

이해하고 추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상황임. 제주도정은 행정리 단위의 마을 이장 및 임원,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성인지 교육과 성평등마을에 대한 안내를 지원해야 할 것임. 또한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양성평등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권고제 등 정책적으로 제고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수 주민 참여 방안 및 민주적 자치역량 배양을 위한 지원 필요

- 참여와 소통이 원활한 민주적 파트너십이 가능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끼리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민주적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지원이 필요함

○ 주민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소통과 연대는 다양한 활동 주체들을 연결하여 주는 소통의 고리가 될 것임. 마을 내 주민들 간의 상호적인 의사소통은 물론 이웃한 마을과 주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성평등마을 조성 과정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공동의 목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 공동체 및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함

제5장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를 위한 제안

1.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 방향

가. 성평등마을 활성화의 의미

○ 제주도는 2019년도부터 마을여성의 대표성 이슈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참여확대, 1인 1투표권 등 제반 마을운영에서 성평등한 마을로 변화를 시도해 나가고 있음

○ 행정리 단위 작은 마을에서의 '성평등'은 성별을 이유로 능력이나 역할을 고착시키는 의식과 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가정과 마을 주민 모두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임. 즉,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남녀 누구나 '동등한 파트너'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새로운 가치로서의 실천적 의미가 포함되어야 함

○ 이러한 방향에 맞춰 본 연구에서의 성평등마을이란 '모든 주민이 민주적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는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생활공간'이라고 정의하고자 함

나. 성평등마을 조성의 방향

□ 목적 설정

○ 성평등마을 조성을 위해 가장 우선될 점은 마을주민들 스스로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설정하는 것임. 즉, 주민들이 지향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 연대를 보다 긴밀하게 하고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음

□ 구성 요소

○ **먼저, '민주적 마을운영의 기반'**은 주민의 의무와 권리, 갈등 해결 등의 기본 방향에 대한 마을작동 시스템으로서의 규약 등을 포함함

○ **다음은 '마을공동체와 주민 역량강화'**로 실제 성평등마을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활동주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임

○ **셋째로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환경 조성'**은 생활공간에서의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임

○ **마지막으로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는 성평등마을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주체들을 연결하여 주는 소통의 통로를 말하는 것임

□ 추진 과정

○ 성평등마을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행 주체와 추진 과정에 대한 사전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임. 즉,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과는 달리 '성평등마을'은 여성 역할의 재조명과 가치 인식을 공유하고 성평등한 마을로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특성을 일정부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임

○ **첫째, 활동주체가 필요함**. 이는 마을 현장에서의 인식개선을 촉발하고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행위 주체를 말함

○ **둘째, 단계적 과정이 필요함**. 사업의 목적이 인식공유를 통한 성평등마을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내용과 주민들 간의 이해와 조율 과정이 필요할 것임

○ **셋째, 진단과 환류체계가 필요함**. 성평등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참여 마을들 간 활동주체와 추진내용 및 개선점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는 평가회와 동시에 진단결과를 토대로 목표와 추진 내용 등에 관한 환류방안에 관심을 두고 사업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정책 제언

○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방향 및 구성요소에 따른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사업 과제	세부 과제	관련 부서 및 단체
민주적 마을 운영 기반 체계화	▪ 성평등마을 지정 및 지원 체계 마련	▪ 주관 :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 지원 : 성평등마을 교육 운영기관
	▪ 성평등마을 활성화사업 모니터링 및 진단	
	▪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마을공동체와 주민 역량강화	▪ 마을 여성의 대표성 및 가치 증진 인식	▪ 주관 :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 지원 : 제주양성평등교육지원센터 및 성평등 교육기관과 단체
	▪ 마을공동체와 주민의 성인지 역량강화	
	▪ 촉진자, 중립적 조정자로서 마을활동가 지원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환경 조성	▪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 주관 :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 및 기관 ▪ 지원 : 공공건축가 자문 및 컨설팅
	▪ 여성을 위한 공간 조성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 소통과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 주관 :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 및 기관 ▪ 지원 :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수행기관 지정 및 지원
	▪ 민관 협력 강화 및 주민 참여 활성화	
	▪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지원 체계 구축	

가. 민주적 마을 운영 기반 체계화

1) 성평등마을 지정 및 지원 체계 마련

○ 성평등마을 조성을 위해 가장 우선될 점은 마을주민들 대상으로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설정하는 것임. 동일 생활공간에 사는 주민들끼리 목적을 위한 사고와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임

○ '민주적 마을운영의 기반'은 주민의 자격으로부터 출발하며, 의무와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기본 방향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스템적 요소로서 마을운영규약이 있음

○ 성평등마을 조성은 다양한 추진내용을 매개로 여성 대표성 제고와 성별 불평등 해소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가 보장되고 마을자치가 잘 되기 위한 실행의 근거로서 성평등마을규약으로의 제·개정 등 점검은 필요할 것임

□ 성평등마을 지정 및 단계적 지원체계 마련

○ 성평등마을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을운영규약의 민주성과 자치성, 평등성이 반영된 규약정비와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단계적 지원 체계를 제안**함

〈 성평등마을 지정 단계적 절차 및 지원체계(안) 〉

구 분	1단계 : 성평등 예비마을	⇨	2단계 : 성평등마을 지정 마을
조 건	▪ **대상 :** 성평등마을 조성에 관심 있는 마을 ▪ **조건** – 성평등마을 교육 참여 및 이수 마을	⇨	▪ **대상** : 성평등마을운영규약 충족 마을 ▪ **조건** – 성평등마을운영규약(개정) – 성평등마을운영규약 표준조항을 근거로 마을운영규약(매뉴얼)에 민주성과 평등성 등 내용 반영 조건 충족
	▪ **지정** : 참여 인원, 이수 시간		▪ **지정** : 신청 → 심사 → 지정
지 정 기 관	▪ 제주특별자치도(성평등정책관) ▪ 성평등마을 교육 운영기관	⇨	▪ 제주특별자치도(성평등정책관)
지 원	▪ **예산규모** : 1천만원 범위 (※ 3~5개 마을 / 마을 당 3백만원 이내)	⇨	▪ **예산규모** : 4천만원 범위 (※ 3~5개 마을 / 마을 당 1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성평등마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성인지 교육, 워크숍, 숙의토론 등		▪ **지원내용** – 성평등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사업 지원 – 주민과 생활환경 등 지역사회 공공 인프라와 생활문화, 복지 등 지역 주민들의 필요 요구에 따라 예산 편성
비고	▪ 성평등예비마을은 **현재의 성평등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과 같은 개념**임	⇨	▪ 정부추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포함하여 **국비지원 사업과의 매칭 방안 검토** 필요

□ 성평등마을의 소규모 공동체 지원사업 지원

○ 성평등마을 활성화를 위해 성평등마을(예비마을 및 지정마을)의 마을회 및 주민 공동체 대상으로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 간 소통 및 협력의 기반 강화 필요

○ 추진 내용

- 대　　상 : 성평등마을(지정·예비마을)의 마을(회) 및 주민 공동체(5인 이상, 비영리 단체)
- 지원규모 : 1천만원(마을 당 5백만원 이내, 2~4개 마을)
- 사업내용 : **성별구분 없이 참여하는 마을청년모임** 및 성인지 관점의 인권, 평화, 소통, 리더십 교육 **등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 지원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지원방식 : 시범사업 및 지정사업과 연계하여 공모형태로 추진

2) 성평등마을 활성화사업 모니터링 및 진단

○ 성평등마을 활성화사업은 눈에 보이는 규약개정 여부 혹은 교육 참여율 등의 성과보다는 진행과정과 모임이 실질적으로 전통마을의 문화를 성평등 가치에 더 많은 관심 두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업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마을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마을 안에서의 불평등 요소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 사회변화의 내용이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에서 문화확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행정과 촉진 기관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평적 관점에서 지원과 계획, 시행, 참여, 효과,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진단하는 체계 마련 필요함

3)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성평등마을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제안되었던 성평등규약개정 표준안을 비롯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과 연계하여 마을 활동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관련 지침 또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은 중요함

○ 성평등마을 조성에 필요한 매뉴얼(안)에는 관심단계, 마을현황 분석단계, 목표 설정단계, 성평등 이슈 선정 단계, 실행 전략 단계, 모니터링 및 진단과 환류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마을 안에서 성평등 가치를 지향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임

나. 마을공동체와 주민 역량강화

1) 마을 여성의 대표성 및 가치 증진 인식

○ 성평등마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평등마을 조성과 조성 과정에 마을공동체와 참여 주민들의 역량변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과정이 필요함

○ 성평등마을에 대한 이해는 성인지 감수성과 주민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교육단계 설정이 필요한데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기법 활용이 필요함

○ 특히 초기 단계의 성인지 교육은 참여하게 하고 느슨하게 연대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이후 심화 또는 지정단계에는 숙의하고 토론하며, 마을과 성평등 이슈로 나아가고 문제해결 방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참여형태 교육이 필요함

○ 교육은 반복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함. 긴 시간, 긴 호흡이 필요하며, 여성으로서 마을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가는 과정은 마을 내 여성 역할에 대해 재조명하고 성평등 가치 인식으로 나타나 성평등마을로 변화하는 데 촉매제가 될 것임

2) 마을공동체와 주민의 성인지 역량강화

○ 성평등마을로서 여성 역할의 재조명과 가치 인식을 공유하고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 단계적 과정으로 성인지 주민역량강화 및 교육 등 지원되어야 함

○ 특히, 본 연구 결과 **'성평등마을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주민공동체참여 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성평등마을 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고, '마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성평등 이슈'에서 '폭력, 범죄 등에 무관심'이 71.4%로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평등 주민역량강화와 마을 내 발생하는 폭력과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지원이 필요함**

□ 성인지 주민역량강화

○ 성평등 예비마을과 지정마을의 성인지 주민역량교육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인문학적 이해로 풀어내는 소양 교육, 마을공동체 이해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폭력예방 교육 등 필수 교육 내용과 선택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의 체계화를 통해 역량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 주민역량 1단계 기초과정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특히 민주적 의사결정 경험 부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의토론, 모의회의 등의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민주적 토론과 조정, 합의 과정을 경험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유도함. 또 마을과 가정(가정폭력, 성폭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지, 대응, 조정, 해결 등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교육도 필요함

〈 성인지 주민역량 강화 과정 〉

도민교육	1단계(기초과정)	2단계(심화과정)
성평등마을 조성 필요에 대한 교양교육	성인지 감수성과 주민들 간 소통을 돕는 참여 교육	성평등마을 조성 이해 및 이해를 돕는 숙의 토론 등의 참여 교육
도민, 이장 및 마을회 임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주민 (예비지정 마을 주민)
연2회 (상반기 · 하반기)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정 설계
제주도 및 성평등 교육기관	성평등 교육기관	성평등 교육기관
※ 성평등예비마을 신청 조건과 연계하여 반영	※ 성평등예비마을 지정 이후 진행될 수 있음	※ 성평등마을(예비/지정) 지정 단계 이후 진행

□ 성평등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 성평등마을 지정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회) 및 주민공동체 대상으로 주민교육 계획, 사업추진 관련, 규약 개정 등 마을의 필요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 향상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함

○ 추진 내용

- 대상 : 성평등마을 지정 마을
- 내용
  - 성평등마을 주민 교육 계획 및 성평등마을 활성화 사업 컨설팅, 다양한 분야와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교육 대상(성별, 세대, 주민공동체/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에 따른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교육 설계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지원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및 성평등 교육기관과 단체 등

※ 맞춤형 컨설팅에 필요한 수행기관 선정 및 마을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지원 가능

3) 촉진자, 중립적 조정자로서 마을활동가 지원

○ 성평등마을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촉진하며, 마을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는 중립적 활동역량을 갖춘 마을활동가 지원

○ 마을활동가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촉진자로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혹은 회의나 워크숍을 이끌어가는 사람임. 마을활동가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참여자들의 문제해결 및 갈등해결, 의사결정 등에 대한 다양한 역동성을 이끌어내며 최대한 성과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지원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및 성평등 교육기관과 단체 등

※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민교육 및 마을로 찾아가는 교육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다.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환경 조성

1)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 지역사회의 공간과 환경 시설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조성되어야 함

○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참여자들은 마을생활에서 병·의원 등 건강시설 여건과 문화·여가 등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마을에서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생활 안전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한 마을별 대응방안이 필요함

○ 따라서 **제주도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제주지역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 주민 요구가 수렴된 방향에서 양성평등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양성평등 권고사항'으로 추진 방안 모색 필요**함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자문 및 컨설팅

2) 여성을 위한 공간 조성

○ 본 연구 결과, 참여한 거의 모든 마을에 여성회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마을 안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 수행을 비롯해서 쉼과 치유가 있는 여성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함

○ 마을 내 공공시설 조성 시 불특정사용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대상을 고려하는 공간 조성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공간을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제주도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제주지역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하여** 마을 내 공공시설 조성 시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공간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양성평등 권고사항으로 추진 등 제도 및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자문 및 컨설팅

라.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1) 소통과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 다양한 활동 주체들을 연결하여 주는 소통의 통로를 말하는 것임. 소통과 연대는 마을 내 주민들 간의 상호적인 의사소통의 차원일 수도 있고, 나아가 성평등마을을 만들어가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형식일 수도 있을 것임

○ 성평등마을 지정마을의 경험을 예비마을, 성평등마을에 대한 이행 없는 마을들과 공유하는 것이며, 성평등마을 조성과정에서 역량이 향상된 주민이 활동가로서 경험을 나누고 연대하는 것임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수행 기관 지정 및 지원

2) 민관 협력 강화 및 주민 참여 활성화

□ 성평등마을 조성을 위한 행정영역과 민간영역의 협력 강화

○ 민관협력체계는 사업의 효과성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행정은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 정책설계에 따라 활성화 시책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중간)영역은 시민의 역량 강화 지원 및 민간의 전문성을 투입하여 연계와 촉진하는 역할 담당을, 마을과 주민은 함께 참여해서 숙의하고 토론하는 역할을 제안함**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수행 기관 지정 및 지원

〈 성평등마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

행정(공적)영역	공공(중간)영역	민간(마을)영역
	시민사회· 중간지원	
제도와 정책 지원	연구 사업 활성화 사업	숙의와 제안
컨설팅 지원	전문가 증간지원 조직	운영 개선
교육 지원	전문가+활동가 중간지원 조직	주민 참여

□ 수평적 활동을 촉진하는 주민참여 사업의 발굴 및 연계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 지역균형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소규모 공동체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민간지원 보조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성평마을조성사업 과정에서 마을과 주민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의제 해결과 의제에 담겨 있는 성평등 이슈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 지역활성화와 공동체의 수평적 활동을 촉진하는 연계사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함

○ 각종 **민간지원사업 심의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사업에 가점을 부여할 제도**를 마련할 필요 있음

○ **특히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소득과 일자리, 환경, 문화, 복지 등의 분야별 사업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 주민참여 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 내용 〉

지원사업	대상	사업내용
주민참여사업	주민 지역공간	·경관, 생활환경 등 지역사회 공공 인프라와 생활문화, 복지 등 지역 주민들의 필요 요구에 따라 예산 편성
지역균형사업	지역 주민	·균형발전, 도민들의 행복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교육, 유아보육, 의료, 교통, 문화여가, 노인복지 등 6개 서비스 분야)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 공동체	·도시, 농촌, 어촌 마을의 공공 인프라 및 경관, 문화, 소득 활동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민 공동체	·문화와 복지, 여가 등 다양한 소규모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공동체 활성화 도모

3)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지원 체계 구축

○ 효과적인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 혹은 사업운영 관련 단체 혹은 기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주민과 주민 간, 마을과 마을 간의 네트워크 형성자로서 활동가들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수행 기관 지정 및 지원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 내용 ····· 5
   나. 연구 방법 ····· 5

제2장 성평등마을 정의 및 관련 정책 고찰

1. 마을에서 성평등 관련 이슈 ····· 9
   가. 남성중심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구조 ····· 10
   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 ····· 11
   다. 이분법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참여 구조 ····· 12
2. 성평등마을 관련 법·제도 검토 및 개념 정의 ····· 13
   가. 성평등마을 관련 법·제도 검토 ····· 13
   나. 성평등마을의 개념 정의 ····· 15
3. 소결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분석 방향 도출 ····· 18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현황

1.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사업 추진 현황 ····· 21
   가.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개요 ····· 21
   나.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인구 및 마을규약 현황 ····· 27
   다. SWOT 분석을 통한 제주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진단 ····· 33
2. 제주마을의 여성 대표성 및 지역 생활 여건 실태 ····· 37
   가. 제주 마을리더의 여성 대표성 ····· 37
   나. 제주 지역 생활 여건 실태 ····· 39
3. 소결 및 시사점 ····· 43

제4장 제주지역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사례 탐색

1. 설문조사 결과 ····· 49
가. 조사 개요 ····· 49
나. 조사 결과 ····· 52
다. 소결 ····· 63
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68
가. 조사 개요 ····· 68
나. FGI 결과 ····· 70
다. 소결 ····· 87

제5장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를 위한 제안

1.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 방향 ····· 95
가. 성평등마을 활성화의 의미 ····· 95
나. 성평등마을 조성의 방향 ····· 96
2. 정책 제언 ····· 99
가. 민주적 마을 운영 기반 체계화 ····· 100
나. 마을공동체와 주민 역량강화 ····· 103
다.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환경 조성 ····· 107
라.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 108

참고문헌 ····· 112

부록 ····· 113
1.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안) ····· 115
2. 부녀회 임시회의 시나리오(안) ····· 117
3. 주민 욕구조사 설문지 ····· 120

표 목 차

<표 2-1>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2014~2019) ····· 14
<표 2-2>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 ····· 16
<표 2-3> 제주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기본계획,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목표 비교 ···· 17
<표 2-4> 제주지역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의 분석방향 도출 ····· 18

<표 3-1> 성평등마을규약 마련 및 공론화 사업 추진단 ····· 22
<표 3-2> 마을 성평등 프로그램 구성안(2019) ····· 24
<표 3-3>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및 제주마을운영규약 개선방안 비교 ····· 26
<표 3-4> 제주도 읍·면·동 및 마을 인구 현황 ····· 27
<표 3-5>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인구 및 여성비율 현황 ····· 28
<표 3-6>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마을규약 개정 현황 ····· 29
<표 3-7>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의 주민자격 ····· 30
<표 3-8>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의 의결기구 ····· 30
<표 3-9>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의 주민총회 성립 조건 ····· 31
<표 3-10>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2
<표 3-11>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마을기구 성비 현황 ····· 32
<표 3-12> 제주지역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사업 SWOT 분석 ····· 36
<표 3-13> 행정시별 성별 통·리장 현황(2019)(1) ····· 37
<표 3-14> 행정시별 성별 통·리장 현황(2019)(2) ····· 38
<표 3-15> 제주 성별 어촌계장 현황(2019) ····· 38

<표 4-1> 주민 요구조사 내용 ····· 49
<표 4-2>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51
<표 4-3> 생활복지 시설 접근성 ····· 52
<표 4-4> 마을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 54

<표 4-5> 마을에서 폭력 상황 시 대응 ····· 55
<표 4-6> 성평등마을 수준 인식 차이_성별, 마을의사결정 참여형태별 ····· 57
<표 4-7> 성평등마을 수준 인식 차이_여성의 마을의사결정 참여형태별 ····· 57
<표 4-8> 사업 참여 유무 및 참여 프로그램 ····· 59
<표 4-9> 성평등마을 활성화에 대한 정책 요구 ····· 62
<표 4-10>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관계자 대상 FGI 질문 내용 ····· 68
<표 4-11>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FGI 참여자 일반적 특성 ····· 69

<표 5-1>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99
<표 5-2> 성평등마을 지정 단계적 절차 및 지원체계(안) ····· 101
<표 5-3> 성인지 주민역량 강화 과정 ····· 105
<표 5-4> 성평등마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 109
<표 5-5> 주민참여 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 내용 ····· 110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 6

<그림 2-1> 제주특별자치도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2014, 2019) ·· 13
<그림 2-2>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방향, 가치 및 5대 목표 ····· 15

<그림 3-1>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을 위한 연도별 추진 과정 ····· 21
<그림 3-2> 제주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 23
<그림 3-3>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 환경 ····· 39
<그림 3-4>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 불안 환경 ····· 40
<그림 3-5>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 가족친화 환경 ····· 41
<그림 3-6>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 가족친화 환경 개선사항 ····· 41
<그림 3-7>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여건 ····· 42
<그림 3-8>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개선사항 42

<그림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_성별, 연령별, 마을의사결정참여별 ····· 50
<그림 4-2> 생활복지 시설 유무 ····· 52
<그림 4-3> 생활복지 시설 접근성 ····· 52
<그림 4-4> 마을생활에서 겪는 어려움_성별 ····· 53
<그림 4-5> 마을생활에서 겪는 어려움_지역별 ····· 54
<그림 4-6> 마을에서 폭력 상황 시 대응_성별 ····· 55
<그림 4-7> 성평등마을 수준에 대한 인식_성별, 마을의사결정 참여형태별 ··· 56
<그림 4-8> 마을에서 성평등 이슈에 대한 성별 격차 ····· 58
<그림 4-9> 규약개정 '필요 있다' 이유_성별 ····· 60
<그림 4-10> 규약개정 '필요 없다' 이유_성별 ····· 61
<그림 4-11> 성평등마을 관련 사업 과제의 중요성 ····· 61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제주지역 행정리 단위의 일부마을에서는 전통 지역사회의 자치규약인 마을규약[1]을 성평등마을규약[2]으로 개정하고 여성 대표성 제고와 성별 불평등 해소 등 기본 방향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마을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이와 같은 변화는 생활공간인 마을에서 그동안 각종 마을일 결정에 소외되었던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성평등 가치에 대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임
- 1995년 세계북경여성대회 이후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획하는 다양한 정책 영역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모든 정책 영역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안전, 보건 및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마을 속에서의 성별 특성이나 성별관계로 인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황임(조연숙, 2015)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같은 정책들을 통해 주로 공간·시설을 여성친화성으로 개선하는 사업(주혜진 외, 2018)이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 시민참여단의 역할에 관한 연구(김영신, 2017; 김혜정, 2017; 박혜은, 2017; 태희원, 2017) 등은 진행해 왔음. 그러나 마을에서의 성평등 이슈와 여성친화도시와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태임
-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라고 정의함.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를 의미함(여성가족부, 2017)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11~2015) 수립과 함께, 2011년 12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고, 2016년 12월에 재지정

1) 마을규약(향약, 마을조례 등)은 마을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간에 기본 질서를 잡아주는 자치 규범임. 이 규약에는 마을 운영과 관련한 기본 자치조직인 마을총회, 이장 선출, 임원 조직인 개발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성평등마을규약은 현재 제주 전통마을에서는 마을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구분되는 경향이 높고, 마을여성들의 입장과 생각들이 전체 마을 운영에 제대로 잘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조항을 마련하고 시범마을을 비롯하여 마을규약을 재정비 확산 중에 있음(제주도성평등정책관 내부자료).

되었음. 제2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16~2020)에 이어서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2021년 재지정 신청 시점에 놓여 있음

- 이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도 예산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제주여민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연합회가 추진사업단을 만들어 마을의 부녀회를 중심으로 성평등마을규약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추진해 왔음. 그 결과, 2019년 전국 최초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을 마련하고 마을에서부터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등 일상적 구조에 변화를 이끌어 냄
- 향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3]에 따른 정책영역과 함께「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추진목표[4]와의 연계와 기존 프로젝트의 개선 방향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할 목적에서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조성'을 확산해 나갈 것을 세부과제로 제안하고 있음
- 결국, 제주지역에서 성평등마을 조성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평등마을을 정의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마을 현장에서의 성평등 효과는 무엇이며 부족한 영역은 무엇인지, 사업추진 과정에 어려움은 무엇인지 등 주민의견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례 탐색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 자료를 검토하여 성평등마을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범마을의 마을운영규약 및 인구현황 검토와 지역의 생활여건 실태 분석, 시범사업 TF팀 등 참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와 자치회원 등 주민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제주지역에서의 성평등마을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3)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제19조 국가성평등지수 등)'에 의해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분야와 지표가 구성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2019년 현재 3대 영역, 8개 분야, 23개 지표로 구성되었고, 3대 영역은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임.

4)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4개의 추진목표는 성평등 제도 기반 체계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및 가치증진,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함께 혁신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임.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성평등마을 개념 정의 및 관련 정책 고찰
-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마을에서 성평등 관련 이슈 검토
- 양성평등기본법, 지역성평등지수, 여성친화도시 관련 법·제도 고찰
- 관련 정책 검토를 통한 성평등마을 개념 정의 및 분석 방향 도출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진단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의 인구, 마을규약 및 위원회 현황 등 관련자료 검토
- SWOT 분석을 통한 제주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의 현황 진단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주변 지역 생활 여건 검토(기존 2차 자료: 제주지역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도민 욕구조사 원자료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제주도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사례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 시범마을의 주민 의견 수렴(자치회원 등 주민 대상 설문조사)
- 시범마을 사업TF팀 등 참여자 대상의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한 의견수렴

❍ 제주지역의 성평등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제3차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성평등마을 활성화 방안 제안

나.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성평등마을의 조성 방향과 구성 지표 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제주도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관련 마을운영규약 및 인구현황, 사업결과 자료 분석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주변 환경의 안전 및 가족친화 환경, 지역사회 활동 여건 등 지역 생활 실태 관련 도민 욕구조사(2차 자료) 분석을 위해 제3차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도민 욕구조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0) 원자료 분석

❍ 시범마을 사례조사

- 설문조사
  - 조사 대상 : 2019~2020년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자치회원 등 주민 총 120명
  - 조사 내용 :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성평등마을 및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과 요구
  - 조사 방법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 및 각 마을별 리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의결기구, 자생단체, 주민 대상으로 임의 표집 조사함
- 초점집단면접조사(FGI)
  - 조사 대상 : 2019~2020년 사업에 참여했던 대정읍 신도3리와 신도1리, 안덕면 대평리, 한림읍 한림3리 금악리, 구좌읍 월정리, 성산읍 신산리 난산리 총 8개 마을의 시범사업 참여자
  - 조사 내용 : 사업의 참여 동기 및 성과, 마을공동체의 참여 구조 및 정책 요구
  - 조사 방법 : 시범마을의 주요 활동주체인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의 TF팀 등 참여자 대상으로 각 마을별 집단을 구성하고 진행함

❍ 간담회 개최

- 연구자,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관계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상호간의 협력 방안 논의

❍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전문가, 마을관련 단체 및 활동가, 담당 공무원 등의 자문을 통한 연구 방향 및 정책화 제고 등에 대한 의견수렴

〈 그림 1-1 〉 연구 수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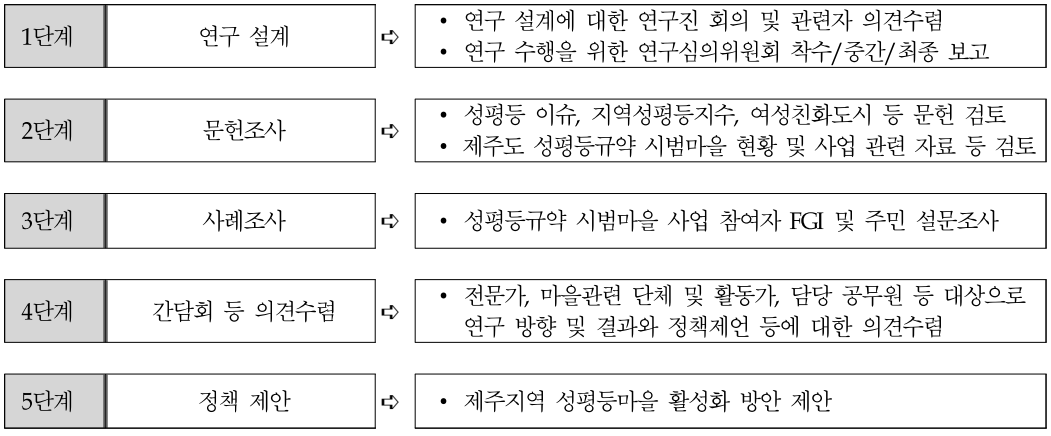

제 2 장

성평등마을 정의 및 관련 정책 고찰

1. 마을에서 성평등 관련 이슈
2. 성평등마을 관련 법·제도 검토 및 개념 정의
3. 소결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분석 방향 도출

1. 마을에서 성평등 관련 이슈

○ 마을은 일상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삶의 공간임.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고, 지역의 문제의식과 욕구에 대해 다양한 인적·물적 등 지역 자원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삶의 생활 터전임

○ 그러나 그동안 마을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성별 고정관념에 의해 주로 남성이 주도하여 계획하고 결정하여 마을여성들의 입장과 생각들을 반영하는데 미흡했음. 이런 점에서 마을운영에 있어서 성평등 관점에 대한 강조는 실천적 접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성평등 관점의 접근은 여성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강조하고 삶의 생활공간을 민주적 절차 등에 따라 재구성하며, 마을운영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을문화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역차원에서 제주지역 마을들은 오래된 전통과 미래의 가치를 담고 있으며, 현재 마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지켜야 할 마을규약에 따라 자격을 가진 주민은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더불어 마을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현혜경·라해문, 2020)

- 마을규약은 조선시대 사족들의 향촌 운동의 하나로 전개된 향약이며, 현재 새로운 자치운동 및 마을재생운동의 하나로서 공동체의 복지문제,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 문제, 성평등 등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의식을 공유하는 신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제주지역 마을규약 제정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를 포함하면 길게는 50년 전후, 짧게는 20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정립되었고, 2010년 전후로 제주사회의 변화가 마을운영규약 개정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차원에서도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통하여 성별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제도적·정책적 노력은 이루어져 왔지만, 현실적으로 정치·경제·행정·사회·문화의 제반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조연숙, 2015)

○ 이런 점에서 일상 생활공간에서의 '성평등' 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의 기본 이념으로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의미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와 함께 문화다양성 존중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음. 즉, 양성평등기본법은「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 3항에 따라 '모든 개인은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의 차이를 이유로 표현과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다양성의 보호와 권리와 그 맥락이 유사할 수 있음

○ 다시 말해 마을이 지속되는 한, 변화하는 마을의 새로운 가치를 담은 마을규약의 제·개정은 물론 모든 연령과 계층, 세대가 평등하게 존중 받고 민주적인 자치의 힘을 배양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임(현혜경·라해문, 2021)

○ 결과적으로 성평등마을은 마을의 오래된 전통을 살리면서도 마을의 모든 일에 대해 모든 이들이 민주적 참여와 절차를 존중하는 마을로의 변화를 실천해 나가는 것임. 이를 위한 마을에서의 성평등 관련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남성중심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구조

○ 마을에서 성평등 이슈는 남성중심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구조에 대해 인식하고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하여 개선을 시도하는 노력은 성평등마을로 변화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일이 될 것임

○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전반에서 동등한 파트너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조연숙, 2015).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여성과 남성이 생활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며 자원이나 이윤의 분배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상태(임송미 외, 2019)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성평등 문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여전히 생활공간인 마을 현장에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남아있는 관습 등은 성별 불평등 구조가 남아있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마을 주민들 간의 권리와 의무, 의사소통 네트워크, 인식 개선 등을 위한 관심은 매우 중요할 것임

○ 특히 제주마을의 규약은 매우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마을의 전통과 문화가 결집된 공동체의 산물이자 약속 또는 규율로서 주민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세대주 중심으로 주민의 자격은 물론이거니와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생겨서 선거제도의 변화를 찾으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음(현혜경·라해문, 2020)

- 성평등 관점에서 살펴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든 주민에게 평등한 적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민 자격을 취득한 자 모두에게 1인 1표로 등등하게 줄 것이냐"와 아니면 "세대(주)당 1명에게 부여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성평등마을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남성이 중심이 된 경제·사회 문화적인 특정 공동체 구조에서 주민 모두의 권리와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인식 공유가 필요함. 이와 함께 성평등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

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

○ 마을의 의사결정체계는 마을자치의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서 심의와 의결 구조로 되어 있으며, 마을이라는 공간적 범위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 간의 협의와 주체적 결정으로서 민주적 통제의 수단임(현혜경·라해문, 2020)

- 마을의 의사결정체계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마을총회임. 마을규모가 크고 전체 주민 다수가 참여하기 어려운 마을의 경우는 대의원(총회)회를 두어 주민총회를 대의원총회로 대신하고 있음. 대의원(총회)의 경우 자연마을, 동마을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한 자로 구성되거나 개발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여하여 총회의 성원을 구성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을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주도하여 계획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성의 과소대표성 문제는 마을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예외 상황이 아니었음

○ 특히 제주의 '괸당' 문화는 남성중심, 위계질서로 대표됨. 대부분 개발위원회, 마을총회, 자치회 등에는 부녀회를 제외하면 모두 남성 중심임. 의사결정 구조 역시 남성중심으로 민주적인 방식보다는 연장자의 결정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강함.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마을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에 부녀회장 자격의 당연직 참여를 제외하면 주민의 권리를 가진 여성이라도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어려움

○ 이렇듯 여성은 실제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이거나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주변화시킴에 따라, 마을운영 과정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역량강화의 통로로 기능하는데 한계가 있음(임송미 외, 2019)

○ 따라서 마을에서 각종 위원회의 성별 현황, 대표자 선출 기준과 절차, 임기 등을 파악하고,「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근거로 마을운영체계에 여성들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여성할당 등 방안 모색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다. 이분법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참여 구조

- 생활공간인 마을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다양한 공적·사적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일에 참여하는 영역이 여성과 남성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별분업의 이중구조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편임(조연숙, 2015)
- 결국 여성이 가정에서 돌봄과 가사를 책임지는 역할의 연장선에서 마을 일에 참여하는 방식에서도 그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음. 이 같은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리사회에서 잔존하는 가부장적 문화와 연관되어 있음
- 여성들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서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고(현혜경·라해문, 2020),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주체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배제되거나 축소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임
- 특히 제주지역 행정리 단위의 마을은 가정과 일터 간의 경계가 애매하고, 제주 특유의 공동체 문화인 '괸당' 문화가 형성되어 가족과 동네 이웃 등과의 강한 결속력으로 인해 대소사가 얽히는 문제가 생김. 마을 대소사와 행사는 품앗이와 유사한 제주의 '수눌음' 정신인 상부상조의 협업체계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많은 것들을 나누고 돌보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오고 있는 것임
- 이런 이유로 인해, 마을에서 여성의 역할이 각종 행사에서 음식을 장만하거나 대접하기, 행사 뒷일을 정리하는 역할로 한정되어 있고, 마을총회에서도 음식을 준비하느라 발언권, 의결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다반사임(현혜경·라해문, 2020)
- 따라서 성평등마을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주민 권리의 문제를 넘어 민주적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마을운영규약 등에 그 내용을 담고, 마을여성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서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차별적 의식과 관행이 없도록 성평등마을로 지역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2. 성평등마을 관련 법·제도 검토 및 개념 정의

가. 성평등마을 관련 법·제도 검토

○ 1995년 제정되어 그동안 여성정책의 근간이 되었던「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정의,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 여성친화도시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양성평등에 대해「양성평등기본법」제3조 1항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함. 이를 적용하기 위해 지역성평등지수는「양성평등기본법」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3항에 따라 '성평등 사회 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3개 정책영역으로 구성하고 수치화하기 위해 23개 지표로 구성함

○ 지역성평등지수에 활용되고 있는 모든 지표는 완전불평등을 의미하는 '0.0'점부터 완전평등을 의미하는 '100.0'점의 값을 가지며, 지수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주재선 외, 2020)

- 측정결과를 보면, 제주도는 16개 시·도 중 2015~2016년 중상위 지역으로 상승한 이후부터 2017~2019년까지 상위지역에 있음. 분야별로 보면, '성평등 사회참여' 영역의 **의사결정(10위), 교육·직업훈련 분야(9위)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의 **안전 분야(15위)**,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문화·정보 분야(6위)는 중하위 수준임**

〈 그림 2-1 〉 제주특별자치도 영역 및 분야별 성평등 수준 변화(2014,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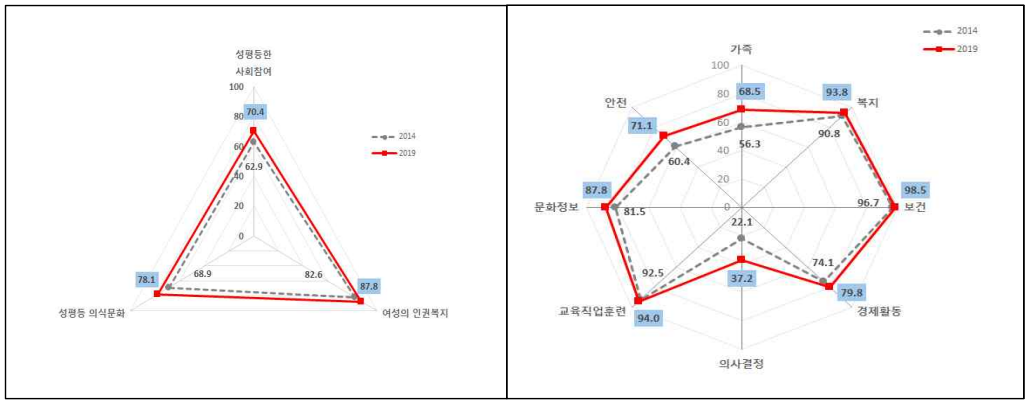

자료: 주재선 외(2020). 「2020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p.161.

〈 표 2-1 〉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2014~2019)

(단위: 점수, 순위)

	분야 및 구성 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 **경제활동**	74.1	2	75.2	2	76.8	1	77.6	1	78.1	1	79.8	1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82.1	1	83.5	1	86.1	1	87.3	1	84.3	1	86.0	1
	성별 임금격차	63.7	1	63.9	1	62.2	4	63.0	4	69.5	1	67.4	1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76.7	8	78.2	8	82.1	3	82.6	4	80.6	9	86.1	2
	○ **의사결정**	22.1	6	20.2	10	21.5	8	40.5	3	42.2	5	37.2	10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3.4	8	23.5	8	23.6	8	23.8	8	26.3	10	26.3	11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32.4	5	33.4	3	34.1	3	35.2	3	38.5	3	42.1	5
	관리자 비율 성비	10.5	13	3.6	16	6.9	16	38.9	1	37.9	2	12.1	15
	지자체위원회 위촉위원 성비	47.7	3	48.4	3	57.5	3	64.0	4	66.0	5	68.5	5
	○ **교육·직업훈련**	92.5	11	92.9	11	93.4	9	93.4	11	93.8	9	94.0	9
	평균교육년수 성비	84.9	11	85.8	11	86.7	9	86.8	11	87.7	9	88.1	9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여성의 인권·복지	○ **복지**	90.8	1	90.9	1	92.9	1	93.4	2	93.3	1	93.8	1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91.9	1	93.2	1	94.8	2	94.6	3	95.1	4	96.0	4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89.7	9	88.7	9	90.9	6	92.2	8	91.6	5	91.6	4
	○ **보건**	96.7	9	98.9	1	97.5	8	97.4	11	99.2	1	98.5	3
	건강 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0	11	97.0	6	96.2	14	97.1	9	98.1	3	97.4	4
	건강검진수검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1
	스트레스인지율 성비	94.0	16	99.6	10	96.4	14	95.2	16	99.5	4	98.2	8
	○ **안전**	60.4	16	65.3	15	64.7	15	68.4	12	69.8	12	71.1	15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56.3	14	60.1	12	64.1	10	67.6	8	69.7	8	78.3	3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64.5	16	70.5	15	65.3	15	69.3	14	70.0	14	63.9	15
성평등 의식·문화	○ **가족**	56.3	7	57.6	4	58.4	6	59.5	7	64.9	3	68.5	1
	가사노동시간 성비	30.6	1	33.8	1	37.1	1	40.6	1	44.3	1	48.1	1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93.3	10	96.9	4	100.0	1	98.8	1	97.3	3	94.4	6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96.8	11	91.1	16	87.7	16	86.7	16	95.5	12	100.0	1
	육아휴직자 성비	4.4	10	8.5	1	8.9	9	11.8	11	22.5	7	31.5	5
	○ **문화·정보**	81.5	15	84.3	12	85.0	12	86.2	10	86.9	11	87.8	6
	여가시간 성비	75.6	13	76.2	11	76.8	4	77.5	1	78.2	1	78.9	1
	여가 만족도 성비	79.0	15	83.7	12	86.8	11	89.9	11	89.6	13	89.6	13
	인터넷 이용률 성비	89.8	11	93.1	6	91.5	13	91.4	14	92.8	13	94.9	11

주.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자료: 주재선 외(2020). 「2020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p.164.

○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의 성주류화 전략으로서,「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지정이 시작된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해마다 늘어 2020년 12월 기준 모두 96개 시군구에 이르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에「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4항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사업화하고 여성을 핵심 주체로서 돌봄과 소통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며, 이웃 간 상호소통을 통한 돌봄의 사회적 분담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음(여성가족부, 2010)

나. 성평등마을의 개념 정의

○ 성평등 관련 법·제도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과거와는 다르게 지자체의 역할과 범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사회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의식을 공유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역정책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임

○ 특히, 거버넌스 체계는 상호협력적인 조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명시된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의 민주적 참여와 포용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방향에서 성평등마을은 지역차원의 성주류화 전략인 여성친화도시로서, 생활공간인 마을환경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가 보장되도록 참여와 형평성, 소통과 거버넌스 등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그림 2-2 〉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방향, 가치 및 5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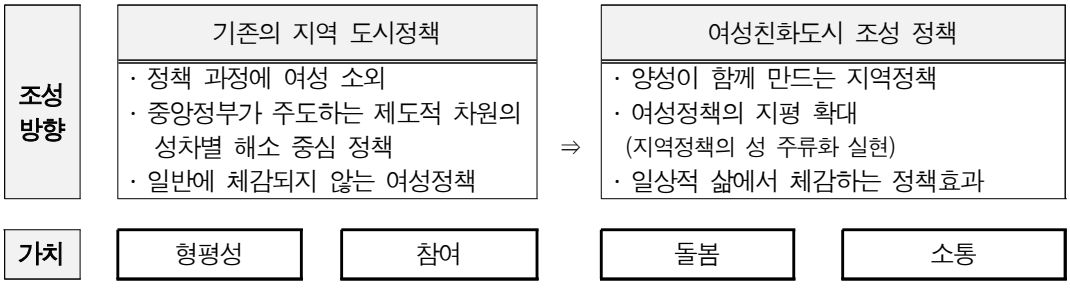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1.28.). '여성친화도시 전국 96개 지정'.에서 재구성.

○ 무엇보다 제주도는 2011년 12월 처음으로 광역형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2016년 12월 재지정에 이어서 2021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재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임. 제3차 기본계획은 '더불어 성장하는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4대 정책 목표, 8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고, 그 중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및 가치증진' 과제에 '여성친화(성평등)마을 조성 확산' 사업을 제시하였음. 관련하여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이 2019년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표 2-2 〉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

목표	정책과제	세부과제
1. 성평등 제도 기반 체계화	1.1 성평등 제도 실행력 강화	1.1.1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강화 1.1.2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제도 운영 1.1.3 여성친화도시 협업 부서 거버넌스 구축 1.1.4 도정 주요 도시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1.1.5 제주 양성평등교육 체계화 및 활성화
	1.2 민관 협력 강화 및 도민 참여 활성화	1.2.1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운영 활성화 1.2.2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운영 체계화 및 활성화 1.2.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1.2.4 여성친화도시 정책 체감 향상 홍보 확대
2.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및 가치증진	2.1 여성의 경제적 역량과 노동 가치 증진	2.1.1 여성 전문 인력·미래 산업 인력 확대 2.1.2 여성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취·창업 지원 2.1.3 여성의 노동가치 증진
	2.2 여성의 지역사회 대표성 및 가치 증진	2.2.1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① 여성친화(성평등)마을 조성 확산** ② 누구나 행복한 마을만들기 종합지원 ③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제고 2.2.2 여성 공무원 대표성 증진 2.2.3 제주여성 가치 증진
3.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3.1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3.1.1 제주 권역별 안전 환경 조성 사업 3.1.2 일상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3.1.3 여성 안심 서비스 확대
	3.2 누구나 안심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	3.2.1 여성친화적 도시재생과 주거 공간 조성 3.2.2 폭력·재난으로부터 안전 역량 강화
4. 함께 혁신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4.1 돌봄 위기 대응 사회적 책임 및 가족 역량 강화	4.1.1 제주형 돌봄뉴딜정책 구성 4.1.2 돌봄 위기 대응 사회적 책임 강화 4.1.3 다양한 '소외' 가족 지원
	4.2 일·삶 균형 문화 환경 조성	4.2.1 제주여성 생애주기 힐링 공간 설립 및 운영 4.2.2 남성의 돌봄 참여 활성화 4.2.3 가족친화 문화 환경 조성

자료: 이해응 외(202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그러나 지역 성 주류화 전략으로서 성평등마을 조성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을규약 개정을 통한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대표성 강화 이외에도 생활공간인 마을 현장에서 여성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성역할 고정관념 등 여성이슈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도 중요할 것임

○ 특히, **마을이라는 맥락에서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같거나 같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전반에서 **'동등한 파트너'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새로운 가치로서의 실천적 의미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성평등마을이란 '모든 주민이 민주적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는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생활공간'이라고 정의**하고자 함

〈 표 2-3 〉 제주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기본계획,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목표 비교

지역성평등지수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정책영역	분야	정책목표	정책과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성평등 제도 기반 체계화	성평등 제도 실행력 강화	⇨	성평등마을 규약 표준안마련
	의사결정		민관 협력 강화 및 도민 참여 활성화		
	교육·직업훈련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및 가치증진	여성의 경제적 역량과 노동 가치 증진		양성평등 권리보장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여성의 지역사회 대표성 및 가치 증진		마을여성 대표성 제고
	보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
	안전		누구나 안심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		
성평등 의식·문화	가족	함께 혁신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돌봄 위기 대응 사회적 책임 및 가족 역량 강화		-
	문화·정보		일·삶 균형 문화 환경 조성		

3. 소결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분석 방향 도출

○ 이상의 선행연구, 관련 법·제도 검토 및 성평등마을 개념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사례 탐색을 위한 구성요소는 성평등 가치를 공유하는 방향에서 '민주적 마을운영 기반 구축', '마을공동체 및 주민 역량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환경 조성',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등으로 정함

○ **'민주적 마을운영 기반 구축'**은 마을을 성평등 인식이 공유되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와 권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음. 따라서 마을규약 검토 및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마을공동체 및 주민 역량강화'**는 마을에서 성평등 이슈를 개선하고 민주적 마을 운영을 위해 성평등 관점의 사고와 시각을 갖춘 사람들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음. 이를 위해 주민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접근성이 보장되는 지역 환경 조성과 관련이 있음. 즉, 차별적 요소와 위험요소가 없는 여성친화적인 물리적 생활환경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 주체들을 연결하여 주는 소통의 통로와 관련이 있음. 여기서 소통과 연대는 마을 내 주민들 간의 상호적인 의사소통의 차원뿐만 아니라 이웃한 마을과 주민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네트워크의 확장이 포함된 상호 연대체계 구축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표 2-4 〉 제주지역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의 분석방향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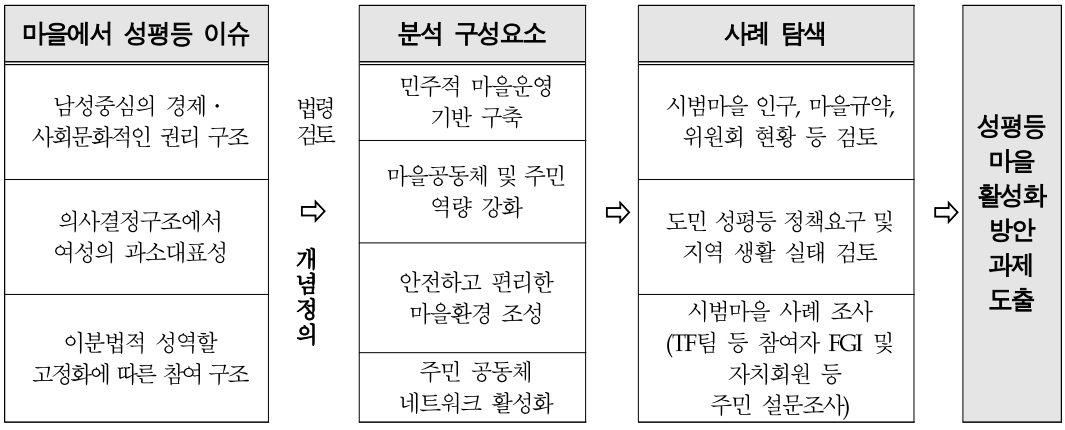

제 3 장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현황

1.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사업 추진 현황
2. 제주마을의 여성 대표성 및 지역 생활 여건 실태
3. 소결 및 시사점

1.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사업 추진 현황

가.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개요[5)]

1)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사업 준비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제주여민회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연합회(이하 전여농제주도연합)가 추진사업단을 만들어 마을의 부녀회를 중심으로 '성평등마을규약'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진행된 사업임(제주여민회, 2019)

〈 그림 3-1 〉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을 위한 연도별 추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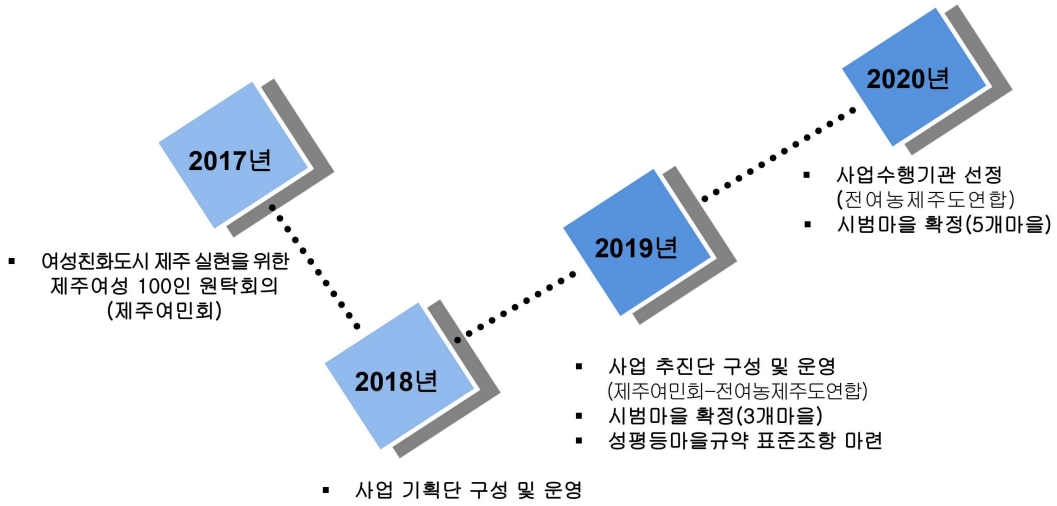

○ 사업 준비 단계인 2017년부터 3년 동안은 제주도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제주지역 여성대표성 증진'을 목적에 두고 제주여민회 주관으로 진행됨(제주여민회, 2019)

- 2017년도에는 '제주여성이 모여 말하다'라는 주제로 100인 원탁회의에서 제주여성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여성들이 모여 제주의 성평등 및 여성들의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주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 풀어야 할 가장 우선 과제로서 '여성 대표성 제고'를 도출하여 성평등 변화를 시도하였음

5)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추진과정은 '2019 성평등마을규약표준조항 마련 및 공론화 사업 결과자료집' 및 2020년 성평등마을 조성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 이어서 2018년에는 '여성친화서포터즈 마을로 들어가다!'라는 주제로 애월읍 12개, 조천읍 8개의 행정리 기획단과 함께 15명의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을 구성하고, 직접 생활공간인 마을 현장에서 애월읍과 조천읍 20개 마을부녀회장, 사무장 36명을 인터뷰하고 여성대표성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음
- 분석 결과, 마을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현저하게 낮았음. 여성들은 마을 이장, 개발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어왔음. 이에 반해 마을행사에서는 부녀회가 없으면 행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즉, 마을행사 준비부터 접대, 마무리까지 여성들이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결과를 통해 2019년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 마련 및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2)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사업 추진

□ 사업추진단 구성

○ 마을여성들과 함께 성평등마을규약 조항안들을 마을 안에서 현실화시켜보는 시범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제주여민회, 2019)

- 사업추진단은 제주여민회와 행정리 단위 회원이 집중되어 있고 전통마을 내 여성과소대표성 문제에 대한 현장 이해도가 높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 제주도연합)과 컨소시엄을 맺고, 2018년 제주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2인이 합류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 표 3-1 〉 성평등마을규약 마련 및 공론화 사업 추진단

제주여민회		전여농제주도연합	2018 서포터즈
사무국	연구진		
대표2인 사무국장 사업담당	정책위원장 정책위원 1인	정책위원장 성산지회 사무국장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정당활동가 1인 청년활동가 1인

출처: 제주여민회(2019). 2019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마련 및 공론화 사업 결과 자료집. p.28.

□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마련

○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들은 현재 제주마을 내에서 여성 과소대표성 문제를 야기하는 각종 문제들(마을 내 성역할로 인한 총회 참여 제한, 1세대 1표, 마을임원조직 여성 참여 저조 등)을 풀어 나갈 제반의 근거가 될 수 있음(제주여민회, 2019)

- 표준조항은 마을규약에서 필요 조항들만 추려서 조항 수준으로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도출함. 그 이유는 성평등 조항을 내포하면서도 마을 자치영역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하고, 핵심 조항들은 마을별로 사정에 맞게 선택·적용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임

○ 이렇게 마련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은 목적 조항, 주민권리 조항, 주민의무 조항, 의결권·선거권 조항, 마을임원 조직 조항의 5개 조항으로 구성·제시함. 이를 바탕으로 시범마을별 부녀회와 함께 실제 마을규약에 적용하기 위한 제반의 단계를 추진함

〈 그림 3-2 〉 제주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목적’ 조항	‘주민권리’ 조항	‘주민의무’ 조항	‘의결권·선거권의 평등’조항	‘마을임원 조직’ 조항
주민 스스로가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규정	마을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권리	연령·성별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의무 및 마을 내 인권문제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마을내 의결권·선거권은 1인 1표를 기본으로 설정	개발위원회 구성 시 남녀 평등한 참여를 위해 위촉직 개발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

출처: 제주여민회(2019). 2019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마련 및 공론화 사업 결과 자료집. p.24. p.29. 참조 재구성함.

□ 마을 성평등 프로그램 기획

○ 마을 성평등 프로그램은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을 시범마을에 제반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자 부녀회를 위하여 기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 마을규약(안)을 작성해보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성함(제주여민회, 2019)

○ 시범마을 성평등 프로그램은 총 3회의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기획함

〈 표 3-2 〉 마을 성평등 프로그램 구성안(2019)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h>비고</th></tr>
<tr><td>1회</td><td>· 본 프로그램 소개
· 인사 나누기
· 성인지 감수성 교육</td><td>· 부녀회원 대상
· 강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통합전문강사</td></tr>
<tr><td>2회</td><td>· 여성영화 감상
· 영화 감상 후 소감 나누기</td><td>· 마을 전체 주민 대상
<table><tr><td>신도3리</td><td>개같은 날의 오후
cf. 2차 상영-루스 베이더 긴즈버스 나는 반대한다</td></tr><tr><td>한림3리</td><td>아이캔스피크</td></tr><tr><td>신산리</td><td>걸캅스</td></tr></table></td></tr>
<tr><td>3회</td><td>· 1부: 퍼실리테이팅 워크샵
· 2부: 부녀회 모의 임시회의
(현 마을 규약 검토 및 성평등마을규약 부녀회안 확정)</td><td>· 부녀회원 대상
<table><tr><td>1부</td><td>강사: 농어촌 퍼실리테이터 전문강사</td></tr><tr><td>2부</td><td>의사봉, 회의자료, 회의 시나리오를 배치하여 모의회의 실습을 겸하는 방식</td></tr></table></td></tr>
</table>

출처: 제주여민회(2019). 2019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마련 및 공론화 사업 결과 자료집. p.30.

□ 시범마을 선정

○ 시범마을 선정의 주안점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제안에 비교적 수용적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마을, 성평등마을규약 사업에 호의적일 수 있는 이장이 재직 중인 마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녀회원 등 역량이 있는 마을을 찾음(제주여민회, 2019)

- 시범마을 선정은 제주여민회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찾아가는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이로부터 소개받은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에 대해 사전파악 후 이장을 통해 시범마을 참여 의사를 확인받거나, 전여농 제주도연합 회원들로부터 추천받은 후 해당 마을 방문을 통해 이장, 부녀회장 및 관계자 면담 후 참여 의사를 받고 확정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범마을은 2019년에는 대정읍 신도3리, 한림읍 한림3리, 성산읍 신산리 등 3개 마을이 선정됨. 2020년에는 대정읍 신도1리, 한림읍 금악리, 구좌읍 월정리, 성산읍 난산리 등 5개 마을이 선정됨

□ 시범마을별 TF팀 구성 : 마을별 이장, 부녀회장 등 참여

○ 시범마을이 선정된 이후에는 마을별로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사전 협의를 해나갈 활동 주체로 **이장, 부녀회장과 부녀회원 2명을 추천받아 TF팀을 구성**함(제주여민회, 2019)

- **마을별 TF팀**은 마을 프로그램 운영 시간 외에 별도로 총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일정 및 프로그램 확정, 해당 마을 성평등마을규약안 초안 작성, 프로그램 평가** 등을 수행함

□ 마을별 성평등마을규약(안) 만들기

○ 시범마을별 성평등마을규약 부녀회(안) 만들기는 **총 3단계 과정**으로 추진됨(제주여민회, 2019)

- **1단계에는** 마을별 TF팀이 3회차 프로그램 시행 전에 별도 회의를 통해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각 조항들과 우리 마을 규약 내 관련 조항을 비교해보며 부녀회 임시 모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TF팀 초안을 작성함
- **2단계에는** 3회차 마을프로그램 중에서 1회차 성인지 감수성교육과 3회차 2부 최종 프로그램인 성평등마을규약 부녀회안 의결 모의회의를 연결하는 브릿지 프로그램임. 부녀회원들이 마을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우리 마을의 개선과제를 자연스레 도출해보는 퍼실리테이팅 워크샵 방식으로 실제 제주지역 농어촌 퍼실리테이터 전문강사가 진행함
- **3단계는** 시범사업의 최종 프로그램으로 의안 안건 형식을 갖춘 회의자료와 모의회의 시나리오를 따라가면서 부녀회장의 임시회의 주재로 진행함. TF팀 성평등마을규약 초안을 상정하고 해당 내용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이상의 3단계의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성평등규약 표준조항안은 시범마을에 참여했던 각 마을별 총회에 상정되었음. 그 결과, 마을주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2021년 9월 현재기준, 대정읍 신도3리 신도1리와 한림읍 한림3리, 안덕면 대평리가 양성평등한 권리 혹은 여성비율 30% 이상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을규약이 개정되었음

○ 민주적 마을 운영을 위한 규약정비와 관련하여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의 내용과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개선방안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3>과 같음

- 제주여민회(2019)에서 제안한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은 목적, 주민권리, 주민의무, 마을 임원 조직, 의결권 · 선결권의 평등 관련 5개 조항으로 이루어졌고, 제주연구원(2020)에서 제안한 마을운영규약 개선안은 개념의 정의와 이해, 리 행정과 마을 자치의 구분, 주민과 마을회원의 자격구분, 마을총회 및 마을기구의 심의 의결의 명확성,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평등의 권리, 마을자산관리와 청구자격의 분리, 새로운 미래 가치 관련 7개 항목으로 구성됨

❍ 향후 마을별 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제주연구원(2020)에서 제안한 개선안의 해당 내용에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표 3-3 〉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및 제주마을운영규약 개선방안 비교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2019) [제주여민회(2019)]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개선방안(2020) [제주연구원(2020)]
① '목적' 조항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개념의 정의와 이해** 마을, 마을주민 마을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필요
	② 리 행정과 마을 자치의 구분 행정 보조 업무 및 서비스 전달 역할의 마을과 주민자치조직으로서 마을 구분 필요
② '주민권리' 조항 마을 여성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확보하도록 참여권·발언권 명시에 관한 사항	**③ 주민과 마을회원의 자격 구분** 주소와 거소를 비롯하여 참여 의사, 회원 가입과 소멸 절차를 통해 주민자격 구분 필요
③ '주민의무' 조항 관습적 차별을 극복하기 이한 배려·존중 의무 여성 등 마을 내 사회적 약자 보호 의무 추가에 관한 사항	
④ '마을 임원 조직' 조항 여성이 과소 대표되는 개발위원 등 여성참여율 증대에 관한 사항	**④ 마을총회 및 마을기구의 심의 의결의 명확성** 주민자격을 기준으로 총회 성립 필요. 마을 운영 전반과 특별사업 위원회 구분 필요
⑤ '의결권·선거권의 평등' 조항 마을 여성들의 의사 반영 현실화를 위해 1세대 1표 대신 1인 1표 기본 설정 관한 사항	**⑤ 선거권 및 피선거권, 평등의 원리** 주민 권리와 연동, 선거권·피선거권에서 평등의 원리 적용
	⑥ 마을자산관리와 청구자격의 분리 마을자산성립의 기원과 구분에 따른 청구 자격의 구분 필요
	⑦ 새로운 미래 가치 전통과 문화의 조화, 환경권, 성평등권, 세대 계층, 자치성 등 새로운 미래 가치 반영 필요

나.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인구 및 마을규약 현황

1)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현황

○ 2020년 기준 제주도 전체 인구는 674,635명이고 이 중 여성 비율은 49.8%를 차지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나의 광역체계로서 2개 행정시와 7읍, 5면, 31동 체계를 갖추고 있고, 12개 읍·면은 172개의 행정리로 구성됨. 읍·면 지역 인구 현황과 가구 당 평균 인구, 마을 당 평균 인구비를 살펴보면, 제주시 읍·면 전체 가구당 평균 인구는 2.08명이며, 마을 인구 평균은 1,161명임. 서귀포시 읍·면 전체 가구 평균 인구는 2.02명이며, 마을 인구 평균은 1,055명으로 제주시 지역보다 다소 낮음

〈 표 3-4 〉 제주도 읍·면·동 및 마을 인구 현황

(단위 : 명, 세대, %)

구 분	인구(A)	여성비율	가구(B)	비율(A/B)	마을(C)	비율(C/A)	비 고
제주도	**674,635**	**49.8**	**302,033**	**2.23**	-	-	-
제주시	**492,466**	**49.9**	**216,202**	**2.28**	-	-	-
읍·면	**111,493**	**48.7**	**53,501**	**2.08**	**96**	**1,161.3**	7개 읍·면
읍	99,047	48.7	46,727	**2.11**	71	1,395.0	
한림읍	21,249	48.8	10,551	2.01	21	1,011.8	
애월읍	36,913	48.5	16,842	2.19	26	1,419.7	
구좌읍	15,546	48.6	7,898	1.97	12	1,295.5	
조천읍	25,339	48.9	11,436	2.22	12	2,111.5	
면	12,446	48.9	6,774	**1.83**	25	497.8	
한경면	9,029	49.6	4,802	1.88	15	601.9	
추자면	1,677	46.2	1,006	1.67	4	419.2	
우도면	1,740	47.8	966	1.8	6	290.0	
동 지역	380,973	50.3	162,701	2.34	472(통)	807.1	19개 동
서귀포시	**182,169**	**49.5**	**85,831**	**2.12**	-	-	-
읍·면	**80,246**	**49.2**	**39,559**	**2.02**	**76**	**1,055.8**	5개 읍·면
읍	55,939	49.4	27,188	**2.05**	54	1,035.9	
남원읍	18,766	48.3	8,637	2.17	17	1.103.8	
대정읍	21,761	51.5	10,418	2.09	23	946.1	
성산읍	15,412	47.7	8,133	1.89	14	1,100.8	
면	24,307	48.7	12,371	**1.96**	22	1,104.8	
안덕면	11,982	48.5	6,196	1.93	12	998.5	
표선면	12,325	48.8	6,175	2.00	10	1,232.5	
동 지역	101,923	49.7	46,272	46,272	65(통)	1,568	12개 동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통계(2020), 외국인 제외.

○ 172개 행정리 중에서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2019년과 2020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대정읍 신도3리 신도1리, 안덕면 대평리, 한림읍 한림3리 금악리, 구좌읍 월정리, 성산읍 신산리 난산리 등 총 8개 마을의 인구 현황과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주시 한림읍에 소재한 금악리는 제주시 읍·면 지역 마을당 평균 인구 1,161명보다 다소 적은 1,097명이지만 한림3리와 월정리는 평균 인구 보다 작음. 성산읍에 소재한 신산리는 1,223명으로 서귀포시 읍·면 마을당 평균 인구 1,055명 보다 많은 반면에 신도1리, 신도3리, 난산리, 대평리 모두 평균인구의 절반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음. 시범마을별 전체 인구 중 여성 비율은 8개 마을 모두 제주도 전체 인구의 여성 비율(49.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표 3-5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인구 및 여성비율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인구(비율)	여성	여성비율(%)
제주시	한림읍		21,249(100.0)	10,363	48.8
		금악리	1,097(5.2)	520	47.4
		한림3리	165(0.8)	81	49.1
	구좌읍		15,546(100.0)	7,555	48.6
		월정리	740(4.8)	360	48.6
서귀포시	대정읍		21,764(100.0)	11.206	51.5
		신도1리	353(1.6)	172	48.7
		신도3리	229(1.1)	106	46.3
	성산읍		15,412(100.0)	7,354	47.7
		난산리	543(3.5)	249	49.1
		신산리	1,223(7.9)	600	45.9
	안덕면		11,982(100.0)	5,808	48.5
		대평리	551(4.6)	273	48.5

2)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규약 및 운영조직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에 참여한 8개 마을 규약의 세부 내용, 주민자격, 의결기구, 주민총회 성립조건, 선거권과 피선거권, 마을기구와 참여하는 남녀성비와 반영 여부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규약 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9월 현재 4개 마을이 성평등 조항을 반영한 마을규약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1개 마을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신도1리와 신도3리는 운영위원의 30% 여성위원으로 두는 개정 내용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실거주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개정 내용, 연령, 성별의 차별, 인권문제 등 배려와 존중, 적극적 대응,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균등한 권리보장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음. 대평리와 한림3리는 양성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함

〈 표 3-6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마을규약 개정 현황

구분		개정일	반영여부		주 요 내 용	
			반영	미반영	개정 전	개정 후
제주시	금악리	11.4.15		○		
	한림3리	20.2.7	○		없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평하고 동등한 권리
	월정리	19.1.25		○		
서귀포시	신도1리	20.1.22	○		신도1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이며, 각 세대의 세대주	운영위원 구성 30% 여성위원 신도1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이며, 실거주자(회원자격) 연령, 성별의 차별, 인권문제 등 배려와 존중, 적극적 대응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균등한 권리보장
	신도3리	20.1.10	○		운영위원회 구성 15인 중 여성 1인 선거권 1가구 1표	운영위원회 구성 15인 중 여성비율 30% 이상 선거권 1인 1표
	난산리			○		
	신산리	19.2.1		○		
	대평리	21.1.30	○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양성평등한 권리

자료: 본 연구의 사례조사 과정에서 마을별 협조로 수집된 자료 및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내부자료를 토대로 분석.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들의 마을공동체 회원자격을 살펴보면, 전입과 실거주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마을은 금악리, 한림3리, 신도1리 등 5개 마을.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 경과 조건이 있는 마을은 월정리, 난산리, 신산리 등 3개 마을임

○ 신도1리는 전입과 실거주 외 회원가입 여부에 따라 회원자격이 부여되고 있음.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모두 마을운영비 납부 조항이 있음

〈 표 3-7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의 주민자격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한림읍		구좌읍	대정읍		안덕면	성산읍	
		금악리	한리3리	월정리	신도1리	신도3리	대평리	난산리	신산리
전입 및 실거주	5	○	○		○	○	○		
일정시점 및 전입 후 일정기간 경과	3			○				○	○
회원가입 여부	1				○				
회비납부	8	○	○	○	○	○	○	○	○
특별(명예)회원				○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들의 의결기구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총회 7개 마을, 대의원총회 1개 마을, 개발위원회 5개 마을, 운영위원회 3개 마을이 있고, 마을발전 사업 등 특별기구 성격의 위원회가 있는 마을은 한림3리와 난산리 등 2개 마을이 있음. 선거관리위원회 향약개정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두고 있는 마을도 2개 마을임

〈 표 3-8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의 의결기구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한림읍		구좌읍	대정읍		안덕면	성산읍	
		금악리	한리3리	월정리	신도1리	신도3리	대평리	난산리	신산리
주민총회	7	○	○	○	○	○	○	○	
대의원(총)회	1								○
개발위원회	5	○	○	○		○		○	
운영위원회	3				○		○		○
소위원회	1							○	
임원회	1				○				
조합장	1			○					
반장회의	1						○		
자문위원회	1								○
선거관리위원회	2	○							○
향약개정위원회	1	○							
자산관리위원회	1								○
특별(기구)위원회	2		○					○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의 주민총회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한림3리와 신도1리, 신도3리는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주민총회 성립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월정리는 30인 이상, 대평리는 35인 이상, 금악리는 60인 이상 신산리는 재적대의원의 2/3이상 출석으로 총회가 성립되고 있음

〈 표 3-9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의 주민총회 성립 조건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한림읍		구좌읍	대정읍		안덕면	성산읍	
	금악리	한리3리	월정리	신도1리	신도3리	대평리	난산리	신산리
재적회원 과반 수 이상		○		○				
재적인원 1/3이상 출석					○			
개발위원 등 30인 이상			○				○	
주민 35인 이상						○		
주민 60인 이상	○							
재적대의원(50명) 2/3이상 출석								○

○ 주민 선거권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인 1표 금악리, 신도3리, 대평리 난산리 등 4개 마을, 1세대 1표 1개 마을이 있고, 신산리는 대의원에게만 투표권이 있음. 마을규약에서 투표권의 투표유형을 확인할 수 없는 마을도 2개 마을임

○ 선거연령은 난산리가 18세부터이며, 금악리, 한림3리, 월정리, 대평리는 19세 이상, 신도1리와 신도3리는 확인이 불가하며, 신산리는 대의원에게만 투표권한이 부여됨

○ 선거권은 마을공동체 참여회원 모두에게 부여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총회 참석자에 한해서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는 마을이 대부분임

○ 피선거권의 거주기간은 3년 2개 마을, 5년 2개 마을, 월정리와 대평리, 신산리는 10년 이상 거주, 금악리는 20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됨

〈 표 3-10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한림읍		구좌읍	대정읍		안덕면	성산읍	
				금악리	한리3리	월정리	신도1리	신도3리	대평리	난산리	신산리
선거권	투표 유형	1인 1표	4	○				○	○	○	
		1세대 1표	1		○						
		대의원	1								○
		승인·추대	1								○
		확인 불가	2			○	○				
	선거 연령	18세	1							○	
		19세	4	○	○	○			○		
		대의원	1								○
		확인 불가	2				○	○			
	총회참석자		6	○		○		○	○	○	○
	일정 거주기간		1		○						
	마을운영비		8	○	○	○	○	○	○	○	○
	조건 없음						○				
피선거권	피선거권 거주기간		-	20년	5년	10년	5년	3년	10년	3년	10년
	피선거권 나이		-	25세	25세	원적			19세	18세	30세
	확인 불가		2				○	○			

○ 주민총회 다음으로 마을의 최고 의결기구는 개발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임

○ 시범마을의 성평등규약개정 사항 중 여성위원의 40% 이상 의무 구성 여부를 반영한 마을을 살펴보면, 신도1리와 신도3리가 여성위원 30% 이상 개발위원, 운영위원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금악리, 대평리, 난산리 등 6개 마을은 해당 내용 없음

〈 표 3-11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마을기구 성비 현황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한림읍		구좌읍	대정읍		안덕면	성산읍	
		금악리	한리3리	월정리	신도1리	신도3리	대평리	난산리	신산리
여성위원 의무조항 여부		없음	없음	없음	○	○	없음	없음	없음
30% 이상 여성위원 구성 여부					안됨	○			
개발위원회	남	13	9	15				18	
	여	3	1	6				3	
	소계	16	10	21				21	
운영위원회	남				16	11	25		12
	여				2	7	10		4
	소계				18	18	35		16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들의 회원자격 내용을 살펴보면, 전입과 실거주자,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 경과 조건을 만족하는 자, 그리고 회원가입 여부 등 3개 조건을 마을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회원자격은 마을공동체 일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로서 자격 취득 여부부터 평등한 원리가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모두 공통 사항은 규약에 마을운영비 납부 조항 있음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의 주민총회 성립요건에서 재적인원의 대상과 범위가 없고, 특히 주민총회 성립 조건을 만족하는 주민 수가 재적인원의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판단할 수 없음

○ 선거권의 경우 회원자격을 취득한 자, 1인 1표 또는 1세대 1표 등의 내용이 누락되어 확인이 불가한 마을이 있으며, 1인 1표로 해석되지만 총회 참석자가 30인, 35인, 60인 이상, 대의원 2/3 이상 출석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선거권의 제한요소가 있음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의 성평등규약개정 논의 중 핵심 개정 사항으로 다뤄진 여성위원의 40% 이상 의무 구성 여부를 반영한 규약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신도1리와 신도3리가 여성위원 30% 이상을 개발위원, 운영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하지만 이를 실제 위원구성과 운영으로 실행한 마을은 신도3리 1개 마을임

다. SWOT 분석을 통한 제주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진단

○ 앞서 검토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 및 시범마을규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범마을의 규약개정은 4개 마을이 성평등 조항을 반영한 마을규약 개정을 완료하여 마을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와 양성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남. 그러나 규약개정 논의 중 핵심 쟁점인 여성위원 40%이상 의무 구성 사항 관련해서는 실제 위원구성과 운영으로 실행한 마을이 1개 마을에 불과함

○ 따라서 본 절에서는 향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SWOT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의 현황을 진단해보고자 함

1) 강점(Strength) : 행정-여성단체-마을 간 협력의 성평등 제도개선 노력

○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제주여민회 주관 '제주여성 100인 원탁회의' 통해 도출된 제주의 성평등 및 여성이슈 최우선 과제로 '여성대표성 강화'를 선정하게 됨[6]. 2018년에는 20개 행정리 마을 여성대표성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제주지역 마을에서의 여성 과소 대표성 구조를 확인하게 됨

○ 2019년에는 제주여민회와 전여농제주도연합과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국 최초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마련 및 공론화를 통해 마을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감

○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 수립과 함께 세부과제로 제시된 '여성친화(성평등)마을 조성 확산' 사업은 향후 여성의 지역사회 대표성 및 가치 증진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추진 예정에 있음. 앞으로도 생활공간인 마을 내에서 성평등 이슈를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성평등규약' 개정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의 추진과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7기에 신설된 행정 조직인 성평등정책관을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 또한 제주도가 갖는 강점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성평등마을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촉진하며 마을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는 중립적 활동역량을 갖춘 마을활동가의 역량 강화 지원 및 소통과 연대 체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2) 약점(Weakness) : 성인지 역량 갖춘 마을 활동 인적자원 취약

○ 현재 제주도의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은 '여성친화(성평등)마을 조성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마을 현장에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유사 공모사업에서 발견되는 행정주도의 사업구조가 발견되기도 함. 이러한 행정 주도의 사업구조에서 마을마다의

6) 제주여민회(2019). '여성대표성-제주여성이 말하다! 만들다! 이루다!'. 성평등마을규약표준조항 마련 및 공론화 사업 결과자료집. p.9.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시범사업의 추진은 상당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향후 마을마다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행정부서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의 사업 추진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제주지역 행정리 단위의 마을들은 고령화로 비롯된 인구변화, 이주민 증가, 다문화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마을마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이 취약한 구조에 있음. 이는 마을운영에 필요한 중심 역할을 수행할 자원의 취약으로 이어지고 있음. 결국 이러한 취약한 인적자원 구조는 향후 제주지역에서의 성평등마을 조성과정에 큰 제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또한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은 제주도 자체 보조금 사업으로 전여농제주도연합에서 수행하고 있음. 기타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하여 관련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마을 현장에서의 성평등 가치를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역량이 향상된 주민이 활동가로서 경험을 나누고 연대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 및 유관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3) 기회요인(Opportunity) : 성평등 이슈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증가

○ 제주사회는 민선7기 행정조직에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된 이래 지역의 성주류화 전략으로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마련된 '성평등규약 표준조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성평등마을 조성을 확산해 나가기 좋은 지역 여건이 형성됨

○ 특히 마을에서의 성별 고정관념 및 여성 과소대표성 등 성평등 이슈 해결을 위한 신규시범마을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음. 마을에서의 성평등 이슈는 법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마을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행정의 역할은 점점 한계에 부딪힐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역량이 향상된 일부 시민단체 및 마을자치회원 중심으로 여성 역할의 재조명과 가치 인식을 공유해 나가면서 주민들 스스로 마을 내 성평등 이슈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관심 속에서 성평등규약개정 신규시범마을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마을 주민들끼리 혹은 이웃한 마을과 주민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공동체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고 상호협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긍정의 영향을 형성하고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4) 위협요인(Threat) : 저출산·고령화로 비롯된 농촌마을 인구구조 변화

○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조성과정에서 가장 큰 위협요인은 저출산·고령화로 비롯된 행정리 단위 마을의 인구구조 변화일 것임. 마을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행정리의 유년인구와 젊은 연령대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이런 이유로 인해 마을마다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마을운영을 이끌 청장년 등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공동체 붕괴 등의 우려가 되는 상황임

○ 오랜 시간 마을주민들 간 맺어온 인적 네트워크는 마을을 운영하고 활력 넘치게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원일 것임.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인한 마을 인구구조의 변화는 제주지역 농촌마을 중심으로 펼치는 성평등마을 조성과정을 희망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현실일 것임. 따라서 누구나 살기 좋은 성평등한 마을문화 조성을 통해 자녀를 키우는 젊을 세대들이 유입되거나 현재의 인구 유출이 방지될 수 있도록 사업과 연동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 표 3-12 〉 제주지역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사업 SWOT분석

· 행정-여성단체-마을 간의 협력을 통한 성평등 제도 개선 노력 · 전국 최초 성평등마을규약 표준 조항 마련 등 가시적 성과 도출 · 제주도정의 지역 성주류화 정책 확산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 및 제주도비 투입 및 지원 · 시범사업 과정에 역량이 향상된 주민과 공동체 연대체계 기반 형성	**S (강점)**
W (약점)	· 성인지 역량 갖춘 마을 활동 인적 자원 부족 · 보조금사업 방식의 행정주도 민간단체 지정 사업 추진 구조 · 성평등 가치 지향 및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마을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미약
· 성평등 이슈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증가 및 소통기반 마련 ·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신설 이후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증가 · 시범마을 참여자 및 관련 단체와의 외연 확장 등 네트워크 구축	**O (기회)**
T (위협)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마을 인구 구조의 변화 · 마을운영에 참여할 청장년 연령대 부족 및 공동체 붕괴 우려 · 주민공동체 형성 미약 및 주민 참여 인적자원 기반 취약

2. 제주마을의 여성 대표성 및 지역 생활 여건 실태

가. 제주 마을리더의 여성 대표성

○ 2019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이장 총 172명 중 여성 이장은 4명(2.3%)뿐이고, 통장 총 568명 중 여성 통장 비율은 38.7%로 나타나, 마을단위의 행정 의사결정구조의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특히 여성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이해응 외 2020)

〈 표 3-13 〉 행정시별 성별 통 · 리장 현황(2019)(1)

(단위 : 명, %)

구분	전체			통장			이장		
	계	여성	여성 비율	계	여성	여성 비율	계	여성	여성 비율
제주특별자치도	740	224	30.3	568	220	38.7	172	4	2.3
제주시	594	215	36.2	498	212	42.6	96	3	3.1
애월읍	26	0	0.0	-	-	-	26	0	0.0
한림읍	21	2	9.5	-	-	-	21	2	9.5
한경면	15	1	6.7	-	-	-	15	1	6.7
조천읍	12	0	0.0	-	-	-	12	0	0.0
구좌읍	12	0	0.0	-	-	-	12	0	0.0
우도면	4	0	0.0	-	-	-	4	0	0.0
추자면	6	0	0.0	-	-	-	6	0	0.0
건입동	20	9	45.0	20	9	45.0	-	-	-
노형동	61	33	54.1	61	33	54.1	-	-	-
도두동	7	2	28.6	7	2	28.6	-	-	-
봉개동	8	0	0.0	8	0	0.0	-	-	-
삼도1동	18	5	27.8	18	5	27.8	-	-	-
삼도2동	19	13	68.4	19	13	68.4	-	-	-
삼양동	25	6	24.0	25	6	24.0	-	-	-
아라동	30	6	20.0	30	6	20.0	-	-	-
연동	50	24	48.0	50	24	48.0	-	-	-
오라동	18	3	16.7	18	3	16.7	-	-	-
외도동	24	9	37.5	24	9	37.5	-	-	-
용담1동	15	6	40.0	15	6	40.0	-	-	-
용담2동	23	9	39.1	23	9	39.1	-	-	-
이도1동	17	8	47.1	17	8	47.1	-	-	-
이도2동	61	32	52.5	61	32	52.5	-	-	-
이호동	8	3	37.5	8	3	37.5	-	-	-
일도1동	11	4	36.4	11	4	36.4	-	-	-
일도2동	48	23	47.9	48	23	47.9	-	-	-
화북동	35	17	48.6	35	17	48.6	-	-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2019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에서 인용).

〈 표 3-14 〉 행정시별 성별 통 · 리장 현황(2019)(2)

(단위 : 명, %)

구분	전체			통장			이장		
	계	여성	여성 비율	계	여성	여성 비율	계	여성	여성 비율
제주특별자치도	740	224	30.3	568	220	38.7	172	4	2.3
서귀포시	146	9	6.2	70	8	11.4	76	1	1.3
안덕면	12	0	0.0	-	-	-	12	0	0.0
대정읍	23	1	4.3	-	-	-	23	1	4.3
남원읍	17	0	0.0	-	-	-	17	0	0.0
표선면	10	0	0.0	-	-	-	10	0	0.0
성산읍	14	0	0.0	-	-	-	14	0	0.0
대륜동	4	0	0.0	4	0	0.0	-	-	-
대천동	11	1	9.1	11	1	9.1	-	-	-
동홍동	12	3	25.0	12	3	25.0	-	-	-
서홍동	5	0	0.0	5	0	0.0	-	-	-
송산동	2	0	0.0	2	0	0.0	-	-	-
영천동	5	0	0.0	5	0	0.0	-	-	-
예래동	5	0	0.0	5	0	0.0	-	-	-
정방동	6	2	33.3	6	2	33.3	-	-	-
중문동	4	0	0.0	4	0	0.0	-	-	-
중앙동	8	2	25.0	8	2	25.0	-	-	-
천지동	6	0	0.0	6	0	0.0	-	-	-
효돈동	2	0	0.0	2	0	0.0	-	-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2019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에서 인용).

○ 또한 제주 어촌계장 총 102명 중 여성은 23.5%를 차지하고, 추자도는 여성 어촌계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과소 대표되고 있음(이해응 외 2020)

〈 표 3-15 〉 제주 성별 어촌계장 현황(2019)

(단위 : 명, %)

수협별	어촌계 수	어촌계장 수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계	102	102	24	102	23.5
제주시	33	33	11	22	33.3
한림	18	18	3	15	16.7
추자도	5	5	-	5	0.0
서귀포	20	20	4	16	20.0
모슬포	13	13	3	10	23.1
성산포	13	13	3	10	23.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내부자료(2019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에서 인용).

나. 제주 지역 생활 여건 실태

○ 본 절의 내용은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주변 환경의 안전 및 가족친화 환경, 지역사회 활동 여건 등에 대한 정책요구를 살펴보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연구」(이해응 외, 2020) 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던 제주거주 만 18세 이상 도민 1,045명 대상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관련 내용 중심으로 재분석하여 살펴봄

1) 안전 환경

□ 지역의 안전 환경을 위한 안전 서비스 장치, 자율방범대 등 개선 요구 높음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 개선 사항'에 대해 거주지·성별로 보면, 거주지별 여성 집단 및 남성 집단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 여성 집단 및 남성 집단 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 서비스나 장치 마련(귀가도우미, 안전택시, CCTV, 가로등, 조명, 무인택배함, 위급사항 비상벨 등)'이 개선사항 1순위로 지적됨. 다음으로 '마을단위의 자율방범대(치안유지 및 차량통제, 주민안전 등)의 활동을 개선사항으로 지적됨

〈 그림 3-3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 환경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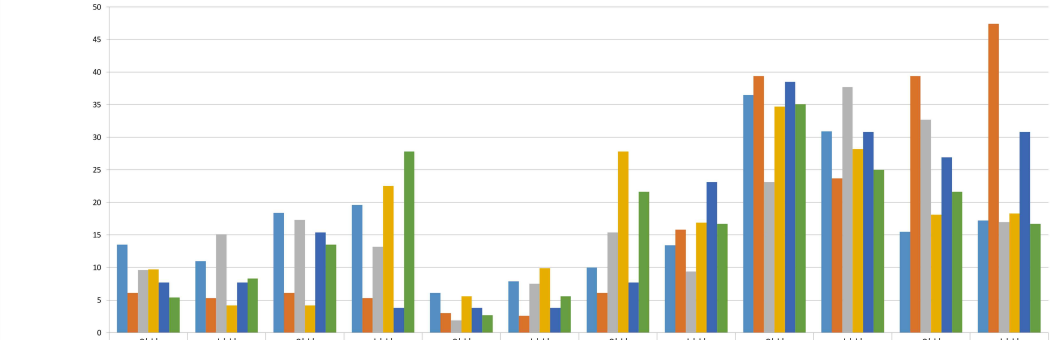

	공공상담소		무장애보행환경		위험시 이웃의 도움		여성 및 사회적 약자 안전		안전서비스 장치		자율방법대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제주시동지역	13.5	11	18.4	19.6	6.1	7.9	10.0	13.4	36.5	30.9	15.5	17.2
제주시동부읍면	6.1	5.3	6.1	5.3	3	2.6	6.1	15.8	39.4	23.7	39.4	47.4
제주시서부읍면	9.6	15.1	17.3	13.2	1.9	7.5	15.4	9.4	23.1	37.7	32.7	17
서귀포시동지역	9.7	4.2	4.2	22.5	5.6	9.9	27.8	16.9	34.7	28.2	18.1	18.3
서귀포시동부읍면	7.7	7.7	15.4	3.8	3.8	3.8	7.7	23.1	38.5	30.8	26.9	30.8
서귀포시서부읍면	5.4	8.3	13.5	27.8	2.7	5.6	21.6	16.7	35.1	25.0	21.6	16.7

주1. N=1,045(여성 n=530, 남성 n=515)
주2. 지역별 여성(χ^2=51.017**)은 p<.01. 수준에서, 남성(χ^2=40.008*)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지역의 불안환경 여건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불안하다고 느낌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불안한 환경에 대한 전반적 여건'(7점 만점)에 대해 거주지·성별로 보면, 서귀포시 동부읍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여성 집단 내에서는 제주시 동부읍면이 5.16점으로 가장 높고 제주시 서부읍면이 3.30점으로 가장 낮았음
- 남성 집단 내에서는 서귀포시 동지역이 3.46점으로 가장 높고 제주시 동부읍면이 1.6점으로 가장 낮았음
- 특히, 제주시 동부읍면의 경우 불안 환경에 대한 성별격차(여성-남성)는 3.56점으로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림 3-4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 불안 환경

(단위: 점/7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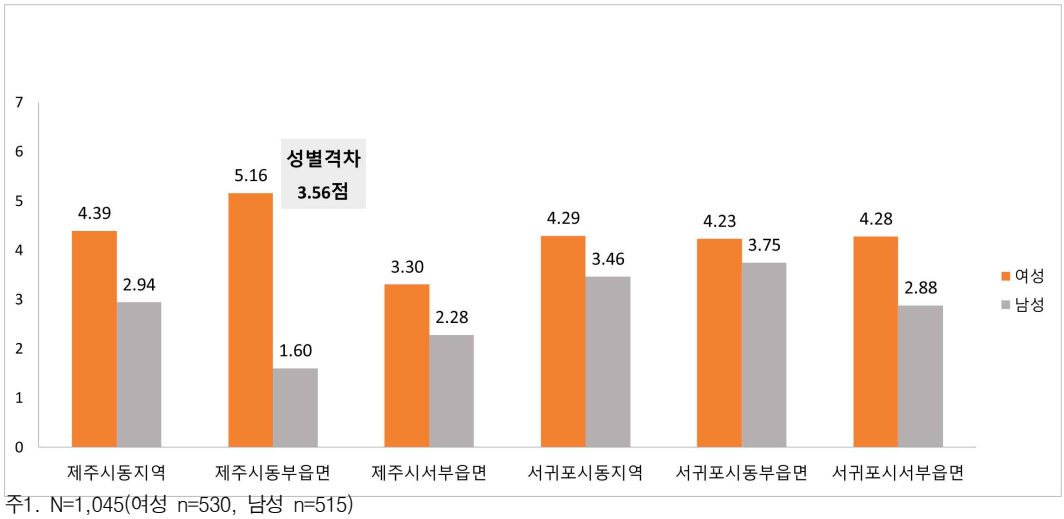

주1. N=1,045(여성 n=530, 남성 n=515)
주2. 지역별 여성(F=6.778***) 및 남성(F=13.116***)은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2) 가족친화 환경

□ 가족친화 지역 환경에 대해 대체로 불충분하다고 여김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가족친화 전반적 여건'(7점 만점)에 대해 거주지·성별로 보면, 거주지별 여성집단 및 남성집단 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여성 집단 및 남성 집단 모두 제주시 서부읍면 여성 2.80점, 제주시 서부읍면 남성 2.50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함

〈 그림 3-5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 가족친화 환경

(단위: 점/7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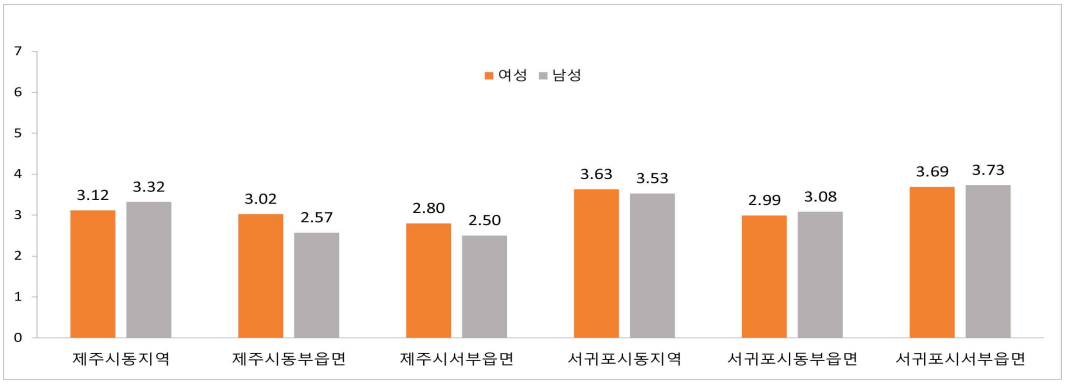

주1. N=1,045(여성 n=530, 남성 n=515)
주2. 지역별 여성(F=5.980***) 및 남성(F=9.697***)은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돌봄 시설에 대한 개선요구 높음

○ 가족친화 여건 중 우선 개선 사항에 대해, 제주시 동부읍면과 서귀포시 동부읍면 모두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돌봄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가, 서귀포시 서부읍면은 '여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게 나타남

〈 그림 3-6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 가족친화 환경 개선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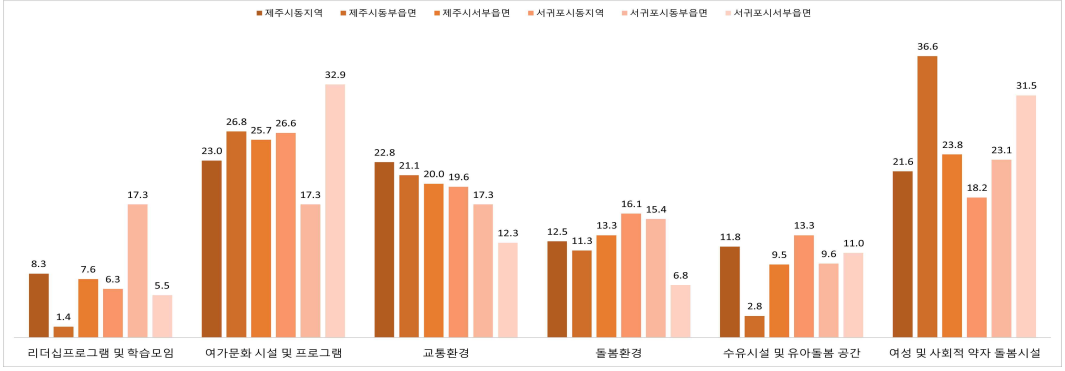

주. 지역별(χ^2=38.537*)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3)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여건 인식

□ 대부분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여건에 대해 낮게 인식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여건'(7점 만점)에 대해 거주지·성별로 보면, 여성 집단 및 남성 집단 모두 제주시 서부읍면 여성 3.01점 제주시 서부읍면 남성 2.78점으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여건에 대해 낮게 인식함

〈 그림 3-7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여건

(단위: 점/7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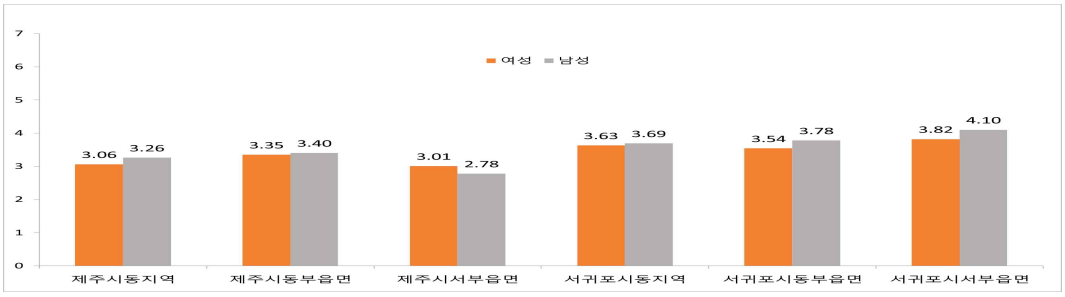

주1. N=1,045(여성 n=530, 남성 n=515)
주2. 지역별 여성(F=6.158***) 및 남성(F=8.103***)은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함.

□ 다양한 공동체 및 마을모임, 주민 주도의 활동 공간에 대한 요구 높음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으로 제주시 동부읍면과 서귀포시 서부읍면은 '주민 중심의 다양한 공동체·마을모임', 서귀포시 동부읍면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남

〈 그림 3-8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개선 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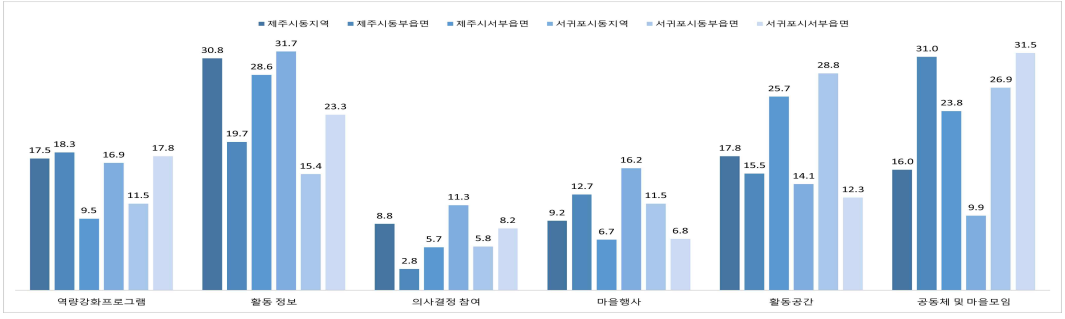

주. 지역별(χ^2=59.234***)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3. 소결 및 시사점

○ 제주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의 추진현황과 지역 생활 여건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한 8개 행정리의 규약과 위원회 구성 현황 분석, 제주 거주 만 18세 이상 도민 1,045명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 2차 분석 등 검토한 결과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추진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여성이슈 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2017년 제주여민회 주관 '제주지역 여성 대표성 증진' 목적의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 최우선 여성이슈 과제를 선정한 후 2018년 20개 행정리 마을 현장조사로 진행됨.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 성평등마을 규약 표준조항 마련 및 공론화 등으로 연속 추진된 민관협력 여성친화도시 사업임

○ 특히 2019년에는 제주여민회와 전여농제주도연합이 컨소시엄으로 추진사업단을 구성하여 성평등 프로그램 기획, 시범마을별 TF팀 구성 및 운영(이장, 부녀회장, 부녀회원 등 참여), 마을별 성평등마을규약안 만들기 등의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그 결과, 참여했던 8개 마을 중 4개 마을이 마을총회를 거쳐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약을 개정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남. 2020년부터 2021년 11월 현재는 전여농제주도연합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본 연구의 사례인 2019~2020년 성평등규약시범마을은 2019년에는 3개 마을(대정읍 신도3리, 한림읍 한림3리, 성산읍 신산리), 2020년에는 5개 마을(대정읍 신도1리, 한림읍 금악리, 안덕면 대평리, 구좌읍 월정리, 성산읍 난산리)이 해당됨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인구 및 마을운영규약 현황

○ 2019년과 2020년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에 참여하였던 8개 시범마을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한림읍에 소재한 금악리는 제주시 읍·면지역 마을당 평균 인구 1,161명보다 다소 적은 1,079명이고, 한림읍 한림3리와 구좌읍 월정리는 평균 인구보다 작음. 성산읍에 소재한 신산리는 1,223명으로 서귀포시 읍·면 마을당 평균 인구 1,055명 보다 많은 반면 대정읍 신도1리와 신도3리, 성산읍 난산리와 안덕면 대평리는

모두 평균인구의 절반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음. 8개 마을 모두 인구 중 여성비율은 제주도 전체 인구의 여성비율인 49.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의 규약 및 운영조직을 살펴보면, 2021년 9월 현재 4개 마을이 성평등조항을 반영한 마을규약 개정을 완료하였고, 1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음. 대정읍 신도1리와 신도3리는 운영위원의 30% 여성위원으로 두는 개정 내용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실거주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개정 내용, 연령, 성별의 차별, 인권문제 등 배려와 존중, 적극적 대응, 발언권과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균등한 권리보장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음. 한림읍 한림3리와 안덕면 대평리는 양성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함

○ 마을에서의 최고 의결기구는 주민총회로 시범마을의 주민총회 성립요건을 다음과 같음. 한림3리와 신도1리, 신도3리는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주민총회 성립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월정리는 30인 이상, 대평리는 35인 이상, 금악리는 60인 이상 신산리는 재적대의원의 2/3이상 출석으로 총회가 성립됨

- 선거권은 1인 1표 금악리, 신도3리, 대평리, 난산리 등 4개 마을, 1세대 1표 1개 마을, 신산리는 대의원에게만 투표권이 있음. 투표권의 투표유형을 확인할 수 없는 마을도 있음. 선거권은 마을공동체 참여회원 모두에게 부여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총회 참석자에 한해서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임

○ 성평등규약개정 사항 중 여성위원의 40% 이상 의무 구성 여부를 반영한 마을을 살펴보면, 신도1리와 신도3리가 여성위원 30% 이상 개발위원, 운영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금악리, 대평리, 난산리 등 6개 마을은 해당 내용이 없음. 실제 위원구성과 운영으로 실행한 마을은 신도3리 1개 마을임

□ SWOT 분석을 통한 제주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현황 진단

○ 강점(Strength) : 행정-여성단체-마을 간 협력의 성평등 제도개선 노력

- 강점요인으로는 행정과 여성단체·여성농민단체 및 마을 간의 협력을 통한 성평등 제도 개선 노력, 전국 최초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마련 등 가시적 성과 도출,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 과제로 제주도정의 지역 성주류화 정책 확산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 및 제주도 자체 예산 투입·지원 등을 둘 수 있음

○ 약점(Wsakness) : 성인지 역량 갖춘 마을 활동 인적자원 취약
- 약점요인으로는 성인지 역량을 갖춘 마을 활동가 등 인적 자원 부족, 보조금 사업 방식의 행정주도 민간단체 지정 사업 추진 구조, 성평등 가치 지향 및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마을 관련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미약 등을 설정할 수 있음

○ 기회(Opportunity) : 성평등 이슈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증가
- 기회요인으로는 성평등 이슈 해결에 대한 제주지역 사회의 관심 증가, 제주도정의 성평등정책관 신설 이후 지역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관심 증가, 소통과 연대로 다양한 활동 주체 간 공동체 네트워크 확장 기반 가능성 등을 둘 수 있음

○ 위협(Threat) : 저출산·고령화로 비롯된 농촌마을 인구구조 변화
- 위협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행정리 농촌마을의 인구구조 변화, 마을 운영에 참여할 청장년 연령대 부족 및 공동체 붕괴 우려, 이에 따라 주민참여 인적 자원 기반이 취약하여 성평등마을 조성 과정이 희망적으로만 볼 수 없는 현실 등임

□ 제주 마을리더의 여성 대표성

○ 2019년 기준 제주도 전체 이장(172명) 중 여성 이장 비율은 2.3%이고, 전체 통장(568명) 중 여성 통장 비율은 38.7%, 전체 어촌계장(102명) 중 여성비율은 23.5%로 여성 과소대표성 뚜렷함

□ 제주 지역 생활 여건 실태

○ (안전 여건)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 안전 여건에 대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안전하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고, 여성 집단 및 남성 집단 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서비스나 장치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불안 여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불안한 환경 여건을 살펴보면, 서귀포시 동부읍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특히 여성 집단 내에서 제주시 동부읍면이 5.16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 지역에서의 성별격차(여성-남성)는 3.56점으로 여성들의 불안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가족친화 여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가족친화 여건(7점 만점)은 비교적 불충분하다고 인식함. 특히 제주시 서부읍면 여성 2.80점, 남성 2.50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 지역에서는 '여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 활동 여건)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의 전반적인 여건(7점 만점)을 살펴보면, 여성 집단 및 남성 집단 모두 제주시 서부읍면 여성 3.01점, 제주시 서부읍면 남성 2.78점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제주시 동부읍면과 서귀포시 서부읍면은 '주민 중심의 다양한 공동체·마을모임'을, 서귀포시 동부읍면은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시사점

○ 앞서서 제주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의 추진현황과 지역 생활 여건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도출됨

○ 첫째, 민주적 마을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 정부의 성 주류화 전략으로서 여성친화도시 확산 등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여성정책이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제주도 역시 마을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 생활권 기반의 행정리 마을은 현재 고령화와 같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참여 인적자원 기반 약화, 주민공동체 형성 미약, 문화·여가 편의시설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성평등마을 조성 과정에서는 각 마을별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 스스로 성평등 이슈 발굴 및 논의가 가능하도록 성인지 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 둘째, 소통과 연대가 가능한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을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해 오면서 2019년에는 제주여민회-전여농제주도연합의 컨소시엄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 민관 협력 방식으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마을주민들 스스로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일 생활공간에 사는 주민들끼리, 이웃하는 주민들 간에 사고와 인식을 공유하는 성평등한 지역사회 문화 기반은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마을 조성과정에서 역량이 향상된 주민이 활동가로서 경험을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행정 및 관련 기관들과의 연대체계 강화 필요함

제 4 장

제주지역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사례 탐색

1. 설문조사 결과
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가.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 방법 및 분석 방법

○ 조사는 2019~2020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8개 행정리 자치회원 등 마을 주민 총 120명 대상으로 구조화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함

- 조사기간은 2021년 8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여농제주도연합 및 각 마을별 리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각 시범마을별 의결기구, 자생단체, 주민 대상으로 조사함
- 표본추출방법은 각 마을별 성별, 연령별, 마을자치활동 분야 등을 고려하여 임의표집하고, 수집 자료는 통계패키지인 SPSS 25에 의해 빈도 및 교차분석(Frequency, Cross-Tabulation)과 차이검증으로 진행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8.95%임. 단, **표본수가 적어 오차범위가 크다는 점에서 '경향성 파악'에 중점을 두고 조사 결과를 해석하였음**
- 조사 내용은 생활환경, 성평등마을, 시범마을 등에 대한 인식 및 정책요구 등임

〈 표 4-1 〉 주민 요구조사 내용

구분	내용
일반적 특성	· 연령, 성별, 마을의 중요 의사결정 참여 수준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 생활복지 시설 유무 및 접근성 수준(4점 척도) · 현재 마을 생활에서 겪는 어려운 점(2가지) · 마을에서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을에서의 대응
성평등마을에 대한 인식	· 성평등 마을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 · 우리 마을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문제
시범마을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요구	· 성평등마을규약 개정 시범마을 사업 참여 여부 및 참여 프로그램 · 성평등마을규약 제(개)정에 대한 인지도 · 개정이 필요하다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개정이 필요 없다면 그 이유 · 성평등마을 관련 사업 과제의 중요도 정도 ·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구 사항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전체 응답자는 120명이고, 참여자 비율로 보면 여성 55.0%, 남성 45.0%임

- 연령별로 보면, 여성은 50대 51.5%, 60대 21.2%, 40대 16.7%, 30대 6.1%, 18~29세 4.5% 순. 남성은 60대 38.9%, 50대 35.2%, 40대 14.8%, 30대 9.3%, 18~29세 1.9% 순
- 마을의사결정별 참여수준이 높다(다소+매우)를 보면, 여성은 자생단체 77.2%, 마을의결기구 54.6%, 주민공동체 54.5% 순. 남성은 마을의결기구 72.2%, 자생단체 62.9%, 주민공동체 51.8% 순임. 여성은 자생단체 참여 수준 비율이 높고 남성은 마을의결기구 참여 수준 비율이 높음

〈 그림 4-1 〉 응답자 일반적 특성 _ 성별, 연령별, 마을의사결정참여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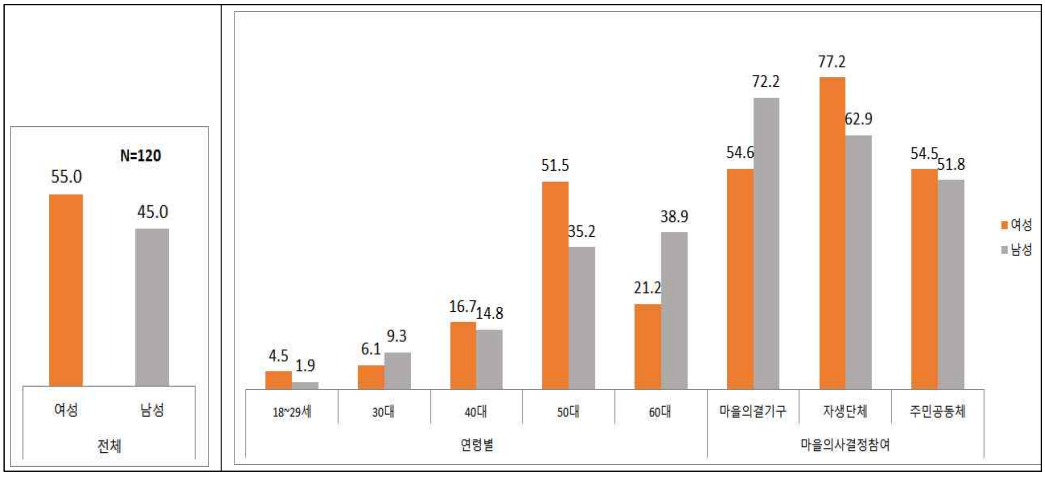

〈 표 4-2 〉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전체(빈도)	여성	남성
전체		120(100.0)	66(100.0)	54(100.0)
연령	18-29세	4(3.3)	3(4.5)	1(1.9)
	30대	9(7.5)	4(6.1)	5(9.3)
	40대	19(15.8)	11(16.7)	8(14.8)
	50대	53(44.2)	34(51.5)	19(35.2)
	60대	35(29.2)	14(21.2)	21(38.9)
거주지역	한림3리	15(12.5)	9(13.6)	6(11.1)
	금악리	15(12.5)	14(21.2)	1(1.9)
	대평리	15(12.5)	7(10.6)	8(14.8)
	월정리	15(12.5)	5(7.6)	10(18.5)
	신도1리	20(16.7)	12(18.2)	8(14.8)
	신도3리	10(8.3)	5(7.6)	5(9.3)
	신산리	15(12.5)	9(13.6)	6(11.1)
	난산리	15(12.5)	5(7.6)	10(18.5)
마을의결기구 참여수준	매우 낮다	18(15.0)	12(18.2)	6(11.1)
	다소 낮다	27(22.5)	18(27.3)	9(16.7)
	다소 높다	40(33.3)	17(25.8)	23(42.6)
	매우 높다	35(29.2)	19(28.8)	16(29.6)
자생단체 참여수준	매우 낮다	14(11.7)	6(9.1)	8(14.8)
	다소 낮다	21(17.5)	9(13.6)	12(22.2)
	다소 높다	51(42.5)	29(43.9)	22(40.7)
	매우 높다	34(28.3)	22(33.3)	12(22.2)
주민공동체 참여수준	매우 낮다	26(21.7)	12(18.2)	14(25.9)
	다소 낮다	30(25.0)	18(27.3)	12(22.2)
	다소 높다	49(40.8)	27(40.9)	22(40.7)
	매우 높다	15(12.5)	9(13.6)	6(11.1)

나. 조사 결과

1)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 생활복지 시설 유무 및 접근성 수준

○ '생활복지 시설이 마을에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마을회관'과 '경로당' 100.0%로 나타났고, 이어서 '복지회관' 72.5%, '약국' 11.7%, '여성회관' 7.5%, '돌봄시설'과 '보건지소' 각 3.3% 순임. '병·의원'은 0.0%임

○ 하위 '생활복지 시설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대상으로 시설의 접근성(4점 만점)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를 100점 환산점수로 살펴보면, 복지회관 75.1점, 돌봄시설 75점, 경로당 71.4점, 보건지소 70.4점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약국(50.0점)과 여성회관(48.1점)은 중간 아래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그림 4-2 〉 생활복지 시설 유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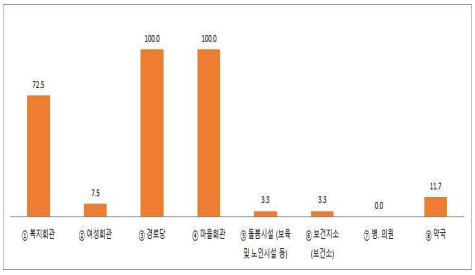

〈 그림 4-3 〉 생활복지 시설 접근성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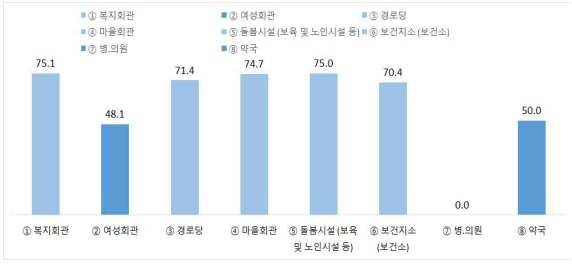

〈 표 4-3 〉 생활복지 시설 접근성

(단위: 명, %, 점)

생활복지시설 접근성 수준	전체 응답자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평균 (점)
1) 복지회관	87	2.3	10.3	47.1	40.2	75.1
2) 여성회관	9	11.1	44.4	33.3	11.1	48.1
3) 경로당	120	7.5	9.2	45.0	38.3	71.4
4) 마을회관	120	4.2	9.2	45.0	41.7	74.7
5) 돌봄시설(보육 및 노인시설 등)	4	0.0	0.0	75.0	25.0	75.0
6) 보건지소(보건소)	62	11.3	8.1	38.7	41.9	70.4
7) 병·의원	0	0.0	0.0	0.0	0.0	0.0
8) 약국	14	14.3	28.6	50.0	7.1	50.0

주. 4점 만점(①매우 낮다④매우 높다)을 백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0~25점미만'은 매우 부정적(불만족), '25~50점미만'은 부정적(불만족), '50~75점미만'은 긍정적(만족), '75~100점미만'은 매우 긍정적(매우 만족)으로 평가함.

□ 마을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 ‘현재 마을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건강시설 여건이 불편하다’가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문화, 여가,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다’ 27.5%, ‘교육, 보육, 노인 등 교육 및 돌봄시설 여건이 부족하다’ 24.2% 순임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건강시설 여건이 불편하다’ 37.9%로, 남성은 ‘문화, 여가,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다’ 33.3%로 마을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4-4> 참조)

〈 그림 4-4 〉 마을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_ 성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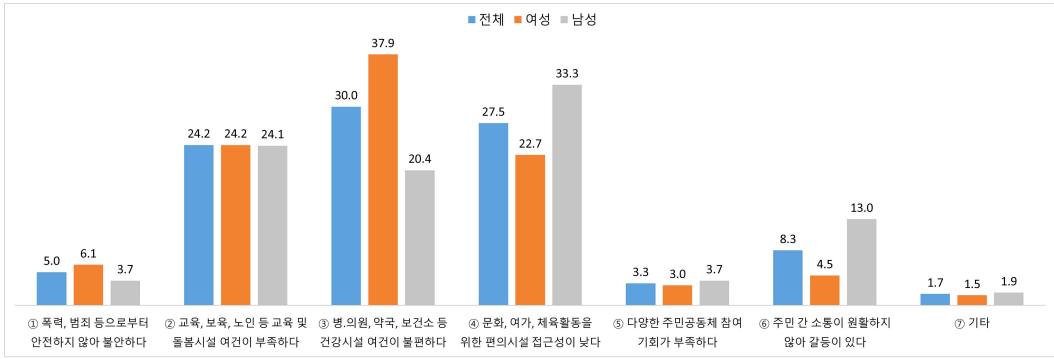

주. ⑦ 기타의 의견에는 민원, 쓰레기, 주차문제 등으로 응답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마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마을에서 건강, 문화와 여가, 돌봄 시설 여건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남. 한림3리는 ‘문화, 여가,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다’ 46.7%, 금악리는 ‘교육, 보육, 노인 등 교육 및 돌봄 시설 여건이 부족하다’ 및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건강시설 여건이 불편하다’ 각 26.7%, 대평리는 ‘문화, 여가,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다’ 40%, 월정리는 ‘주민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갈등이 있다’ 46.7%, 신도1리는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건강시설 여건이 불편하다’ 40.0%, 신도3리는 ‘문화, 여가,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다’ 60.0%, 신산리와 난산리는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건강시설 여건이 불편하다’ 각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림 4-5 〉 마을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_ 지역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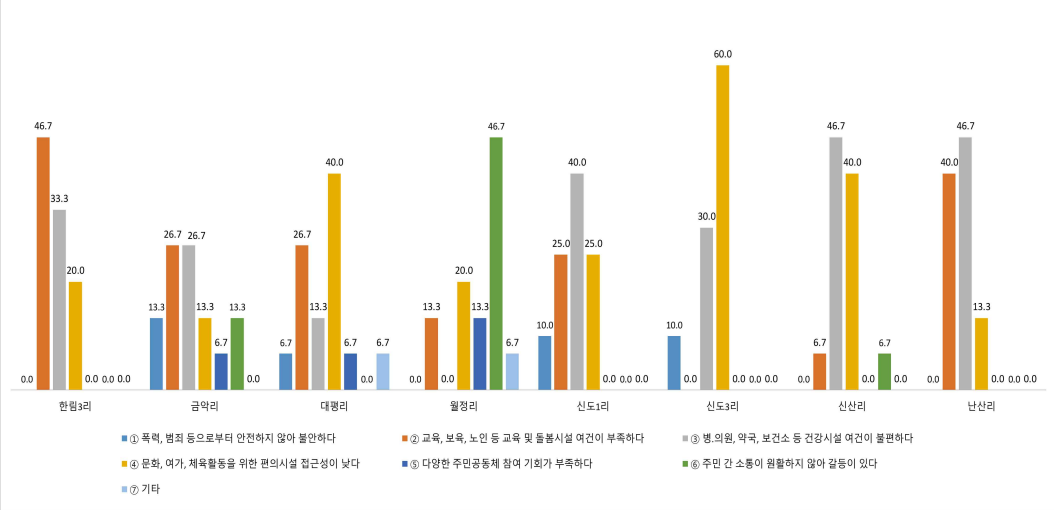

〈 표 4-4 〉 마을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120	5.0	24.2	30.0	27.5	3.3	8.3	1.7
성별	여성	66	6.1	24.2	37.9	22.7	3.0	4.5	1.5
	남성	54	3.7	24.1	20.4	33.3	3.7	13.0	1.9
거주지역	한림3리	15	0.0	46.7	33.3	20.0	0.0	0.0	0.0
	금악리	15	13.3	26.7	26.7	13.3	6.7	13.3	0.0
	대평리	15	6.7	26.7	13.3	40.0	6.7	0.0	6.7
	월정리	15	0.0	13.3	0.0	20.0	13.3	46.7	6.7
	신도1리	20	10.0	25.0	40.0	25.0	0.0	0.0	0.0
	신도3리	10	10.0	0.0	30.0	60.0	0.0	0.0	0.0
	신산리	15	0.0	6.7	46.7	40.0	0.0	6.7	0.0
	난산리	15	0.0	40.0	46.7	13.3	0.0	0.0	0.0

현재 마을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① 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불편하다	⑤ 다양한 주민공동체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
② 교육, 보육, 노인 등 교육 및 돌봄시설 여건이 부족하다	⑥ 주민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갈등이 있다
③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건강시설 여건이 불편하다	⑦ 기타
④ 문화, 여가,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다	

□ 마을에서 폭력 발생 시 대응

○ ‘마을에서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이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서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 15.0%, ‘잘 모르겠음’ 12.5%, ‘가족 또는 이웃(친구)들 간에 해결’ 10.0%, ‘마을의 공동 대응팀에서 해결’ 6.7% 순으로 조사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53.0%) 남성(55.6%) 모두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여성 ‘잘 모르겠음’ 16.7%, 남성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 14.8%로 나타남
- 이는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의 주민의무 조항에 마을 내 인권문제(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폭력 등)발생 시 주민회원 누구나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의무와 관련하여 성평등 마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모색 필요함

〈 그림 4-6 〉 마을에서 폭력 상황 시 대응 _ 성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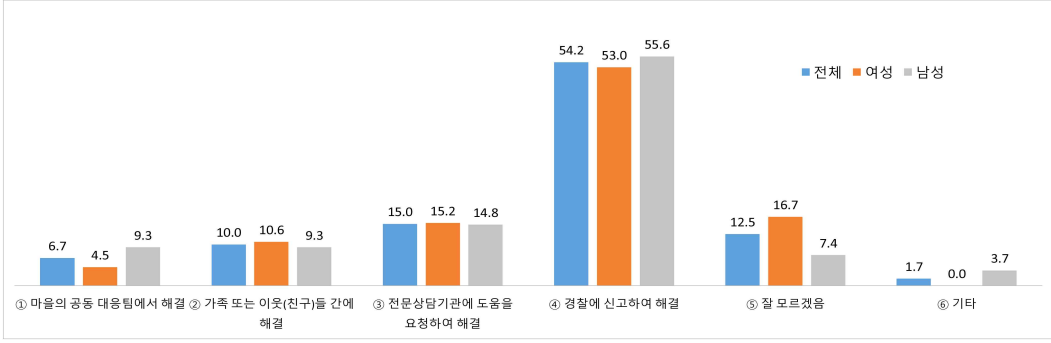

주. ⑦ 기타의 의견에는 ‘우리 동네에는 폭력이 없음’으로 응답함.

〈 표 4-5 〉 마을에서 폭력 상황 시 대응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120	6.7	10.0	15.0	54.2	12.5	1.7
성별	여성	66	4.5	10.6	15.2	53.0	16.7	0.0
	남성	54	9.3	9.3	14.8	55.6	7.4	3.7

마을에서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등) 상황 시 대응					
①	마을의 공동 대응팀에서 해결	③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	⑤	잘 모르겠음
②	가족 또는 이웃(친구)들 간에 해결	④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	⑥	기타

2) 성평등마을에 대한 인식

□ 성평등마을 수준

○ '다른 마을에 비해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이 농가소득 및 재산에 대한 여성 소유권 인정, 마을운영에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인정,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정 등 성평등마을 수준이 어떠한 지'(4점 만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2.69점으로 여성 2.15점보다 더 높았음.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이 더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성별 마을의사결정 참여형태별로 살펴보면, '마을의결기구참여 수준별'은 남성 2.91점으로 여성 2.65점보다 더 높게 나타남. 반면 '자생단체조직참여 수준별'은 여성 3.02점 남성 2.70점, '주민공동체참여 수준별'은 여성 2.37점, 남성 2.15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남. 즉, 남성은 '마을의사결정기구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은 '자생단체조직참여' 수준 및 '주민공동체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더 성평등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응답자들의 성평등마을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를 마을의사결정 참여형태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마을의결기구참여 수준별', '자생단체조직참여 수준별', '주민공동체참여 수준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이 결과를 토대로 회귀분석한 결과, '주민공동체참여 수준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즉, 자발적 주민공동체 참여수준이 높은 여성 응답자일수록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이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여성 역할의 재조명과 가치 인식을 공유하고 주민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 그림 4-7 〉 성평등마을 수준에 대한 인식 _ 성별, 마을의사결정 참여형태별

(단위: 점, 4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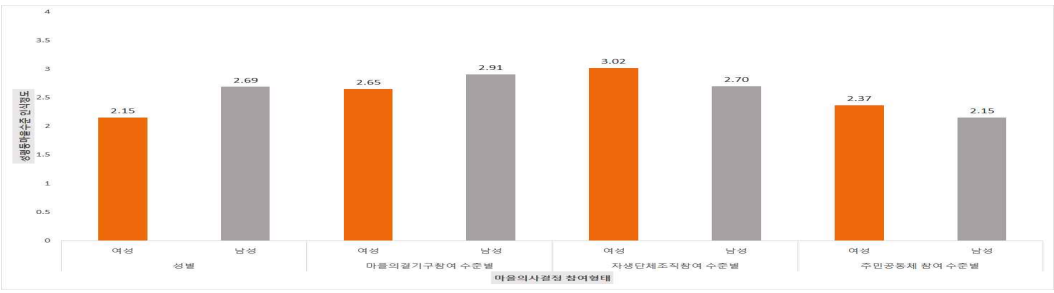

〈 표 4-6 〉 성평등마을 수준 인식 차이 _ 성별, 마을의사결정 참여형태별

(단위: 명, 점)

구분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의 성평등마을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		
		사례 수	평균(4점 만점)	t
성별	여성	54	2.15	.360***
	남성	66	2.69	
마을의결기구 참여 수준별	여성	54	2.65	.027
	남성	54	2.91	
자생단체조직 참여 수준별	여성	66	3.02	.143
	남성	54	2.70	
주민공동체 참여 수준별	여성	66	2.37	.506
	남성	54	2.15	

주. *p<.05, **p<.01, ***p<.001

〈 표 4-7 〉 성평등마을 수준 인식 차이 _ 여성의 마을의사결정 참여형태별

구분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의 성평등마을 수준에 대한 인식		
	r	β	F
마을의결기구참여 수준별	.209*	.008	3.690*
자생단체조직참여 수준별	.274*	.078	
주민공동체 참여 수준별	.384**	.335*	
R^2=0.151, *adj* R^2=0.110			

주. *p<.05, **p<.01, ***p<.001

□ 마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성평등 이슈

○ '마을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4점 만점) 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00점 환산점수로 살펴보면, '가사 및 육아에 남성의 낮은 참여 경향'이 76.1점으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폭력, 범죄 등에 무관심' 71.4점, '마을 일에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구분되는 경향' 71.1점, '마을 의사결정기구에서 낮은 여성비율' 69.7점, '여성의 단체 및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비협조적 문화' 68.1점, '이주민, 한부모, 비혼 등에 대한 차별적 시선' 65.0점', 남성 중심적인 마을의 의사결정 구조' 63.9점 순으로 나타남

○ 각 항목별 성별 격차(여성-남성)를 살펴보면, '마을 일에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구분되는 경향'이 11.5점, '마을 의사결정기구에서 낮은 여성비율' 11.2점, '가사 및 육아에 남성의 낮은 참여 경향' 10.4점, '남성 중심적인 마을의 의사결정 구조' 8.4점, '폭력, 범죄 등에 무관심' 6.3점 차이만큼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개선이 더 필요한 성평등이슈로 인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폭력, 범죄 등에 무관심'이 71.4점으로 나온 결과는 전술한 '마을에서 폭력 발생 시 대응'에서 여성 응답자 중 16.7%가 '잘 모르겠음'으로 나타난 맥락으로 볼 때, 폭력 상황에 대해 가정 내 사적인 일로 여겨 관여하지 않는 등 묵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예측됨. 따라서 마을에서 성별 고정관념, 폭력과 범죄 무관심, 여성 과소대표성, 차별적 시선 등 인식개선을 통해 성평등마을 지역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과 평화교육 등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 그림 4-8 〉 마을에서 성평등 이슈에 대한 성별 격차

(단위: 점, n=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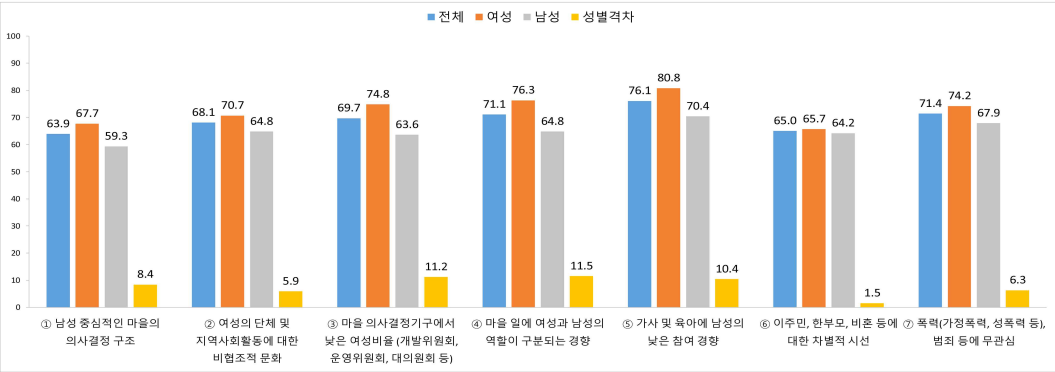

3) 시범마을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요구

□ 시범마을 사업(프로그램) 참여 유무

○ '성평등마을규약 개정 시범마을 사업(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한 적이 있다' 응답이 61.7%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 72.7%, 마을의결기구 참여수준별로는 '매우 높다' 집단이 77.1%, 자생단체참여 수준별로는 '매우 높다' 집단이 82.4%로 높게 나타남

○ ‘참여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대상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성평등 교육’이 3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성평등마을프로그램 영화보기’ 30.2%, ‘성평등규약만들기 사업 TF팀’ 26.4% 순임. 이는 TF팀으로 사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참여한 주민들을 제외한 다수의 주민들은 시범마을 성평등 프로그램 3단계 중 일부 프로그램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게 예측됨

〈 표 4-8 〉 사업 참여 유무 및 참여 프로그램

구분		사례 수 (명)	참여 경험	참여한 프로그램(복수응답)(%)				
			있다	응답자	①	②	③	④
전체		120	61.7	129	26.4	39.5	30.2	3.9
성별	여성	66	72.7	87	23.0	41.4	33.3	2.3
	남성	54	48.1	42	33.3	35.7	23.8	7.1
마을 의결 기구 참여	매우 낮다	18	44.4	15	20.0	46.7	33.3	0.0
	다소 낮다	27	48.1	20	25.0	40.0	35.0	0.0
	다소 높다	40	65.0	39	28.2	38.5	30.8	2.6
	매우 높다	35	77.1	55	24.3	38.2	27.3	7.3
자생 단체 참여	매우 낮다	14	50.0	8	0.0	62.5	37.5	0.0
	다소 낮다	21	33.3	13	15.4	46.2	30.8	7.7
	다소 높다	51	62.7	54	25.9	37.0	29.6	7.4
	매우 높다	34	82.4	54	33.3	37.0	29.6	0.0

(참여 경험 있다 응답자) 참여한 프로그램			
①	성평등규약만들기 사업 TF팀	③	성평등마을프로그램 영화보기
②	성평등(성인지 감수성) 교육	④	기타

□ 마을규약 개정 필요성

○ ‘현재 마을규약을 시대흐름에 맞게 성평등규약으로 제(개)정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자의 대다수가 ‘규약 개정이 필요 있다’(77.5%)라고 응답함

○ ‘규약 개정이 필요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대상으로 개정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요구를 성별로 살펴보면,

- 여성은 ’주민 권리 및 의무 보장‘이 29.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마을 의결기구의 여성비율 30% 이상‘ 27.6%, ’1인 1투표제 등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남녀 평등한 권리 보장‘과 ’성 역할을 구분하거나 규정하는 조항 삭제‘ 각 21.5% 순이었음
- 남성은 ’주민 권리 및 의무 보장‘과 ’마을 의결기구의 여성비율 30% 이상‘ 각 2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인 1투표제 등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남녀 평등한 권리 보장' 26.9%, '성 역할을 구분하거나 규정하는 조항 삭제' 17.2% 순임. 여성과 남성 모두 주민권리와 의무, 마을의결기구의 여성참여, 선거권 등 평등한 권리 보장 등 규약 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됨. 다만, 요구정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한 개선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9 〉 규약개정 '필요 있다' 이유 _ 성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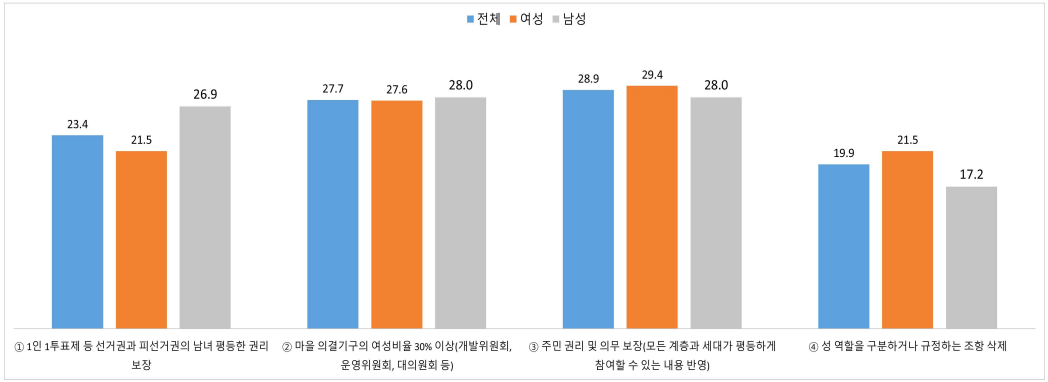

○ '규약 개정이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대상으로 그 이유를 성별로 살펴보면

- 여성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등 마을 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와 '기타'(이미 개정함으로 응답) 각 45.5%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전통적인 자치 규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 9.1%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등 마을 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6.1%, 이어서 '기타'(이미 개정함으로 응답) 21.7%, '전통적인 자치 규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 와 '성평등 마을 '선언' 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각 17.4% 순으로 나타남. 이는 조사에 참여한 마을 중에는 이미 성평등규약으로 개정한 지역이 포함되어 민주적 의사결정 및 기타 의견처럼 이미 개정되었다는 응답 결과를 제외하고 볼 때, 전통적 자치 규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즉, 주민들 스스로 마을에서의 성평등 가치와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성평등마을 조성 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그림 4-10 〉 규약개정 '필요 없다' 이유 _ 성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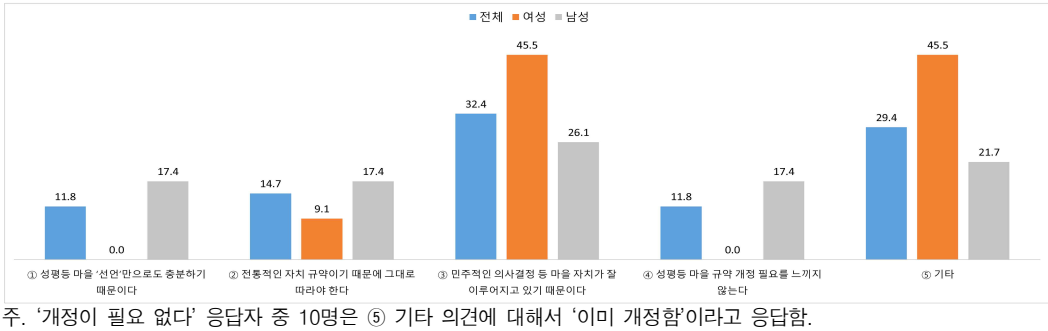

주. '개정이 필요 없다' 응답자 중 10명은 ⑤ 기타 의견에 대해서 '이미 개정함'이라고 응답함.

□ 성평등마을 관련 사업 과제의 중요성

○ '성평등마을' 관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과제(4점 만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00점 환산점수로 살펴보면, 모든 하위문항별 80점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하위문항별로 살펴보면,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 8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주민 공동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83.9점, '민주적 마을 운영(성평등마을규약, 주민총회 등)' 82.2점 순임. 이는 성평등마을 조성과정이 마을의 문화를 성평등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민주적 마을 운영을 촉진하고,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 간의 인식공유와 공동의 목적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컨설팅 등 지원이 필요할 것임

〈 그림 4-11 〉 성평등마을 관련 사업 과제의 중요성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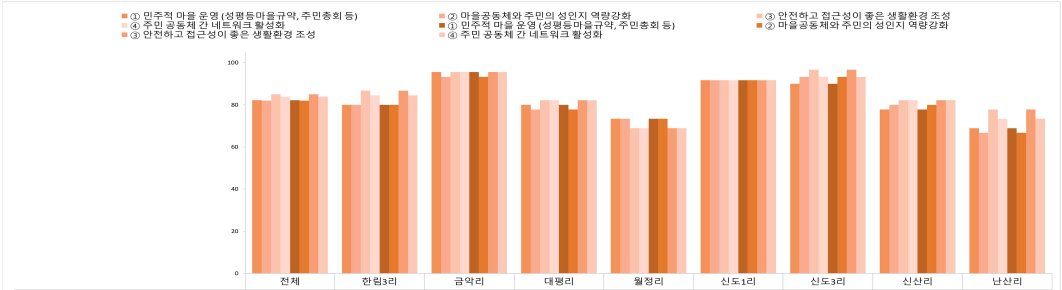

	전체	한림3리	금악리	대평리	월정리	신도1리	신도3리	신산리	난산리
① 민주적 마을 운영(성평등마을규약, 주민총회 등)	82.2	80.0	95.6	80.0	73.4	91.7	90.0	77.8	68.9
② 마을공동체와 주민의 성인지 역량강화	82.0	80.0	93.3	77.8	73.4	91.7	93.3	80.0	66.7
③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생활환경 조성	85.0	86.7	95.6	82.2	68.9	91.7	96.7	82.2	77.8
④ 주민 공동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83.9	84.5	95.6	82.2	68.9	91.7	93.3	82.2	73.4
① 민주적 마을 운영(성평등마을규약, 주민총회 등)	82.2	80.0	95.6	80.0	73.4	91.7	90.0	77.8	68.9
② 마을공동체와 주민의 성인지 역량강화	82.0	80.0	93.3	77.8	73.4	91.7	93.3	80.0	66.7
③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생활환경 조성	85.0	86.7	95.6	82.2	68.9	91.7	96.7	82.2	77.8
④ 주민 공동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83.9	84.5	95.6	82.2	68.9	91.7	93.3	82.2	73.4

□ 성평등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성평등마을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제안' 결과를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응답자들은 생활복지 시설에 있어서 접근하기 편리한 건강, 보건·의료 시설 및 돌봄 시설과 문화, 여가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민 역량강화에서는 마을리더 대상의 성평등 의무교육에 대한 요구를 제안했고, 마을주민 성인지 감수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기대하였음

○ 여성 대표성에서는 마을 일을 결정하는데 여성 참여 확대에 대한 요구를 제안함

○ 공동체 활성화에서는 주민들 간 소통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비혼 여성 혹은 청년 여성들을 위한 마을회의 조직 및 공동체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안함

○ 이는 앞장에서 제시한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주변 지역 환경 실태 결과와 성평등마을 관련 과제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 결과와 맥락이 일치함. 즉, 참여자들은 소통과 연대의 중요성 및 성평등마을 실현을 위한 민주적 마을 운영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부족한 생활 편의시설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남. 따라서 행정은 성평등마을 문화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의 역량과 전문성을 투입하여 연계와 촉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주도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 차원에서의 권고사항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표 4-9 〉 성평등마을 활성화에 대한 정책 요구

정책 요구(N=35)	
생활복지 시설 (n=13)	건강센터, 접근하기 편한 건강 의료 시설(약국, 의원 등), 물리치료 시설(여성 근골격계 환자 많음), 놀이터, 노인 휴식공간, 돌봄 시설(보육 및 노인 돌봄 시설), 공동체 활동 공간, 문화와 여가/체육 시설 등
주민 역량강화 (n=11)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마을리더 성평등 교육 의무화, 주민 교양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 의무화, 성인지 교육/영화 프로그램 운영, 여성에게 회의방법 교육, 마을주민 성평등 교육, 성평등 인식개선 사업, 지속적인 교육 등
여성 대표성 (n=2)	마을 결정에 여성들의 참여 증대,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참여 등
공동체 활성화 (n=4)	주민들과 대화를 통한 이해하기(대화 마련), 공동체 활동, 여성 청년을 위한 공동체(마을회), 마을 비혼 여성을 위한 공동체 활동 여건 등
기타 (n=5)	정책자금 지원, 밤길 밝히기, 성평등마을 지정 보조금사업 가산점, 예산 확보 등

다. 소결

○ 제주지역에 성평등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2020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8개 마을 자치회원 등 주민 총 120명을 대상으로 각 마을별 성별, 연령별, 자치활동 분야 등을 고려하여 임의표집하고, 생활환경, 성평등마을, 시범마을에 대한 인식 및 정책요구 등 설문조사한 결과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 참여자들이 응답한 생활복지 시설 중에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8개 마을 모두 있었고, 병·의원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응답자들이 있다'라고 응답한 시설의 접근성(4점 만점)에 대해 100점 환산점수로 살펴보면 복지회관, 경로당, 보건지소는 70점대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약국과 여성회관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 이로 인해 마을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응답에 참여한 사람들의 30.0%가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건강시설 여건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건강시설 여건이 불편하다 37.9%, 남성은 문화, 여가,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다 33.3%로 높게 나타났고, 이 결과는 8개 마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마을에서 건강과 문화·여가, 돌봄 시설 등의 생활환경 여건이 불편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이 같은 결과는 앞서 3장에서 검토했던 시범마을 주변 지역 환경 실태 결과와 맥락이 일치되는 점으로 지역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참여자들은 마을에서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하겠다가 54.2%로 가장 높게 응답함. 그러나 응답자 중 12.5%는 '모르겠다' 라고 응답하였고, 특히 여성 응답자의 16.7%가 '모르겠다' 응답하였음

- 이는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의 주민의무 조항에 마을 내 인권문제(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폭력 등)발생 시 주민회원 누구나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의무와 관련하여 주민들 스스로 성평등 마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권과 평화교육 등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됨

2) 성평등마을에 대한 인식

○ 참여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의 성평등마을 수준(4점 만점)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2.69점)이 여성(2.15점)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성별 마을의사결정 참여형태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마을의사기구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은 '자생단체조직참여' 수준 및 '주민공동체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이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 응답자들 대상 성평등마을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를 마을의사결정 참여형태별로 회귀분석한 결과, '주민공동체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성평등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여성 역할의 재조명과 가치 인식을 공유하고 주민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참여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성평등 이슈(4점 만점)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100점 환산점수로 살펴보면, '가사 및 육아에 남성의 낮은 참여 경향' 76.1점, '폭력, 범죄 등에 무관심' 71.4점, '마을 일에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구분되는 경향' 71.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각 항목별 성별 격차(여성-남성)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각 항목별로 더 높게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있음

- 특히, '폭력, 범죄 등에 무관심' 71.4점으로 나온 결과는 '마을에서 폭력 발생 시 대응'에서 여성 응답자 중 16.7%가 '잘 모르겠음' 결과와의 맥락으로 살펴보면, 폭력 상황에 대해 가정 내 사적인 일로 여겨 관여하지 않는 등 주민들 간에 묵인되는 것은 아닌 지 우려가 예측되는 대목임
- 무엇보다 마을 내에서 성별 고정관념, 폭력과 범죄 무관심, 여성 과소대표성, 차별적 시선 등 인식에 변화를 이끄는 것은 단회기로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성평등마을 조성과정에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역량강화와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과 평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것임

3) 시범마을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요구

○ 응답자들 중에서 성평등마을규약 개정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61.7%로 높게 나타남

-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응답자들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성평등(성인지 감수성) 교육 39.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성평등마을프로그램 영화보기' 30.2%, '성평등규약 만들기 사업 TF팀' 26.4%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성평등규약 TF팀으로 사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참여한 주민들을 제외한 응답자들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진행했던 마을 성평등 프로그램 3단계 중 일부 프로그램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게 예측됨

○ 응답자들에게 현재 마을규약을 성평등규약으로 개정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5%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평등규약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대상으로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민 권리 및 의무보장 28.9%, 마을 의결기구의 여성비율 30%이상 27.7% 순으로 응답함.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주민권리와 의무, 마을의결기구의 여성참여, 선거권 등 평등한 권리 보장 등 규약 개정의 내용에 대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다만, 규약 개정 요구정도가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개정이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성별로 보면, 조사에 참여한 마을 중에는 이미 성평등규약으로 개정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과를 감안하더라도 전통적 자치 규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 주목되어야 할 것임. 이는 현재 행정리 마을의 실제 마을위원회 구성에 남성의 참여 비율이 높고 청년층과 노인층의 인식의 차이도 커서 적극적 인식개선이 필요한 지점임. 또한 8개 마을 중 성평등규약으로 개정하고 실제 마을위원회 위원 구성에 여성비율 30%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1개 마을에 불과하다는 지점과도 연관성이 예측됨. 따라서 주민들 스스로 마을에서의 성평등 가치와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성평등 마을 조성 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마을 내에서의 성평등 이슈로 인해 참여자들은 성평등마을 관련 주요 사업 과제(4점 만점/100점으로 환산)에 대해 4개의 하위문항별 모두 80점대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 결과는 정책제안의 5가지 영역과도 맥락이 일치하였음

- 즉, 참여자들은 소통과 연대의 중요성 및 성평등마을 실현을 위한 민주적 마을 운영 등에 대하여 매우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음. 또한 부족한 생활편의시설 개선 요구도

높게 나타남. 따라서 성평등마을 조성과정이 마을의 문화를 성평등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행정은 성평등마을 문화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의 성인지 역량강화와 전문성을 투입하여 연계 및 촉진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제주도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제주지역 마을만들기사업 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욕구가 반영된 양성평등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 차원에서 강력하게 권고사항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4) 시사점

□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인지 관점 추진방안 모색 필요

○ 응답자들은 접근하기 편리한 건강, 보건·의료 시설, 돌봄 시설, 문화·여가 시설 등의 낮은 접근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및 행정부서 간 협력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특히, 제주도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주민 요구가 수렴된 방향으로 추진되어 양성평등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강력한 권고 추진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주민 성인지 역량강화 필요

○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마을에서 폭력 발생 시 대응방법이나 성평등마을 수준에 대한 인식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평등마을로의 변화는 모든 마을 주민들의 작은 인식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함

○ 특히, 마을에서 일어나는 폭력 상황에 대해 가정 내 사적인 일로 묵인되지 않도록 성별 고정관념, 폭력과 범죄 무관심, 여성 과소대표성, 차별적 시선 등 인식에 변화를 위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의 주민의무 조항에 마을 내 인권문제(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폭력 등)발생 시 주민회원 누구나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의무와 관련하여 주민들 스스로 성평등 마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권과 평화교육 등 지원이 필요할 것임

□ 마을 의사결정기구 여성 참여 확대 강화 필요

○ 제주지역 행정리 단위의 마을인 경우 고령화로 인해 마을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주민은 대부분 50대 후반부터 60대 이상 노인층의 비중이 높음. 이로 인해 실제 마을위원회 위원 구성에 여성비율 30% 이상을 명시하는 등의 성평등규약 개정을 위해서는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변화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 인센티브 마련 등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응답자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 주민권리와 의무, 마을의결기구의 여성참여, 선거권 등 평등한 권리 보장 등 기존의 규약에 성평등규약의 내용으로 개정될 필요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특히 민주적 마을운영의 기반은 주민의 자격으로부터 출발하며, 의무와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기본 방향에서 주민들끼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고와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임

○ 특히 기존 규약을 성평등규약으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실제 마을 현장에서의 위원회 구성에 남성 비중이 월등히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마을 내에서의 성평등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즉, 여성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고 모든 주민들 스스로 마을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성별 불평등 해소에 목적을 두도록 성평등마을 조성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응답자들은 소통과 연대의 중요성과 민주적 마을 운영 등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부족한 생활 편의시설 개선 요구가 높았음

○ 따라서 여성과 남성 청년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지향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 연대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결과

가.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마을별 참여자 대상으로 참여과정의 어려움과 정책 요구 등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성평등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개선방향 및 과제를 발굴하고자 함

□ 조사 대상, 조사기간 및 내용

○ 조사 대상은 2019~2020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대정읍 신도3리 신도1리, 안덕면 대평리, 한림읍 한림3리 금악리, 구좌읍 월정리, 성산읍 신산리 난산리의 사업관련 TF팀, 리장/부녀회장/청년회장 등 총 36명임. 조사는 마을별 집단을 구성하여 초점집단면접조사 방식으로 2021년 8월 16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진행함

〈 표 4-10 〉 성평등규약시범마을 관계자 대상 FGI 질문 내용

구분	내용
시범사업 참여했던 동기와 성과	· 마을에서 운영규약이 갖는 의미 · 성평등규약개정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동기 · 성평등마을에 필요한 요소 · 사업에 참여했던 과정에서 성평등 변화 요인
마을에서의 의사결정 참여 구조	· 현재 마을의 총회, 개발위원회 등의 구성 절차와 위원 구성 · 마을에서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 · 민주적 참여를 위해 마을에 필요한 변화
정책요구	· 시범사업의 개선방향 · 제주도정에 바라는 정책 요구

□ 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전체 FGI 참여자는 총 36명이고, 참여자 비율로 보면 여성 53%, 남성 47%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대 25%, 50대 61%, 60대 14% 순임
-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기혼유배우 94%, 무배우(이혼/별거/사별) 6%임

〈 표 4-11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 FGI 참여자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소속 및 지위	마을	면접일
사례1	남성	40대	기혼유배우	청년회장	마을1	2021.8.16
사례2	여성	40대	기혼유배우	전부녀회장		
사례3	여성	50대	기혼유배우	부녀회장		
사례4	남성	50대	기혼유배우	마을리장		
사례5	남성	50대	기혼유배우	개발위원장		
사례6	여성	50대	기혼유배우	전부녀회장	마을2	2021.8.16
사례7	여성	50대	기혼유배우	부녀회장		
사례8	남성	50대	기혼유배우	마을이장		
사례9	남성	60대	기혼유배우	개발위원장		
사례10	남성	60대	기혼유배우	개발위원		
사례11	남성	50대	기혼유배우	마을이장	마을3	2021.8.20
사례12	여성	50대	기혼유배우	부녀회장		
사례13	여성	40대	기혼유배우	단체사무국장		
사례14	여성	50대	기혼유배우	단체회장		
사례15	여성	50대	기혼유배우	부녀회장	마을4	2021.8.24
사례16	여성	40대	기혼유배우	사무장		
사례17	남성	40대	무배우(이혼/별거/사별)	청년회장	마을5	2021.9.13
사례18	남성	40대	기혼유배우	새마을지도자		
사례19	여성	50대	기혼유배우	부녀회총무		
사례20	남성	50대	기혼유배우	마을이장		
사례21	여성	60대	기혼유배우	부녀회장		
사례22	남성	50대	기혼유배우	마을이장	마을6	2021.9.13
사례23	남성	50대	기혼유배우	개발위원		
사례24	남성	50대	무배우(이혼/별거/사별)	개발위원		
사례25	여성	50대	기혼유배우	부녀회장		
사례26	남성	50대	기혼유배우	마을회감사		
사례27	여성	50대	기혼유배우	단체회장		
사례28	남성	60대	기혼유배우	마을이장	마을7	2021.9.15
사례29	여성	40대	기혼유배우	부녀회총무		
사례30	여성	30대	기혼유배우	사무장		
사례31	여성	40대	기혼유배우	단체사무국장		
사례32	남성	60대	기혼유배우	개발위원장		
사례33	남성	50대	기혼유배우	마을이장	마을8	2021.9.25
사례34	여성	50대	기혼유배우	부녀회원		
사례35	여성	50대	기혼유배우	부녀회총무		
사례36	여성	50대	기혼유배우	부녀회장		

나. FGI 결과

1)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동기와 성과

□ 마을규약은 마을작동 시스템 역할

○ 대부분의 FGI 참여자들은 마을규약(혹은 향약, 정관, 규칙 등으로 말함)을 마을주민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지침, 마을 일의 기본 지침 등 마을운영에 필요한 기본 틀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마을 운영의 기본 틀로 규약이나 규칙, 가장 기본적인 지침임(사례4)
- 마을주민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지침임. 마을의 재산도 있고 규모가 비대해지면서 이제는 막연하게 규약, 향약의 개념이 아니고 중간도 아닌 것 같음. 헌법처럼 작용하고 있는데 이 주민도 많이 들어오고, 재산문제도 있고 여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마을 지침임(사례22)
- 마을의 갈등을 줄여주고, 준수할 수 있는 마을작동 시스템임. 마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 요소를 줄여주는 역할과 원칙대로 준수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기본임(사례16)

○ 본 연구의 FGI 조사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8개 시범마을의 규약을 살펴보면, 마을주민의 조건, 권리와 의무, 선거권, 마을재산의 취득과 처분, 이장의 지위와 피선거권/선출규정/임기, 운영위원회의 임무/구성/선출/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간 기본 규칙과 질서를 담은 자치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

○ 2019년부터 제주도는 이러한 마을운영의 기본 지침인 기존 마을규약의 불합리한 내용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서의 성평등규약으로 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그러나 행정리 단위의 8개 시범마을 주민의 구성을 보면, 고령화로 인해 노년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최고 의사결정 계층에 있기 때문에 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적인 단계에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기까지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는 의견을 제기함

- 어르신들이 일부러 변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셔서 교육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거의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듦(사례7)
- 노인들이 전반적으로 변화에 반대하는 부분이 많음. 어르신들 인식이 바뀌게 해야 함(사례6)
- 교육을 한 번 받았다고 눈에 띄는 변화는 어려움. 규약이 개정돼도 문화가 변해야(사례34)

○ 이는 대부분의 마을규약이 1970~1980년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점에서 기준안만으로 법이나 조례처럼 강요할 수 없으며, 마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현혜경 외, 2020)는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 여겨짐

- 지금까지 기본 틀에서 마을이 운영되었고 앞으로도 그랬으면 해서 조금씩 시대에 맞게 바뀔 필요는 있음(사례4)
- 과거 유교사상으로 남성위주로 있었기 때문에 향약을 보면 여성과 남성을 성별로 표시 하지 않았고 성별로 불리한 조건도 없는 것처럼 보임(사례28)
- 새롭게 향약을 제정하면서 내용을 많이 고쳤는데 기존의 향약은 구시대적 사고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임. 그래서 기존의 것을 지키면서 지금 시대 변화에 맞게 추가 보완하여 제정함(사례15)
- 규약을 개정하려면 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차례 논의를 거쳐 초안을 만들고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함. 큰 반발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음(사례2)
- 보통 향약 내용에 선거권이 1가구1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우리 마을은 이번 개정에 1인1표로 고치게 된 계기를 만들었지만 인근 마을 이장들에게 제안했을 때는 선거 때 관리하려면 어렵다고 1인1표를 거부하기도 했음(사례3)

○ 뿐만 아니라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안은 의사결정구조에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제시하여 마을여성의 참여를 열어두도록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마을마다 규약과 상관없이 마을인구 등을 고려할 때 부녀회원이 10명 내외 혹은 여성의 낮은 참여율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언급함

- 여성대표성을 위해 여성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것은 규약 내용면으로 무리가 없지만 형식적으로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음. 예전에는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부녀회장만 들어갔었음. 이번 개정된 규약이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반장'을 여성이 맡기로 하면서 개발위원회도 (여성비율)30%로 (위원회에)들어가게 된 것임(사례4)
- 마을에서 여성들이 참여하고 참여하도록 노력도 하지만 워낙 박하게 살다보니 참여율이 저조한 편임. 이 부분에 조율이 없고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정기총회에 (마을여성들이)참여하는 경우도 저조한 편임(사례8)
- 여성들이 마을의 행사는 참석하나 마을 관련된 회의를 할 때는 참석률이 저조함(사례19)
- 마을 이장이 되고 나서 각 집을 방문하고 일일이 다니면서 권유도 해보지만 쉽지 않음.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소통의 어려움도 있고 관심이 없는데 억지로 권유하는 것도 힘듦. 우선 관심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권하고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데 잘못 오해하면 집안에 싸움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사례5)

□ 사업 참여자들의 민주적 마을운영의 필요성 깨닫는 계기

○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기는 성평등마을로의 변화 필요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참여한 마을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마을은 부녀회장 혹은 부녀회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의 권유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 것으로 조사됨

- 전여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 관계자였고 설문조사를 하며 성평등한 마을에 근접하여 노력하는 마을임을 알 수 있었음. 이런 계기로 2019년 교육을 받고 사업에 참여함(사례5)
- 전체 마을주민이 성평등 관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참여하게 됨. 보통 성평등교육을 하면 여성들만 따로 받는 경우가 많았음. 여성들만 받아서 남성들의 인식 개선이 부족한 것 같음. 여자, 남자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사례7)
- 전여농 지부 관계자라서 적극적인 추천으로 참여하게 됨(사례34)
- 기존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여성의 참여도와 성평등 관련 갈등 요소는 별로 없었음. (규약)개정을 하면서 참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참여하게 됨(사례16)
- 전여농 활동하시는 분이 마을 부녀회 회원이어서 적극적인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없으면 참여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음(사례19)
- 여민회와 전여농이 성평등 마을을 선정할 때 여러 연관이 있어서 마을 찾는다고 하고, 마을 여성들의 권익을 높이는데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부녀회 중심으로 참여하게 됨(사례22)

○ 그럼에도 불구하고 FGI 참여자들은 사전 오리엔테이션, 시범마을 TF팀 활동 과정을 통해 마을 일을 하면서 생활 곁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불평등 요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함. 특히 남성 참여자들은 성평등 관점으로 마을 일을 생각해 본 경험이 없었는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화 경향을 알게 되는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였음

-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음. 부녀회 회원 중에 전여농 지부 회원들이 있었고 그러다보니 더욱 솔선수범할 수 있었던 것 같음(사례25)
- 사업 참여를 하면서 마을규약에 성평등 관련하여 불리한 조항이 있는 건 아닌지, 여성들이 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데 규약 때문에 제약을 받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불리한 점이 있다면 총회 때 합리적으로 바꿔보자 했음(사례28)
- 시범사업 프로그램으로 모의 회의 진행을 해봤는데 식순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회의를 진행해봤고, 이장님이 오셔서 모든 걸 지원하겠다고 하시고 흥을 돋아주는 이런 것들이 마을 자체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된 것 같아 좋았음(사례30, 31)
- 코로나로 모이는 횟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교육의 기회가 좋았음(사례30)
-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없는데 그런 서툰 경험이 변화의 동기임(사례34)

○ 이러한 변화는 남성 참여자들이 마을의결기구의 구성원이며 중·고령층이라는 점에서 성평등마을로의 변화 속도는 더딜지라도 일정 부분 인식 개선의 변화가 포착되는 대목이라고 여겨짐

- 총회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역대 이장이라던가 마을지도자를 하던 사람들이 대다수(사례33)
- 마을에 중고령층이 많아서 젊을 사람들이 총회에 오면 질문을 거의 안함.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들의 너무 쎄니까 입을 닫아버리는 것임. 1세대와 1.5세대의 권위로 눌러버리는 부분이 있음.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생각 전환이 없으면 마을의 변화도 어려움(사례33)
- 마을총회에 토론안이 나오면 자생단체에서 먼저 토론을 해서 오면 좋을 것 같음. 시범사업에서 회의진행방법을 배우고 미리 정리해서 총회 자리에서 발언하고 의견을 개진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회의문화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임(사례34)
- 예전에는 남편을 통해서 (마을회의 내용에 대해)듣던 것을 직접 듣고 더 관심을 갖게 되었음. 회의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니까 말을 할 때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어서 좋았음(사례35)
- 부녀회 역할이 그야말로 마을돌봄 역할밖에 안 했었음. 부녀회에 가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충만함을 얻는 여러 기회(역량강화 등)가 있다는 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음. 부녀회 역할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음(사례36)

○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이 생활공간인 마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마을의결기구와 부녀회 등 자생단체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 간의 네트워크, 혹은 인근 마을의 의사결정기구와의 외연 확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리고 마을의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 참여의 기본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언급하였음

- 마을향약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에 대해서 발언도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음(사례35)
- 교육이든 사업이든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거의 부녀회 중심이 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어서 마을주민 전체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었음(사례34)
- 부녀회 사업으로 여성이라는 연대감도 있고 그 자체로 네트워킹이 잘 형성될 수 있어서 마을 간에 서로 참여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계기로 인식전환이 되었음(사례13)

○ 결국, 시범사업의 참여 동기는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성평등 관점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전혀 없었던 참여자들은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마을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성장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조사됨

□ 성평등마을의 기본 요소는 민주적 파트너십의 참여와 소통

○ 성평등마을로의 출발은 마을주민 모두가 권리를 찾고 참여와 소통이 가능한 마을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민주적으로 성평등한 파트너십을 통해 수평적 관계로의 인식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였음

- 남녀 구분 없이 마을 주민이라면 참여하고 의사소통, 의결권을 가지는 게 중요함. 아직은 여성이장은 없지만 원한다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총회에 남녀 구분이 없음(사례4)
- 소통과 참여가 중요한데 마을에는 갈등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시범마을에 참여하면서 느낀 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청년이나 다른 사람들도 참여가 있어서 문화가 바뀌면 좋겠다는 것임. 그런데 부녀회랑 개발위원회 참여는 잘 되었지만 청년회는 (참여가) 높지 않아서 어려운 점도 있음(사례8)
- 마을주민으로서 권리를 찾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함. 성평등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가족 관계에서 개인의 권리가 반영되고 가정 내 성별 분리에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전환 계기가 되었음. 이런 변화가 마을 전체에 필요하다고 봄(사례9)
- 연대감과 네트워킹으로 주민들 간에 갈등해소와 소통이 필요함. 마을에서 여성 조직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원만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필요한데. 이런 것은 마을 주민 모두에게 필요할 거라 생각함. 다문화 가족의 경우도 소통이 중요한데 서로 이해하는 게 어려워 주민과 개인 모두에게 필요한 게 소통이라고 생각함(사례20)
- 마을 구성원들 중에서 여성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적극적 참여하도록 역량강화하고 어떻게 마을 안에서 서로 보듬으며 살지 의논하며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봄.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임원 중 여성비율을 40% 정도는 명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임(사례34)

○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을은 행정리 단위의 농촌마을로 참여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마을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개인 일과 마을 일의 애매모호한 경계와 마을 내 고령화 등으로 야기되는 과중한 노동, 성별 고정관념, 여가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마을의 큰 행사를 할 때 식사준비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의사결정 시에도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인식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성평등 교육이 필요함(사례10)
- 행사때 음식 준비나 명절에 친정 갈 때 등 어른들과의 의견 차이로 답답한 부분이 큼(사례6)
- 전에는 부엌에도 들어가지 않고 가부장적이었지만 집안일도 내 일, 네 일이 아닌 것 같아 서로 같이 해야 할 일로 변화할 수 있는 건 필요함. 이제는 남녀 모두 일을,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눠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시대적 변화의 영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음(사례26)

- 교육을 받더라도 가정에 돌아가면 큰 효과가 없음. 그렇지만 교육을 통해 남편과 아내, 가족 관계에 대해 많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음(사례11)
- 성 인지 관점과 인문학 교육을 통해 개인화되어 있는 주민 공동체 회복이 필요함(사례36)
- 내 딸이 (결혼해서) 저렇게 고생할 거면 차라리 편안하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면 좋은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서 갈등이 있음. 갈등의 이유가 문화적 차이가 크다고 생각함. 육지와 제주의 문화도 그렇고, 세대 간 차이도 그렇고 변화가 필요(사례10)
- 큰 행사를 하면 남자들은 앉아있고 부녀회는 식사 준비를 함. 주민들이 어울리면서 행사를 하는데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참여하는 여자는 거의 없음. 가족들은 참여하더라도 부녀회는 실질적으로 주방에서 대접을 해야 하는 상황임.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임(사례5)

○ 만약 성평등 교육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마을주민들이 가부장적 문화로 인한 성별 고정관념의 불평등 관행을 해소하고 남녀노소 주민들 간 상호소통과 동등한 참여 문화, 다양성과 포용성으로의 존중 문화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였음

- 인문학 교육을 꼭 강제적으로 안 받더라도 자기가 보고 느낄 수 있게 하면 좋겠음. 마을의 행사 같은 거를 참여하고 기획하고 하는 기회 등 경험으로 인식개선이 되는 게 중요(사례36)
- 교육을 들음으로써 확실하게 변화가 있어야 함. 여성만 대상으로 해서 여성들만 개화하는 것보다는 남성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 남성이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음(사례13)
- 처음에 마을에서 교육하듯이 몇몇 사람이라도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전파가 될 것임. 교육을 진행하면서 서로 연습하고 견학도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교육은 한 번씩만이라도 참여해야 하는 것임. 마을 어른들을 이해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봄(사례32)
-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한글 모르는 분이 많은데 한글교실을 통해 인식개선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함. 단순하게 강의로 하면 그 분들(어르신들)은 이해할 수도 없음(사례34)
- 대화 공간을 만드는 건 중요함. 이런 부분이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것임. 아직까지 청년 회원들도 모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도 참석률이 저조한데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음. 코로나 때문에 모두 모이는 건 쉽지 않지만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는 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함(사례33)
- 적극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자주 만나서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함.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만나서 얘기하고 소통이 가능할 때 서로 이해하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함
-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젊은층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함. 눈에 띄게 변화가 있으려면 계속 교육, 교육을 한 번 받아서는 안 됨(사례9)

○ 이를 매개로 대부분의 FGI 참여자들은 마을 주민들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 회복, 모든 주민의 동등한 참여, 원활한 소통이 원칙이라고 강조하였음

□ 주민의 낮은 참석률 및 규약개정의 현실적 장벽 등 어려움 호소

○ 대다수의 시범마을에서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시범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마을주민들의 참여였음. 마을주민들 간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으로 청년회원들도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었지만 관심이 부족해서 참석률이 저조하였고, 결국에는 부녀회 중심으로 참여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하였음

- 규약 개정할 때 총회에서 작은 논란이 있었음. 또 거의 부녀회가 중심이 돼서 사업을 한 건데 가정에서 오래 전부터 했던 일을 하루아침에 변화하기는 힘듦(사례3)
- 주민 참석률이 저조하여 부녀회 중심으로 참여하다보니 마을에서 남성들 혹은 어르신들과의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 교육보다는 여성들을 바꾸는 교육 위주로 일방적인 것 같음. 한쪽만 교육하는 것은 갈등만 더 심화시킬 수 있음. 어떻게 해야 화합할 수 있는지, 어르신들과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함(사례15)
- 노인들이 전반적으로 변화에 반대하는 부분이 많아 노인들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임(사례8)
- 과거에서부터 계속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하며 가정을 지켰고 남자가 먼저 깨지 않으면 발버둥 쳐도 안 됨. 남자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야 함. 젊은 부부들은 깨어있는 경우도 많지만 현장(생활)에서는 (과거 방식으로)되풀이 됨(사례12)

○ 또한 기존 마을규약의 조직 구성과 선거권 등의 불평등 내용을 마을총회에서 개정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언쟁이 있었고, 단회기의 교육만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거나 노인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컸었다고 말하였음

- 여자와 남자 모두 동등해지는 맞벌이 세대인데도 아직도 생각은 남자가 더 위임(사례15)
- 중장년과 노인층과의 인식의 차가 커서 적극적으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음
- 작심삼일로 교육을 받는 순간만 인식개선, 지속적인 교육 필요할 것 같음(사례11)
- 젊은 층은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게 눈에 띄지만 40대 이후 세대는 아직도 과거의 방식 그대로임. 그대로 유지되는 한 인식개선은 어려울 것임(사례16)
-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성평등이 생소한 분야임. 처음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음. 교육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됐지만 세대 차이 때문에 자꾸 까먹고, 60대 후반부터 한 번으로는 안 됨. 자꾸 교육이 필요한 부분임(사례9)

○ 그러나 여전히 마을운영은 대부분이 남성과 노인의 구성 비중이 높다는 특성으로 인해 성평등 인식개선보다는 마을의 경제와 재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오랜 기간 관습으로 인해 청·장년층, 이주민 등과의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이나 연결점은 찾지 못하고 있었음

□ 여성 대표성 확대 및 일부 마을 규약개정 등의 가시적 성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마을에서는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부녀회장을 포함하여 여성비율 30%를 맞추기 위해 반장을 여성으로 하는 등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성평등마을규약으로 개정까지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조사됨

- 여성 의견이 수용되어 향약이 개정되고, 반장을 여성이 맡게 됨(여성비율 30%)(사례2)
- 향약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번 만나 합의하고,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점(사례33)
- 참여는 저조했지만 교육과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음(사례12)
- 남녀노소, 부부, 가족 등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인식개선의 기회가 되었음(사례15)
- 환경의 차이가 있음. 설득을 시키고 대화를 하고 시간을 두고 가르쳐야 할 부분은 가르치고 아니다 싶은 것은 모른 채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뭔가 바꾸는 건 좋은 것 같음. 마을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의 차이가 잘 반영되면 좋겠음. (마을마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필요한 걸로 접근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음(사례6)
- 여성, 부녀회 중심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나이 드신 분들과 청년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았지만 교육 기회랑 소통의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함. 변화는 여성과 남성이 같이 해야 함.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남성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음. 그걸 교육으로 변화하게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됨(사례7)

○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의 취지를 알고 진행한 마을에서는 부녀회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개인, 가족, 마을공동체에서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언급하기도 하였음

- 교육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세대 차이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음. 한 번으로는 안 되고 자꾸 까먹으니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함(사례7)
- 마을 전체 주민 대상으로 사업을 했어야 했다는 평가가 나왔음(사례35)
-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식개선 교육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사례9)
- 교육받을 당시에 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을 새롭게 느꼈던 게 있었음. 이렇게 남자들 중심이었던 느낌도 들고 여러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함(사례12)
- 규약 내용도 처음으로 천천히 본 게 처음이었고, 이번 사업으로 총회의 진행도 해봄(사례34)

○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FGI 참여자들은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강의식 일방적 교육에서 탈피하여 남성들 혹은 노인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마을주민의 인식 전환 교육방법을 어떻게 구성할 지 등 세밀한 계획 수립으로 단순 강의식이 아닌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남성 참여자들의 성평등 관점 인식 전환 계기

○ 남성 참여자들은 성별 고정관념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일상생활을 해오다가 시범사업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였음. 또한 마을 주민들 스스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으려면 지속적인 교육과 주도적인 참여와 성장을 통해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안했음

○ 이러한 의견은 마을의결기구의 구성원 대부분이 중·고령층 남성의 비중이 높은 현실 상황으로 비춰 볼 때 향후 여성과 남성이 민주적인 참여와 권리가 보장된 수평적 관계로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대목임

- 사업 참여를 하면서 마을규약에 성평등 관련하여 불리한 조항이 있는 건 아닌지, 여성들이 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데 규약 때문에 제약을 받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불리한 점이 있다면 총회 때 합리적으로 바꿔보자 하고(사례28)
- 마을에 중고령층이 많아서 젊을 사람들이 총회에 오면 질문을 거의 안함.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너무 쎄니까 입을 닫아버리는 것임. 1세대와 1.5세대의 권위로 눌러버리는 부분이 있음.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생각 전환이 없으면 마을의 변화도 어려움(사례33)
-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인식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성평등 교육이 필요함(사례10)
- 전에는 부엌에도 들어가지 않고 가부장적이었지만 집안일도 내 일, 네 일이 아닌 것 같아 서로 같이 해야 할 일로 변화할 수 있는 건 필요함. 이제는 남녀 모두 일을,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눠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시대적 변화의 영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음(사례26)
-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젊은층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함. 눈에 띄게 변화가 있으려면 계속 교육, 교육을 한 번 받아서는 안 됨(사례9)

2) 마을에서의 의사결정 참여 구조

□ 마을 이장과 남성 중심 의사결정 구조

○ 마을의 의사결정구조는 최고 의결기구인 마을총회 이외에 마을마다 목적사업의 필요에 따라 추진위원회,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명칭의 위원회를 두고 있음. 각종 위원회에서는 마을의 현안, 발전,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마을 만들기 혹은 마을 재산관리 등과 관련이 있었음

- 개발위원회가 있긴 있으나 마을 총회, 마을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음.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의 현안, 발전, 사업에 대해서 논의함. 추진위원회가 개발위원회와 동급이고 개발위원회에 소

속된 사람들이 마을총회에도 속함. 단체장 중심으로 보통 추천을 받아서 움직임. 그러다 보니 비율이 노인회, 청년회가 조금 높긴 하지만 부녀회의 비율이 없지는 않음(사례16)

○ 대부분 각종 위원회 구성은 현직 이장과 당연직을 중심으로 직전 이장, 감사, 반장, 자생단체장들과 그 외 추천한 자로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들 중에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주요 인적자원이 노인회, 청년회 등 남성 중심의 참여구조로 인해 당연직인 부녀회장 외에는 여성의 참여는 낮은 편인 것으로 파악됨

- 이전에 남성 중심이었음. 규약개정이 성평등규약 표준안에 맞춰 개정된 건 아니고 운영위원회 구성만 바뀜. 규약에 운영위원 여성 및 프로라고 명시되어있진 않고 개발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 있음. 다만 이곳 어르신들은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마을분위기가 좋은 편이라 다음 정기총회 때 (성평등규약으로 개정)논의하기로 함(사례11)
- 위원회는 이장 추천만으로 가능하나 참여가 저조해 여성비율 맞추기 어려움
- 여성들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개발위원회에 참석해서 개회할 수 있게끔 마을에 열려있는 상태지만 아직 비율이 높진 않음
- 젊은 세대가 비율이 낮아서 기존 어르신들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음(사례33)
- 개발위원회(추진위원회)가 마을총회에 속하고 총 16명 중 여성은 3명임
- 마을임원은 이장을 포함하여 현재 17명이고 규약에 운영위원회의 여성비율을 30%로 명시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여성인원이 3-4명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2명임. 계속 바꿔야 하는 부분임(사례8)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마다 차이가 있었음. 일부 마을은 규약의 내용을 위원회 구성의 여성비율을 30%이상으로 개정하여 부녀회장 외에 여성반장을 선출·확대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주민 수가 적은 작은 마을의 경우는 평등한 구조로 참여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었는데, 이는 마을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하였음

- 총회 때 남녀 구분 없이 진행함. 마을 주민이라면 참여하고 의사소통, 의결권 모두 가짐. 개발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작년까지는 반장이 모두 남성이었음. 현재는 (반장)4명 모두 여성임. 농협대의원도 마을에 2명 있는데 부녀회장, 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녀 비율 같음. 규정상 남녀 비율이 같음(사례4)
- 연령 분포가 70세 이상이 거의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음. 나머지 20% 내에 젊은 사람들이 70대 아래 분포되어 있음. 고령층 비율이 높은 것임. 부녀회만 해도 12명이고 연령대가 50-60대 정도임. 평등하게 참여구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됨. 의결권과 발언권 등 성별 상관없이 다 똑같이 적용함(사례28)

○ FGI 참여자들은 기존 마을운영에서 여성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참여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음. 그러나 학업, 취업, 결혼 등으로 젊은 세대 인구 유출, 다문화 가족 증가, 이주민 가족 증가 등으로 마을운영의 주체인 청년회, 부녀회 등 자생단체를 구성할 때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함

-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돌아와도 몇몇은 주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가족과 나만을 위해서 살다보니 마을하고는 협조하기 어려움. 기존에 살던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임(사례32)

○ 또한 조사에 참여한 마을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자생단체별 회원은 각 단체별 조건에 해당하는 마을주민들 중 14~15명 정도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대체로 청년회는 결혼유무 상관없이 30세~60세, 부녀회는 결혼한 여성 대상으로 37세~65세, 노인회는 70세 이상이었음.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목되는 점이 청년회에는 여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부녀회에는 비혼 여성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으며, 61세에서 69세 사이의 남녀 노인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청년회 탈퇴하고 나면 노인회까지 남자들이 갈 곳이 없음. 활동할 곳이 없음(사례11, 사례21)
- 노인회 비율이 부인회 비율보다 높은 것도 있고 의사결정권, 투표에 미치는 영향 큼(사례6)
- 고령화로 청년회(30~60대), 부녀회(37세~65세) 등 자치회의 자격연령대가 높아짐(사례10)
- 노인회는 70세부터인데 참여가 저조하고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음(사례8)
- 청년회는 남성 중심으로 부녀회는 결혼한 여성 중심으로 참여함(사례3)

□ 고령 인구 비중 높아 의사결정에 지장

○ FGI 참여자들은 마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개 마을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함. 마을총회를 열 때 의사결정을 위한 선거권은 마을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세대별 1명이 참석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음. 일부 주민 수가 적은 작은 마을에서는 만 18세 이상 주민 1인당 1표제로 결정한다고 언급하였음. 이러한 변화의 시도는 의사결정 최소인원을 맞추기 위해 세대별로 참여 가능한 여성, 청년 등까지 개방성을 두고 마을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해됨

- 총회에 와서 질문하는 사람을 보면 역대 이장이나 마을 지도자를 했던 분들임(사례33)

- 마을규모가 작은 경우 투표 없이 나이순으로 이장을 추대하게 됨(사례4)
- 마을이장은 마을 주민들이 선출하는데 회의하거나 운영위원회 참여할 때 여성들에게도 회의 참여와 발언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편임(사례22)
- 마을이 작다보니 많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해 여성들의 선거권을 배제하는 것은 전혀 없음. 월 1회 추진위원회를 하고 매달 마을 현안들을 다루고 있음. 마을에서 갈등이 있다면 회장이 노인 회원들에게 불만사항을 잘 얘기하고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잘 하는 편임(사례16)
- 총회에서 개발위원장을 뽑고 개발위원 중에서 추진위원장을 뽑음. 부녀회에서도 같이 의결도 보고 업무에 따라 진행하는 평등한 구조. 발언권으로 갈등을 겪어본 적은 없음(사례16)
- 마을일에 적극적인 이장을 중심으로 자유토론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안건이 있으면 누구든지 (발언)할 수 있음.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 비율을 맞춰 분배시킴. 농촌이다 보니 농사철에 바빠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부분도 있고 회의 구성 인원이 안 되는 점이 있음. 예전에는 여성들 참여가 낮았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사례24)
- 마을에 본적을 두고 19세 이상 1년 이상 실거주자에 한해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음(사례20)

○ 대개는 마을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여성, 다문화, 이주민, 청년들을 제외하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결혼해서 온 다문화 여성의 경우에는 마을의 의사결정구조 뿐 아니라 부녀회 활동 등에도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 마을에 1세대와 1.5세대 비율이 높아서 총회에 와서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음. 이분들이 너무 강하니까 청년들은 얘기하지 않게 됨. 문제는 청년회를 탈퇴하고 나면 노인회 전까지 중간세대가 비어버리고 마을 의사결정이나 자생단체 활동할 곳이 없어지게 됨(사례33)
- 거주하거나 태어난 출신인 외지인도 있는데 재혼한 경우나 다문화 가족인 경우는 낯설어서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음(사례32)
- 부녀회는 37세부터 65세까지 구성되는 데 새로 참여할 사람이 없음. 다문화 가정 이 몇 있지만 관심이 부족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배우자가 권유해 볼 수도 있는데 힘듦(사례6)
- 청년회는 30살에서 60대까지 구성되고 노인회는 70살부터 임. 61세부터 70세까지는 활동할 곳이 없음. 마을 일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고 있게 됨. 청년, 노인 사이에 끼어서(사례9)
- 중장년회를 만들고 나면 청년회 회원들이 인원이 적다 보니 오히려 청년회 활동이 힘들어 마을이 죽어버릴 것임(사례26)
- 마을은 생산 연령 인구들이 들어오고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려야 하는데 중장년층 위주로만 흘러가버리면 젊은층이 여기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음. 고령화가 되다보니 젊은 사람들이 없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을이 변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외지 인구가 유입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어서 어울리지 못하는 점도 있음(사례24)

○ 그러나 현혜경 외(2020)에 따르면,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전환되면서 자산문제, 재정문제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의사결정 구조 및 규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하고 있고, 전출입이 많아지는 현재에는 거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로 선거권과 관련하여 거소 여부에 대한 엄격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함

-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많이 되지 않아서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기존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큼. 그래서 남성의 발언권이 세다고 생각함
- 아직도 과거의 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문제점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됨
- 매달 마을의 현안들을 다루고 있고 마을에서 갈등이 있는데 회장이 노인 회원들에 불만사항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관건임
- 마을에 본적을 두고 19세 이상 1년 이상 실거주자에 한해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음(사례20)
- 여기 살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집에 자식들이 들어오는 집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음. 18세 이상 마을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선거권을 가지지만 확인을 명확하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님(사례28)

○ FGI 참여자들의 의견과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2019년 제주여민회와 전여농제주도연합이 컨소시엄을 통해 제안한 성평등마을규약표준조항에서 제안한 1인 1투표권은 마을운영 관련 총유개념으로 인해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짐. 이러한 문제는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마을운영규약의 문제점들이 주목되고 이장 권한이 큰 마을의 경우 운영규약 및 총회 등을 무시하고 마을사업을 임의 진행한 사례들(현혜경 외, 2020)의 맥락에서 마을마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주민의 성인지 역량 강화 필요

○ 대부분 FGI 참여자들은 마을운영에 참여를 확대하고 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것은 이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음. 마을마다 이장의 임기는 2년 연임제, 3년 단임제 등으로 다르지만, 마을주민의 참여 혹은 이주민들과의 갈등해결 등에 대한 노력에서는 차이가 있었다고 말하였음. 최근에는 각종 마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기획과 잦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장, 개발위원회 등 마을리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견이었음

- 평등한 구조를 만드는 건 리더가 중요한 것 같음. 이전에는 이장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같이 움직인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음. 이장이 바뀌고 나서는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는 것 같음. 그 중 하나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했음. 이

전과 비교해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됨(사례15)

- 마을 현장 포럼도 하고 마을이장의 적극성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 같음. 주민 교육을 강조함. 뭐가 필요하고 뭐가 문제인지 소통하면서 누구나 알게 됨. 마을의 발전 방향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류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갈등 요소를 줄여감(사례16)
- 마을에서 보통 리더십을 갖는 여성들을 보면 구조적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회장을 맡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자리가 안 나서 못하는 경우 있음. 서로가 역량을 갖고 마을 일을 하는 데 민주적으로 한다면 교육이 의무적으로 되어서 관점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함(사례22)

○ 또한 고령화되고 있는 행정리 단위의 농촌마을에서 성별 고정관념 문제를 단시간에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언급하였음. 조금씩 배려하고 개선하고자 노력은 시도하고 있지만 과거부터 해 오던 방식으로 마을행사에서 힘쓰는 일은 청년회 등의 남성이, 음식준비는 부녀회 등 여성이 주로 하고 있다고 호소했음. 마을인구의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회 중심의 어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함. 노인들 대상으로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인식전환의 계기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했음

- 여성들은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음. 앞에 나서서 발표하는 발표력, 공동생활 단체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회의 방법. 회의 매너, 진행방법 등 교육 필요(사례28)
- 노인회가 청년회보다 구성 인원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실제 마을일은 청년회와 부녀회가 하고, 인구가 점점 고령층이 많아지다 보니 일을 할 사람이 없음. 부녀회든 노인회든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고 서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함(사례6)
- 청년, 장년, 노인이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사례20)
- 마을에 체육대회나 노인잔치, 행사 말고는 같이 하는 게 없음. 농촌에 뭔가 할 수 있게 만나서 할 수 있는 문화 여가나 교육이 필요함.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변화를 시켜야 함((사례4)

○ 대부분 FGI 참여자 중 이장과 개발위원장, 부녀회장 등의 연령대는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의 베이비붐 세대로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 부모와 같은 노인들과의 의견 충돌을 최소화하고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설득해야 하는 입장에서 의사소통 방법, 갈등해결 방법, 한글 교육, 스마트폰 사용법 등의 교육을 요구하였음

- 교육 방식이 재미있었으면 좋겠음. 서로 참여할 수 있고 시간을 짧게 하면. 체험할 수 있는 교육으로 하면 좋겠음. 그냥 앉아서 듣는 교육은 가져가는 것도 없고 다녀온 기억이 남아야 하는 데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음(사례10)

- 핸드폰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마을에서 안내사항이 있을 때 단체 문자를 보내는 수단으로 활용됨. 사용법을 몰라서 문자로 보내도 전화가 리사무소로 옴. 정말 중요한 게 어르신들의 핸드폰 교육임. 요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모여라 안내를 하지 않아도 회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서 비대면이 되어 회의 문화도 완전히 바뀌게 됨. 어르신들에게 핸드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 세대 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사례33)

○ 민주적 참여를 위해 노력한 사례를 보면, 마을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탈피하고 발언권, 의결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었음. 세부적으로 보면, 마을행사가 있을 때 음식업체에 음식준비를 맡기고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경우, 마을총회 등 회의가 있을 때 음식과 다과 준비 없이 진행하고 회의 마친 후에 모든 참여자 대상으로 마을가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로 다과와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모든 위원들이 마을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경우 등의 사례임

- 예전엔 회의 끝나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술 마시고 모두 참석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그렇게 되지는 않음. 이런 방법이 좋은 효과도 있지만 회의 끝나고 소통의 장이 없는 것은 아쉬운 점도 있음. 토의하고 해결되고 각각 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게 됨(사례14)
- 다과는 준비 안하고 회의 끝나면 상품권을 지급함. 운영위원회 만원인데 마을회에서 쓰는 식권임. 마을식당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임. 이전에는 정기총회 때만 지급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개발위원회가 방문해도 식사를 하지 못하고 술 문화를 즐기지 못하게 되니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음. 동네에 있는 식당, 슈퍼마켓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임(사례11)

3) 정책 요구

□ 시범사업 이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성과 평가 필요

○ FGI에서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요구가 논의되었음. 논의 결과, 시범사업은 마을에서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인식개선,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의 참여 확대 등으로 다양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약개정 등에 대한 부담이 점차 높아져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오히려 부정적 영향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마을마다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채 규약개정에만 초점을 둔다면, 시범사업은 오히려 다른 마을로 외연 확장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었음

- 마을마다 찬반이 중요하고 의견에 따라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 제주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기본 틀이 주어진다면서 그에 따라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의 내용에서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의 특징에 맞게 진행 필요(사례4)
- 연합청년회, 이장들을 공략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음. 아직까지는 마을에 남성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남성들의 움직임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음. 교육 참여율도 그렇고 힘들게 진행하면 효과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함. 사전에 협조가 되면 자생단체별로 참여율을 높이고 관심도 높이고 그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사례11)
- 교육을 하게 되면 반강제, 강제동원으로 하게 됨. 대개 이해관계자가 되어야 참여하지 그렇지 않으면 참여율이 떨어지게 됨. 남성이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게 되는 것임(사례13)
- 처음에는 부녀회원들 위주로 남녀 모두 공평하게 살아야 하고 무턱대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하는 주입식 교육이었던 느낌이었음. 참여보다는 강의식 위주로. 왜 여자만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지 의아했음(사례11)
- 성평등규약 이렇게 사업명을 다니까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는 걸로 여기는 것 같음. 마을에서 규약이 개정되지 않아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점이 많은데 그걸 챙기진 않는 것 같음. 사업명을 바꾸는 것도 고민하면 좋겠음(사례15)
- 사업 마친 이후에 계속 협조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 불필요하다고 느꼈음. 사업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참여에 호의적이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음. 이런 점도 생각하면 좋겠음(사례16)

○ 이에 더하여 마을마다 마을의 규모와 사회경제 변화 정도가 달라 시범사업을 통한 규약개정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다는 의견도 제기하였음. 예를 들면, ‘범죄없는 마을’ 선정과 같이 기준을 제시하고 마을이 주도적으로 성평등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임

- 성평등마을을 지정하면 주민들 인식부터 환경,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야 함. 범죄 없는 마을 입간판처럼 노인회관이든 마을에 필요한 시설의 리모델링 등 기회가 있었으면(사례5)
- 성평등마을 사업은 부녀회 뿐 아니라 청년회, 노인회 의견을 수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함. 어떤 사업이든 마을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찬성할 것임(사례4)
- 강요보다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간을 짧게 진행하면 많은 참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함. 요가 등 프로그램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함. 단순하게 성평등 교육에만 국한하는 것보다 자생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각각 지원해도 좋겠음(사례10)
- 교육 대상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듦. 농촌의 경우에는 낮에 일하기 때문에 저녁에 할 수밖에 없음.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질 좋은 교육, 강사가 중요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를 먼저 고민하게 되도록 힐링 되거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 이유임(사례5)

▪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면 2천만원 미만으로 지원했던 것 같음. 성평등규약을 개정하고 자치적으로 성평등 교육에 참여율을 높이고 변화를 시도하는 마을을 지정하는 것도 좋겠음. '성평등마을 1호 지정마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마을에 변화가 되고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사례11)

□ 성평등마을 사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체계 필요

○ 향후 성평등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시범사업 시점만이 아니라 사전작업으로서의 정책적 노력을 필수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즉,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시도하기 전까지의 관심 유도와 사업에 대한 이해 등 준비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읍면동이장협의회' 등을 통해 사전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말함. 1년 단위의 사업추진으로 절차상 준비 없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고, 체계적으로 준비한다고 해도 마을의 의결기구와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이해와 설득작업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영농회, 이장들이 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거부하기 때문에 직장의무교육이 있듯이 이장들 대상으로 성평등 의무교육과 성평등 마을에 대한 안내를 하면 좋겠음(사례3)
▪ 성평등 교육은 주민 모두가 받아야 하고 장기적으로 몇 회 이상의 교육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만약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등에 기본적인 교육으로 들어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성평등 마을에 대한 이해가 나아질 것 같음(사례13)
▪ 나이 드신 분들은 주입식 교육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재밌고 활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식개선은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 참여하는 분들 위주로만(사례10)
▪ 남자들은 마을회의에 참여하며 다양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음. 인식개선과 주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면(사례7)
▪ 성평등 교육을 몇 번 받았다고 인식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1년 단위 사업은 일회성 사업으로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좋겠음. 성평등교육과 마을에 부족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부분도 충족되면(사례7)
▪ 교육을 5번 정도 참여했는데 딱딱한 느낌이 있었음. 레크레이션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익하게 같이 동참할 수 있고 동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사례10)
▪ 일회성이 아닌 꾸준하게 강사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필요(사례9)

□ 소통과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이런 이유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 자체가 성평등마을이라고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먼저 성평등마을로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결정하고 기획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싶도록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음. 이를

위해서는 시범마을 간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가 필요하고 소통과 연대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이 교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더하였음. 결국엔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에 대한 평가는 규약을 개정했느냐 혹은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어떠한가 등의 평가가 아니라 진행과정과 성평등 가치를 중심에 두고 마을주민들 간의 소통과 연대, 마을과 마을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질적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시범사업을 한다면 사업비에 강사비, 다과비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시범마을에 지원하는 금액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그게 없었던 것 같음. 시범사업에 성과를 내기 위한 기대치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교육으로 인식개선을 하는 것도 효과이고 규약을 바꾸는 것도 효과이지만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성과를 내는 건 어려운데 그런 부부에 대한 인정이 없는 것 같았음(사례11)
-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성평등마을로 지정된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지 않은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성평등교육을 실시했는지, 성평등마을 시범사업에 참여했는지 등에 대해 가점으로 넣으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음(사례29)
- 시범사업에 참여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이 지원되어야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음. 마을마다 연계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함(사례36)
- 성평등마을로 진행되고 사업을 마치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참여와 정보가 교류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이 되면 좋겠음. 5회기 정도의 교육은 겉핥기밖에 안 되는데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면(사례32)

다. 소결

○ 성평등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개선방향을 도출할 목적에서 2019~2020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대정읍 신도3리 신도1리, 안덕면 대평리, 한림읍 한림3리, 금악리, 구좌읍 월정리, 성산읍 신산리 난산리의 시범사업TF팀 등 참여자 총 36명을 대상으로 FGI를 수행한 결과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동기와 성과

□ 마을규약은 마을작동 시스템 역할

○ 대부분의 FGI 참여자들은 마을규약을 마을 주민의 의무와 권리 및 마을 일의 기본

지침 등 마을운영에 필요한 기본 틀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참여 동기는 성평등 마을로의 변화를 위해 부녀회장, 전국여성농민회 등 권유로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됨

□ 사업 참여자들의 민주적 마을운영 필요성 깨닫는 계기

○ 시범사업 참여 동기가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참여자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장애요인과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을 동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음

-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생활 곁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불평등 요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 의사결정기구의 여성비율 확대, 참여와 성장의 계기, 마을 일에 대한 참여 동기와 소통 증진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장애요인으로는 고령층 비중이 높은 마을 특성을 고려할 때 규약 개정 등에 대해 최고 의사결정 계층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까지 현실적 장벽이 높다는 것, 부녀회 외 주민들의 관심 부족과 참석률 저조, 인식개선보다 경제와 재산 관련 사업에 더 관심 집중하는 등 활동주체의 영향력에 따른 한계가 주요 의견으로 제시됨

□ 성평등마을의 기본 요소는 민주적 파트너십의 참여와 소통

○ 참여자들은 성평등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 요소에 대해 민주적으로 성평등한 파트너십이 가능한 참여와 소통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개인 일과 마을 일의 애매모호한 경계와 마을 내 고령화 등으로 야기되는 성별 고정관념 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함

□ 주민의 낮은 참석률 및 규약개정의 현실적 장벽 등 어려움 호소

○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어려운 점에 대해 마을주민들의 참여였다고 호소함. 사업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참석률이 저조하다보니 부녀회 중심으로 참여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여성 대표성 확대 및 일부 마을 규약개정 등의 가시적 성과

○ 위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여했던 일부 마을에서는 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성평등마을규약으로 개정,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 등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조사됨

□ 남성 참여자들의 성평등 관점 인식 전환 계기

○ 또한 남성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마을의결기구의 구성원 대부분이 중·고령층 남성의 비중이 높은 현실 상황으로 비춰 볼 때 주민 성인지 역량강화 등 지원이 필요함

2) 마을에서의 의사결정 참여 구조

□ 마을 이장과 남성 중심 의사결정 구조

○ 현재 마을의 의사결정구조는 최고 의결기구인 마을총회 이외에 마을마다 목적사업의 필요에 따라 추진위원회,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명칭의 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은 현직 이장과 당연직을 중심으로 직전 이장, 감사, 반장, 자생단체장 및 추천한 자로 구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고령 인구 비중 높아 의사결정에 지장

○ 일부 마을은 규약의 내용을 위원회 구성의 여성비율을 30%이상으로 개정하여 부녀회장 외에 여성반장 선출 등 여성 대표성 확대의 변화가 나타났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마을이장 외에 노인회, 청년회 등 남성 중심의 참여구조가 주요 마을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즉, 최소인원을 맞추기 위해 세대별 참여 가능한 여성, 청년 등에 개방적인 일부 마을을 제외하면 대부분 의사결정구조에서는 여성, 다문화, 이주민 등의 집단은 제외하는 경향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주민의 성인지 역량 강화 필요

○ 전술한 바와 같은 어려움으로 민주적 마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한 의견은 이장, 개발위원회 등 마을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이런 점에서 이장 및 마을임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 강화는 물론 주민 성인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인문학, 한글 교육과 스마트폰 교육 등 세대소통 기회,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방법, 회의 진행방법 등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안함

○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마을에서는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탈피하고 민주적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 발언권, 의결권 등을 보장하는 노력이 나타남

- 이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음식과 다과 준비 등으로 회의 과정에 소외되었던 부녀회장을 포함한 여성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변화가 포착된 것임

3) 정책 요구

□ 시범사업 이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성과 평가 필요

○ 참여자들은 시범사업은 마을마다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채 규약개정에만 초점을 둔다면 오히려 다른 마을로 외연 확장에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약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성과 평가 등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성평등마을 사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체계 필요

○ 참여자들은 당해 연도 시범사업 시점만이 아니라 마을마다 준비 단계부터 심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함. 예를 들면, 사업에 대한 관심 유도와 이해 등 준비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읍면동이장협의회' 등에 사전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말함. 이를 통해 본 조사 결과 파악된 저조한 주민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파악됨

□ 소통과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참여자들은 마을이 먼저 성평등마을로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사업에 참여하고 싶도록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음. 이를 위해서는 역량이 있는 주민들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마을 주민들끼리 혹은 이웃마을 주민들 간에 소통과 연대로 필요한 정보와 자원이 교류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 필요할 것임

4) 시사점

□ 민주적 마을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 우선 마을주민들이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사업의 효과가 있다는 것임. 아직까지는 부녀회와 관련 단체들 중심으로 이 사업을 이해하고 추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상황임. 성평등마을 조성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생소하고 변화를 이끄는 데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등의 두터운 장벽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임. 따라서 제주도정에서 행정리 단위의 이장·임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성인지 교육과 성평등마을에 대한 안내 및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양성평등권고제 등이 정책적으로 제고될 필요가 있음

□ 다수 주민 참여 방안 및 민주적 자치역량 배양을 위한 지원 필요

○ 참여와 소통이 원활한 민주적 파트너십이 가능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끼리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마을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인문학적 이해로 풀어내는 소양 교육, 마을공동체 이해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폭력 예방교육 등 민주적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주민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소통과 연대는 다양한 활동 주체들을 연결하여 주는 소통의 고리가 될 것임. 마을 내 주민들 간의 상호적인 의사소통은 물론 이웃한 마을과 주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성평등마을 조성 과정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공동의 목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 공동체 및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할 것임

제 5 장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를 위한 제안

1.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 방향
2. 정책 제언

1.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 방향

○ 이론적 검토, 성평등마을 개념 정의,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SWOT 분석을 통한 진단 및 시범마을 사례탐색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성방향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가. 성평등마을 활성화의 의미

○ 1995년 제정되어 그동안 여성정책의 근간이 되었던「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되었음.「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이 운영하는 지역을 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의 성 주류화 전략으로 여성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개인적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전환하여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임. 이에 따라 제주도 차원에서도 2019년도부터 마을여성의 대표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평등마을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참여확대, 1인 1투표권 등 제반 마을운영 영역에서 변화를 시도해 나감

○ 특히 행정리 단위 작은 마을에서의 '성평등'은 성별을 이유로 능력이나 역할이 고착되는 의식과 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가정과 마을 주민 모두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임. 즉,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남녀 누구나 '동등한 파트너'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새로운 가치로서 실천적 의미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방향에서 본 연구에서의 **'성평등마을'이란 모든 주민이 민주적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며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생활공간**이라고 정의함

○ 민주적 참여와 권리가 보장된 성평등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부녀회 혹은 여성만의 노력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닐 것임. 마을이라는 생활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변화를 실천해 나갈 때만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성평등마을로의 변화는 마을운영의 민주적 운영 기반 마련, 주민 역량강화, 각종 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 나아가 의사소통 네트워크

형성 등 여성 이슈에 대하여 마을의 모든 구성원들과의 협력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성평등마을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이제 마을의 규모, 주민역량 등을 고려하여 치밀한 계획과 현실성, 그리고 인식 공유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즉, 성평등 관점에서의 마을운영에 대한 실행 기반, 활동에 대한 운영능력, 주민의 성인지 역량 그리고 공동체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각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대안으로서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모든 주민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마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성평등 관점의 마을환경이 실현될 수 있는 필수적인 구성요소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임.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의 제반요건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적 지원으로 확장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결국 여성친화적 접근으로 더불어 행복한 성평등마을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실적 실천에 필요한 제반요건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임. 즉 마을단위로 생활공간 특성을 고려한 목적, 구성요소, 추진과정에 대하여 사전 검토과정과 정책 환류 방안에 관심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임

나. 성평등마을 조성의 방향

1) 목적 설정

○ 성평등마을 조성을 위해 가장 우선될 점은 마을주민들 대상으로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설정하는 것임. 성평등 방향으로 마을운영을 위해서는 동일 생활공간에 사는 주민들끼리 사업목적에 대한 동일한 사고와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임. 구성원들 간의 동일한 사고와 인식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발판일 뿐 아니라 나아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어 마을 문화로 정착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지향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상호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 간 연대를 보다 긴밀하게 하는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함. 성평등마을 조성의 목적은 마을별로 추진내용을 각기 달리할 수는 있을 것임. 그러나 성평등 이슈는 마을규약 등에 근거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 보편적인 인식이

주된 원인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주민 성인지 역량변화를 체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당 마을특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추진내용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목적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구성요소

○ 성평등마을 조성의 구성요소는 법·제도 및 문헌 검토를 통해 도출한 본 연구의 사례조사 분석방향에서 제시된 것처럼 민주적 마을운영 기반 구축, 마을공동체와 주민 역량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환경 조성,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등임

○ **먼저, '민주적 마을운영의 기반'은** 주민의 의무와 권리, 갈등 해결 등의 기본 방향에 대한 마을작동 시스템으로서의 규약 등을 포함함. 이는 대체적으로 마을운영규약이 향약에 기반을 두고, 현재에는 향약, 마을운영규약, 정관, 회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현혜경·라해문, 2020), 마을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이 되기 때문임. 따라서 성평등마을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무와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민주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스템적 요소로서 성평등마을규약으로의 제·개정 등은 매우 필요할 것임

○ **다음은 '마을공동체와 주민 역량강화'**로 실제 성평등마을 조성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활동주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임. 이는 대체적으로 성평등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성인지 역량을 갖춘 단체 및 행정이 주된 주체가 됨.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마을주민이 마을의 변화를 위해 중심 역할을 하는 인적자원이라는 점에서 마을공동체와 참여 주민들의 성인지 역량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임. 이 외에 사업 수행단체는 성평등마을 조성의 기본방향에 따라 마을 현장에서 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전문가 집단은 관련 교육, 자문,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행정은 필요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셋째로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환경 조성'은** 생활공간에서의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임. 무엇보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접근성이 보장되는 환경은 마을 주민 모두에게 차별적인 요소와 위험요소가 없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임. 특히, 본 조사 결과 모든 마을에서 접근하기 편리한 건강, 보건·의료 시설, 돌봄 시설, 문화·여가 시설 등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이런 점에서 지역자원 연계 및 행정부서 간 협력 등을 통해 양성평등한 마을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 **마지막으로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는** 성평등마을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주체들을 연결하여 주는 소통의 통로를 말하는 것임. 이와 같은 연결통로는 아주 기본적인 마을주민들 간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의 차원일 것임. 뿐만 아니라 성평등마을을 만들어가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형식일 수도 있을 것임. 특히 소통과 연대는 이웃한 마을과 주민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공동체 네트워크로 확장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호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성평등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모든 해당 마을별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단계화 과정이 필요할 것임. 성평등마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평등마을 조성과 조성 과정에 마을 내 여성 역할에 대해 재조명하고 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의 역량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 긴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임

3) 추진과정

○ 성평등마을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행 주체와 추진 과정에 대한 사전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임. 즉,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과는 달리 '성평등마을'은 여성 역할의 재조명과 가치 인식을 공유하고 성평등한 마을로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특성을 일정부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측면에서 성평등마을에 대한 이해는 성인지 감수성과 주민들 간 소통의 장을 통해 인식을 공유하고 보다 협력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근원적인 불평등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식개선이라는 접근방법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임(김미경 외, 2004).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효과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요소들에 면밀한 검토가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첫째, 활동주체가 필요함**. 이는 마을 현장에서의 인식개선을 촉발하고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행위 주체를 말함. 초기에는 관련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행정은 지원적 역할을 담당하고, 관련 시민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점차 수행주체와 마을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임

○ **둘째, 단계적 과정이 필요함**. 사업의 목적이 인식공유를 통하여 성평등마을을 조성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내용과 주민들 간의 이해와 조율 과정이 필요할 것임. 초기 단계에는 성인지 교육에 참여하고 주민들 간 소통의 장을 통해 느슨한 연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후 심화 혹은 지정단계에서는 마을의 성평등 이슈로 나아가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할 것임

○ **셋째, 진단과 환류체계가 필요함**. 성평등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진성과에 대한 진단과 환류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참여 마을들 간 활동주체와 추진내용 및 개선점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는 평가회와 동시에 진단결과를 토대로 목표와 추진 내용 등에 관한 환류방안에 관심을 두고 사업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정책 제언

○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방향 및 구성요소에 따른 민주적 마을운영 기반 구축, 마을공동체와 주민 역량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환경 조성,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의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음

〈 표 5-1 〉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사업 과제	세부 과제	관련 부서 및 단체
민주적 마을 운영 기반 체계화	▪ 성평등마을 지정 및 지원 체계 마련	▪ 주관 :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 지원 : 성평등마을 교육 운영기관
	▪ 성평등마을 활성화사업 모니터링 및 진단	
	▪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마을공동체와 주민 역량강화	▪ 마을 여성의 대표성 및 가치 증진 인식	▪ 주관 :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 지원 : 제주양성평등교육지원센터 및 성평등 교육기관과 단체
	▪ 마을공동체와 주민의 성인지 역량강화	
	▪ 촉진자, 중립적 조정자로서 마을활동가 지원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환경 조성	▪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 주관 :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 및 기관 ▪ 지원 : 공공건축가 자문 및 컨설팅
	▪ 여성을 위한 공간 조성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 소통과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 주관 : 제주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 및 기관 ▪ 지원 :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수행기관 지정 및 지원
	▪ 민관 협력 강화 및 주민 참여 활성화	
	▪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지원 체계 구축	

가. 민주적 마을 운영 기반 체계화

1) 성평등마을 지정 및 지원 체계 마련

○ 성평등마을 조성을 위해 가장 우선될 점은 마을주민들 스스로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설정하는 것임. 동일 생활공간에 사는 주민들끼리 목적을 위한 사고와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임

○ '민주적 마을운영의 기반'은 주민의 자격으로부터 출발하며, 의무와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기본 방향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스템적 요소로서 마을운영규약이 있음

○ 성평등마을 조성은 다양한 추진내용을 매개로 여성 대표성 제고와 성별 불평등 해소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가 보장되고 마을자치가 잘 되기 위한 실행의 근거로서 성평등마을규약으로의 제·개정 등 점검은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해서 **성평등마을 조성 단계를 단계적으로 제안함**

- **1단계는** 현재의 시범사업을 유지하는 형태의 **'성평등 예비마을'**로
- **2단계는** 1단계 조성과정에서 역량이 향상된 성평등시범마을 중에서 성평등마을 운영규약 충족 마을 대상으로 **'성평등마을 지정 마을'**로 추진하는 방식임
- **2단계에서는 정부추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포함하여 국비 지원 사업 등과 매칭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정책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성평등마을 지정 및 단계적 지원체계 마련

○ 성평등마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운영규약의 민주성과 자치성, 평등성이 반영된 규약 정비와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단계적 지원 체계를 제안**함

〈 표 5-2 〉 성평등마을 지정 단계적 절차 및 지원체계(안)

구 분	1단계 : 성평등 예비마을	⇨	2단계 : 성평등마을 지정 마을
조 건	▪ **대상 :** 성평등마을 조성에 관심 있는 마을 ▪ **조건** – 성평등마을 교육 참여 및 이수 마을	⇨	▪ **대상** : 성평등마을운영규약 충족 마을 ▪ **조건** – 성평등마을운영규약(개정) – 성평등마을운영규약 표준조항을 근거로 마을운영규약(매뉴얼)에 민주성과 평등성 등 내용 반영 조건 충족
	▪ **지정** : 참여 인원, 이수 시간		▪ **지정** : 신청 → 심사 → 지정
지 정 기 관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성평등정책관) ▪ 지원 : 성평등마을 교육 운영기관	⇨	▪ 제주특별자치도(성평등정책관)
지 원	▪ **예산규모** : 1천만원 범위 (※ 3~5개 마을 / 마을 당 3백만원 이내)	⇨	▪ **예산규모** : 4천만원 범위 (※ 3~5개 마을 / 마을 당 1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성평등마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성인지 교육, 워크숍, 숙의토론 등		▪ **지원내용** – 성평등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사업 지원 – 주민과 생활환경 등 지역사회 공공 인프라와 생활문화, 복지 등 지역 주민들의 필요 요구에 따라 예산 편성
비고	▪ 성평등예비마을은 **현재의 성평등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과 같은 개념**임	⇨	▪ 정부추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포함하여 **국비지원 사업과의 매칭 방안 검토** 필요

□ 성평등마을의 소규모 공동체 지원사업 지원

○ 성평등마을 활성화를 위해 성평등마을(예비마을 및 지정마을)의 마을회 및 주민 공동체 대상으로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 간 소통 및 협력의 기반 강화 필요

○ 추진 내용

- 대 상 : 성평등마을(지정·예비마을)의 마을(회) 및 주민 공동체(5인 이상, 비영리 단체)
- 지원규모 : 1천만원(마을 당 5백만원 이내, 2~4개 마을)
- 사업내용 : **성별구분 없이 참여하는 마을청년모임**, 성인지 관점의 인권, 평화, 소통, 리더십 **교육 등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 지원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지원방식 : 시범사업 및 지정사업과 연계하여 공모형태로 추진

2) 성평등마을 활성화사업 모니터링 및 진단

○ 성평등마을 활성화사업은 눈에 보이는 규약개정 여부 혹은 교육 참여율 등의 성과보다는 진행과정과 모임이 실질적으로 전통마을의 문화를 성평등 가치에 더 많은 관심 두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업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관련 담당 부서와 수행기관이 시범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마을의 성평등 이슈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즉, 성평등마을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마을 안에서의 불평등 요소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 사회변화의 내용이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에서 성평등한 문화 확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마을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기존 규약을 성평등규약으로의 개정에만 초점을 둘 경우 이 사업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시범사업 수행 자체가 힘들게 추진될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임. 따라서 행정과 촉진 기관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평적 관점에서 지원과 계획, 시행, 참여, 효과, 만족도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진단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성평등마을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제안되었던 성평등규약개정 표준안은 비롯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과 연계하여 마을 활동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관련 지침 또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은 중요함

- 본 연구의 참여자들 대부분이 사업과 관련된 매뉴얼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한 점에서 사업 안내와 추진방법, 결과 등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역할은 행정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여겨짐

○ **성평등마을 조성에 필요한 매뉴얼(안)**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음

- 첫째, 성평등마을에 대한 관심 단계에 가능한 마을의 의사결정기구, 자생단체, 주민들의 관심사와 성평등 이슈를 어떻게 발굴하고 상호소통의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음. 각 이해당사자 그룹별로 가능한 목표와 과제에 대해 상호협력 및 보완하여 활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과정들을 시범사업의 결과를 참고하여 제시될 수 있음

- 둘째, 마을 현황에 대한 분석단계는 마을 주민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자료와 동시에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임. 주관적 의견과 객관적 자료와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간 균형을 맞추어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문제의 범위를 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마을 현황 분석은 마을의 자원 및 강점과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셋째,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마을주민들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자발적 참여와 동기유발이 가능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임. 마을 목표의 설정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성평등 가치를 지향하는 가정 및 마을 문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적 노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
- 넷째, 성평등 이슈 선정 단계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배열하고 마을마다 상황을 고려하여 중단기과제로 제시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다섯째, 실행 전략의 단계는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기존 마을의사결정 기구와 자생단체 등과 통합하거나 혹은 별개의 조직(모임)을 만들고 자원을 배분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여섯째, 모니터링 및 진단과 환류의 단계는 성평등마을에 사업의 결과가 얼마나 목표에 도달하였고, 마을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변화에 대해 진단할 수 있음. 이런 단계별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참여 마을마다 효율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마을 안에서의 성평등 가치를 지향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임

나. 마을공동체와 주민 역량강화

1) 마을 여성의 대표성 및 가치 증진 인식

○ 성평등마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평등마을 조성과 조성 과정에 마을공동체와 참여 주민들의 역량변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과정이 필요함

○ 성평등마을에 대한 이해는 성인지 감수성과 주민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교육단계 설정이 필요한데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기법 활용이 필요함

○ 특히 초기 단계의 성인지 교육은 참여하게 하고 느슨하게 연대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이후 심화 또는 지정단계에는 숙의하고 토론하며, 마을과 성평등 이슈로 나아가고 문제해결 방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참여형태 교육이 필요함

○ 교육은 반복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함. 긴 시간, 긴 호흡이 필요하며, 여성으로서 마을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가는 과정은 마을 내 여성 역할에 대해 재조명하고 성평등 가치 인식으로 나타나 성평등마을로 변화하는 데 촉매제가 될 것임

2) 마을공동체와 주민의 성인지 역량강화

○ 성평등마을로서 여성 역할의 재조명과 가치 인식을 공유하고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 단계적 과정으로 성인지 주민역량강화 및 성인지교육, 교육컨설팅 지원 등이 병행되어 지원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본 연구 결과 '성평등마을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주민공동체참여 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성평등마을 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고, '마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성평등 이슈'에서 '폭력, 범죄 등에 무관심'이 71.4%로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평등 주민역량강화와 마을 내 발생하는 폭력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지원이 필요함

□ 성인지 주민역량강화

○ 성평등 예비마을과 지정마을의 성인지 주민역량교육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인문학적 이해로 풀어내는 소양 교육, 마을공동체 이해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폭력예방 교육 등 필수 교육 내용과 선택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의 체계화를 통해 역량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 주민역량 1단계(기초과정)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토론과 숙의 과정이 필요함. 특히 민주적 의사결정 경험 부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의토론과 회의 등 강좌를 개설하여 민주적 토론과 조정, 합의 과정을 경험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또 마을과 가정(가정폭력, 성폭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지, 대응, 조정, 해결 등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교육도 필요함

○ 추진 내용

- 대상 : 도민, 마을 이장·임원, 주민자치위원회, 성평등마을 조성에 관심 있는 마을
- 과정 : 성평등마을 조성 단계에 따른 일반교육, 기초과정, 심화과정으로 구성 운영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지원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및 성평등 교육기관과 단체

〈 표 5-3 〉 성인지 주민역량 강화 과정

도민교육	1단계(기초과정)	2단계(심화과정)
성평등마을 조성 필요에 대한 교양교육	성인지 감수성과 주민들 간 소통을 돕는 참여 교육	성평등마을 조성 이해 및 이해를 돕는 숙의 토론 등의 참여 교육
도민, 이장 및 마을회 임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주민 (예비지정 마을 주민)
연2회 (상반기 · 하반기)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정 설계
제주도 및 성평등 교육기관	성평등 교육기관	성평등 교육기관
※ 성평등예비마을 신청 조건과 연계하여 반영	※ 성평등예비마을 지정 이후 진행될 수 있음	※ 성평등마을(예비/지정) 지정 단계 이후 진행

□ 성평등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 성평등마을 지정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회) 및 주민공동체 대상으로 주민교육 계획, 사업추진 관련, 규약 개정 등 마을의 필요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 향상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함

○ 추진 내용

- 대상 : 성평등마을 지정 마을
- 내용
  - · 성평등마을 주민 교육 계획 및 성평등마을 활성화 사업 컨설팅, 다양한 분야와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교육 대상(성별, 세대, 주민공동체/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에 따른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교육 설계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지원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및 성평등 교육기관과 단체 등

※ 맞춤형 컨설팅에 필요한 수행기관 선정 및 마을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지원 가능

3) 촉진자, 중립적 조정자로서 마을활동가 지원

○ 성평등마을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촉진하며, 마을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는 중립적 활동역량을 갖춘 마을활동가 지원

○ 마을활동가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촉진자로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혹은 회의나 워크숍을 이끌어가는 사람임

-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교육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확히 찾아내고, 참가자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마을활동가의 중요한 역할일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상담기술, 질문기술, 피드백기술, 요약기술 등은 물론 성평등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또한 각 참여자들이 가진 능력과 자원을 최대한 잘 끌어내기 위한 조력자로서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 정립이 반드시 겸비될 수 있어야 함

○ 마을활동가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참여자들의 문제해결 및 갈등해결, 의사결정 등에 대한 다양한 역동성을 이끌어내며 최대한 성과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마을활동가의 역할로서는 마을의 성평등 이슈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확하게 하는 역할과 참여자들의 생각과 느낌, 자신감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질문자의 역할과 촉진자의 역할, 갈등 관리자의 역할 등으로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역할 등이 가능하기 때문임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지원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및 성평등 교육기관과 단체 등

※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민교육 및 마을로 찾아가는 교육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다.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환경 조성

1)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 지역사회의 공간과 환경 시설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조성되어야 함

○ 특히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공간은 우수한 설비를 갖춘 시설이지만 접근성이 낮아 이용하기 불편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아 낯설음을 느낄 수도 있음. 결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은 외관상 좋은 시설보다는 주민들이 쉽게 드나들면서 자신의 공간이라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이용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곳이며, 누구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함

○ 또한 마을 주민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개방적 자연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모두에게 안전한 마을의 공간 확보가 필요함. 특히,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참여자들은 마을생활에서 병·의원 등 건강시설 여건과 문화·여가 등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마을에서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생활 안전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한 마을별 대응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생활공간에서의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임.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접근성이 보장되는 환경은 마을 주민 모두에게 차별적인 요소와 위험요소가 없고 자연감시 기능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제주도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제주지역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 주민 요구가 수렴된 방향에서 **양성평등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양성평등 권고사항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자문 및 컨설팅

2) 여성을 위한 공간 조성

○ 본 연구 결과, 참여한 거의 모든 마을에 여성회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마을 안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 수행을 비롯해서 쉼과 치유가 있는 여성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함

- 마을 내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사용 빈도가 낮은 유휴공간(구 마을회관, 마을 창고 등)을 활용하여 여성들의 마음과 몸의 쉼과 치유 활동이 가능한 인프라 지원

○ 여성문화공간은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과 동아리, 건강 증진 활동을 촉진하며, 돌봄과 상담, 보호, 휴식 등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 마을 내 여성을 위한 공간은 부녀회 사무공간 정도가 전부이며, 그 외 회의와 일부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성들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환경임

○ 마을 내 공공시설 조성 시 불특정사용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대상을 고려하는 공간 조성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공간을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제주도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제주지역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하여** 마을 내 공공시설 조성 시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공간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양성평등 권고사항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자문 및 컨설팅

라.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1) 소통과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 다양한 활동 주체들을 연결하여 주는 소통의 통로를 말하는 것임. 소통과 연대는 마을 내 주민들 간의 상호적인 의사소통의 차원일 수도 있고, 나아가 성평등마을을 만들어가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형식일 수도 있을 것임

○ 특히 소통과 연대는 이웃한 마을과 주민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공동체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으로서 다양한 상호협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긍정의 영향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것임

○ 성평등마을 지정마을의 경험을 예비마을, 성평등마을에 대한 이행 없는 마을들과 공유하는 것이며, 성평등마을 조성과정에서 역량이 향상된 주민이 활동가로서 경험을 나누고 연대하는 것임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수행 기관 지정 및 지원

2) 민관 협력 강화 및 주민 참여 활성화

□ 마을운영규약 등 성평등마을을 조성을 위한 행정영역과 민간영역의 협력 강화

○ 민관협력체계는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는 주도성이 각각의 영역과 분야에서 수평적으로 발현될 때 비로소 강화될 수 있을 것임. 또한 각 영역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을 때 사업의 효과성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임

○ **행정은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 정책설계에 따라 활성화 시책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중간)영역은 시민의 역량 강화 지원 및 민간의 전문성을 투입하여 연계와 촉진하는 역할 담당을, 마을과 주민은 함께 참여해서 숙의하고 토론하는 역할을 제안함**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수행 기관 지정 및 지원

〈 표 5-4 〉 성평등마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행정(공적)영역	공공(중간)영역	민간(마을)영역
	시민사회· 중간지원	
제도와 정책 지원	연구 사업 활성화 사업	숙의와 제안
컨설팅 지원	전문가 증간지원 조직	운영 개선
교육 지원	전문가+활동가 중간지원 조직	주민 참여

□ 수평적 활동을 촉진하는 주민참여 사업의 발굴 및 연계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 지역균형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소규모 공동체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민간지원 보조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성평마을조성사업 과정에서 마을과 주민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의제 해결과 의제에 담겨 있는 성평등 이슈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 지역활성화와 공동체의 수평적 활동을 촉진하는 연계사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함

○ 각종 **민간지원사업 심의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사업에 가점을 부여할 제도**를 마련할 필요 있음

※ 현재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에 성인지예산 반영 여부에 대하여 배점 적용하고 있음

○ 특히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소득과 일자리, 환경, 문화, 복지 등의 분야별 사업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협력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 표 5-5 〉 주민참여 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 내용

지원사업	대상	사업내용
주민참여사업	주민 지역공간	· 경관, 생활환경 등 지역사회 공공 인프라와 생활문화, 복지 등 지역 주민들의 필요 요구에 따라 예산 편성
지역균형사업	지역 주민	· 균형발전, 도민들의 행복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교육, 유아보육, 의료, 교통, 문화여가, 노인복지 등 6개 서비스 분야)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 공동체	· 도시, 농촌, 어촌 마을의 공공 인프라 및 경관, 문화, 소득 활동 지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민 공동체	· 문화와 복지, 여가 등 다양한 소규모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공동체 활성화 도모

3)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지원 체계 구축

○ **효과적인 성평등규약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 혹은 사업운영 관련 단체 혹은 기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우선 컨설팅 및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 활동가의 역량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현재까지 제주여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별 프로그램 지원이 참여마을의 인식개선과 사업을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 따라서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수행되어 온 성평등규약시범 사업이 3년차가 되고, 이에 따라 마을마다 모임들 또한 더욱 필요로 하는 정책요구가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있음. 참여시기가 짧을 경우 기본적인 교육과 사업에 대한 이해 등 수요가 높지만, 기간이 길고 역량을 갖춘 마을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설팅 횟수와 내용 등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임

○ 또한 주민과 주민 간, 마을과 마을 간의 네트워크 형성자로서 활동가들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수행기관의 역할은 주로 개별 시범사업 참여 마을모임에 대한 교육 등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임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규약 시범사업 수행 기관 지정 및 지원

참고문헌

강현수(2018). “기초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살기 좋은 삶터의 조건”, 국토이슈브리프, 2018.10.12.(제2호). 국토연구원.

김미경, 김영희, 서동희(2004).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공동체주의적 접근: 남녀평등 마을 만들기 운동의 제안”, 지방정부연구, 8(3), 2004.11, p.305-324.

김영정, 안인숙(2015).「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역할 분석 및 여성참여의 지역거점활용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2021). “2020년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자료집.

박노동(2018).「대전시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박태원, 천현숙(2012).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도시계획 구성요소”, 국토, 2012.10, p.29-40. 국토연구원.

손태주(2016).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개발 및 운영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해응, 강경숙, 윤금이(2020).「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임송미, 이영미(2019).「전남 농촌형 여성친화마을 사업모델 개발」. 전남여성가족재단.

제주여민회(2019).「여성대표성-제주여성이 말하다! 만들다! 이루다!」. 2019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마련 및 공론화 사업 결과자료집. 제주여민회·제주특별자치도.

조연숙(2013).「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심층성별영향분석평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연숙(2015). “마을공동체의 젠더이슈를 통해 본 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5(3), 2015.9, p.83-100.

주혜진, 김성권(2018).「대전광역시 여성 친화적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현혜경·라해문(2020).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주연구원.

부 록

1.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안)
2. 부녀회 임시회의 시나리오(안)
3. 주민 욕구조사 설문지

【부록 1】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안)

구분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안)
목적	제○조(목적) 본 향약(규약)은 주민 스스로가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녀노소 마을 주민 모두가 평등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안 설명: 이 (목적)조항은 마을규약의 맨 앞 총칙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우리 마을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표준조항(안)은 마을 구성원들간 민주적 소통과 협력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풍요롭게 살면서 주민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구성했습니다. (보통은 마을의 미풍양속 유지, 번영과 발전, 지역활성화 등이 언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 권리	제○조(주민회원의 권리) 모든 주민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마을의 모든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권리
	*표준안 설명: 보통 많은 마을규약 안에는 여러 주민회원의 권리가 나열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참여권 및 발언권까지 언급된 조항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 도내 많은 마을들에서 여성들은 주로 마을총회 등에 참석한다 해도 사실상 부엌에 가 있어 실질적인 마을의 중요 의사결정에 동참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마을주민회원 누구나 의사결정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여 최대한 여성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주민 의무	제○조(주민회원의 의무) 모든 주민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연령·성별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의무
	*표준안 설명: 전통 마을 안에선 우리의 미풍양속이라는 이름 하에 남성 위주, 어르신 위주로 발언권 등이 집중되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마을주민회원 모두가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마을 내 인권문제(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폭력 등) 발생 시 주민회원 누구나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의무
	*표준안 설명: 전통마을에서 공식화되기 어려워 취약해지기 쉬운 마을 내 인권문제 발생에 대해 마을 주민들 스스로 적극적 지원, 대처가 가능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회원이면 누구라도 마을 내 인권 취약자를 돕고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이도록 의도하였습니다.
의결권·선거권의 평등	제○조(의결권·선거권의 평등) 마을 내 의결권·선거권은 1인 1표를 기본으로 한다.
	*표준안 설명: 1인 1표가 아닌 1가구 1표로 운영되는 마을들의 경우 대부분 가구주가 남성인 관계로 특히 여성들의 의견이 마을로 반영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 발생하므로, 성평등 마을을 위해서는 1인 1표가 꼭 필요합니다.

구분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안)
마을 임원 조직	제○조(마을임원조직) ①개발위원회 구성 시 남녀 평등한 참여를 위해 위촉직 개발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그 외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표준안 설명: ①마을 내 실질적인 상시 의사결정기구인 개발위원회(운영위원회)의 경우 현직 부녀회장 1인으로만 여성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마을 내 여성들이 실질적인 마을 내 중요 사안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고 상시 의견을 개진할 통로가 너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직을 제외한 이장 또는 개발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촉직 개발위원에 대해 여성 참여 비율을 높여 마을 내 다양한 의사결정에 대해 여성들의 앎과 참여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는 개발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며, 위에서 제시한 위촉직 40% 방법 외에도, 부녀회에 일정 인원수를 할당하는 등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우리 마을에 가장 어울리는 방식을 찾으면 됩니다. (40%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 ②마을 내 개발위원회 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원회에도 성별, 연령 차별 없이 마을 주민회원의 고른 참여가 가능하도록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출처: 제주여민회(2019). '2019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마련 및 공론화 사업 결과'. p.29-20.

【부록 2】 부녀회 임시회의 시나리오(안)

연번	구분	시나리오 내용
1	부녀회장	▪ 안녕하십니까. ○○○ 부녀회장입니다. ▪ 이렇게 바쁜 저녁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행복한 마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성심성의껏 이 자리에 참석 해주신 부녀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 모의회의는 ○○○리의 마을규약이 보다 성평등한 규약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내년 초 우리 부녀회가 마을 총회에 제출할 마을규약 안을 확정하기 위해 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순에 의거, ○○○리 부녀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간사를 맡는 ○○○ 간사님께서는 성원여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 우리마을 부녀회 총 재적인원 ○○명 중 ○○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과반수 이상 참석)
3	부녀회장	▪ 간사의 보고와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부녀회장	▪ 오늘은 제주여민회 등 이곳에 함께 계신 외부 선생님들의 지원을 받아 모의 회의를 해보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통상 총회 후에 작성하는 결의서와 의사록 서명은 생략하는 대신, 오늘 이 자리에서 부녀회 명의로 만들어지는 우리 규약안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오늘 참석자 전원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겠으니 꼭 서명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임시회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보고안건 1호인 ○○○리 성평등 마을규약 만들기 사업 경과보고의 건입니다. ▪ 본 건은 이 사업을 제안하고 후원해주시고 계신 '성평등마을규약 사업추진단' 쪽 담당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추진단 담당	▪ 제 1호 보고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우리 부녀회가 함께 한 ○○○리 성평등마을규약TF가 꾸려지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후원으로 제주여민회와 전여농 제주도연합이 함께 본 사업추진단을 만들고 이곳 ○○○리에 성평등마을규약을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 이제 ○○○리 마을 경과보고입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입니다. (표에 따른 일정과 추진 내용 설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부녀회장	▪ 회원님들, 추진단 담당자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고, ▪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으로 의결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단일 안건으로, 「○○○리 성평등마을규약 관련 부녀회 제출안 확정 의결의 건」입니다. ▪ 이제 「○○○리 성평등마을규약 관련 부녀회 제출안 확정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여러분들께 오늘 제시하는 ○○○리 성평등마을규약 초안은 우리마을 TF로 참여한 저 부녀회장, ○○○님, ○○○님과, 회의에 참석하고 자료를 보강해주신 사업추진단 담당자 ○분이 함께 모여 1차로 잡아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우리 부녀회가 이렇게 마을규약 제출안을 확정하고 마을총회에 올리게 되면 우리는 제주도 아니 전국 최초로 부녀회가 주도하여 마을규약을 성평등하게 바꿔보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리 부녀회, 멋지지 않나요?!

연번	구분	시나리오 내용
		▪ 그럼 지금까지 성평등마을규약을 우리 마을 부녀회에 제안해주고 함께 해오고 계신 사업추진단 담당자께서 성평등마을규약이 뭔지에 대해 설명해주신 후, 간사님께서 본 의결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추진단 담당	▪ 그럼 의결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사업추진단이 도대체 성평등마을규약이란 게 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리를 더 성평등하게~ 우리 부녀회가 마을규약을 고쳐보자!] 라는 제목 이 달린 별첨자료 1페이지를 봐주세요. (별첨 1~4페이지 설명) ▪ 이상으로 사업추진단의 설명을 마치겠구요, 이제 회장님이 말씀주신대로 간사님께서 의결안건 1호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8	간사	▪ 이제 「○○○리 성평등마을규약 관련 부녀회 제출안 확정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리 마을규약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의 마을규약(향약) 제○○조 ○항에 따라 마을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평등마을규약이 되도록 마을규약을 바꾸려면 마을총회에 관련 규약(안)이 의결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하고 그 후 총회에 참석한 마을 분들의 의결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우리 마을 마을규약(향약) 안에 성평등 관련 조항을 추가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우리 부녀회가 조항들을 잘 만들어서 확정 의결하고, 이를 이후 마을총회 안건으로 제출해 보고자 합니다. ▪ 이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아까 보시던 별첨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엔 마을규약 3단 비교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맨 왼쪽은 현재 우리 마을의 마을규약 내용이구요, 중간이 TF팀이 만든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빈 칸은 중간 TF초안을 참고해서 우리 부녀회원들이 최종 규정 조항 문구로 확정한 내용으로 채워질 자리입니다. ▪ 이제 우리 부녀회원들 모두가 표 가운데 안에 적힌 내용들을 꼼꼼히 살피고, 내용이 좋으면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고 좀 걸리는 내용이 있으면 문구 하나하나 바꿔서 우리 부녀회가 마을로 제출할 최종안을 함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표 설명 및 토론) ▪ 부녀회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합의로 ○○○리 성평등마을규약 제·개정을 위한 부녀회 최종 제출안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고자 합니다. (확정 조항별 낭독) ▪ 이제 최종 의결을 위해 진행을 회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	부녀회장	▪ 회원님들, 상정한 마을규약 안에 대하여 마지막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원안 의결 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전 상정한 제 규약안들을 부녀회 명의로 우리 마을총회에 마을규약 개정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참석자 ○○○가 "동의합니다" 외치면) ○○○ 회원님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참석자 ○○○가 "재청합니다" 외치면) ○○○ 회원님께서 재청해주셨으므로 앞서 상정한 제 규약안들을 부녀회 명의로 우리 마을총회에 마을규약 개정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번	구분	시나리오 내용
		(⑵ 수정 의결 시) 이상 수정한 내용대로 다시 조정된 규약안들을 부녀회 명의로 우리 마을총회에 마을규약 개정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참석자 ○○○가 "동의합니다" 외치면) ○○○ 회원님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참석자 ○○○가 "재청합니다" 외치면 ○○○ 회원님께서 재청해주셨으므로 앞서 수정 상정한 제 규약안들을 부녀회 명의로 우리 마을총회에 마을규약 개정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부녀회장	▪ 이제 마을 TF는 본 의결을 바탕으로 조속히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관련 일정을 차질없게 추진하겠으니 이후 여기 참석하신 회원님 모두 서명에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마을총회, 우리 부녀회는 전원 참석하여 우리가 낸 마을규약 안이 제대로 잘 통과되도록 파이팅 해봅시다! ▪ 또 올 가을, 우리 마을 뿐 아니라 2개 마을에서 성평등마을규약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마을들이 모두 모여 결과보고회를 한다고 하니 이 자리에 우리 부녀회원들도 많이 참석해서 다른 마을 이야기도 듣고 서로 축하 격려해주면 어떨까요? 많이많이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 회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성평등마을규약(마을총회 제출안) 확정 등을 위한 ○○○리 부녀회 임시모의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간사에게 이후 진행 안내를 넘기겠습니다.
11	간사	▪ 이제 전체 기념사진을 찍고 맛있는 야식을 함께 먹고자 하오니 모든 참석자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와 자리를 정돈하고 촬영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사진촬영)** ▪ 감사합니다. (종결)

출처: 제주여민회(2019). '2019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마련 및 공론화 사업 결과'. p.92-96.

【부록 3】 주민 욕구조사 설문지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 욕구조사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 방안을 위한 주민 욕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제주도내 성평등마을운영규약 개정 시범마을에 참여했던 8개 행정리 주민을 대상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그에 대한 주민 요구 파악을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처리 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연구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1년 8월

○ 조사대상 : 제주지역 성평등마을운영규약 개정 시범마을 주민
○ 연구/조사기관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책임연구 : 손태주 연구위원 ☎ 064-720-4914 E-mail : stj@jewfri.kr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

수집 목적 및 개인정보항목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 욕구조사
보유기간 및 개인정보 파기	연구수행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후 즉시 파기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응답자이름		**응답자연락처**	
조사원		**조사일시**	2021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응답자 일반적 특성

SQ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여성 ② 남성

SQ3. 귀하께서 살고 계신 마을은 어디입니까?

① 한림3리 ② 금악리 ③ 대평리 ④ 월정리

⑤ 신도1리 ⑥ 신도3리 ⑦ 신산리 ⑧ 난산리

SQ4. 귀하는 「마을의 중요 의사결정」관련 다음 사항에 대해 참여 수준은 어떻습니까?

마을공동체 조직 참여 수준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1) 마을의결기구(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등)	①	②	③	④
(2) 자생단체(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①	②	③	④
(3) 주민공동체(기존 자생단체 외 자발적 참여 조직)	①	②	③	④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 다음은 평소 귀하가 생각하는 마을의 생활환경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다음의 생활복지 시설 가운데 귀하의 마을에 있는지 여부와 접근성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 유무 및 접근성 수준	1-1. 있는지 유무		1-2.('있다' 응답자) 접근성 수준			
	있다 (☞문1-2로)	없다 (☞문2로)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1) 복지회관	①	②	①	②	③	④
(2) 여성회관	①	②	①	②	③	④
(3) 경로당	①	②	①	②	③	④
(4) 마을회관	①	②	①	②	③	④
(5) 돌봄시설(보육 및 노인시설 등)	①	②	①	②	③	④
(6) 보건지소(보건소)	①	②	①	②	③	④
(7) 병·의원	①	②	①	②	③	④
(8) 약국	①	②	①	②	③	④

문2. 귀하가 현재 마을 생활에서 겪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 2순위 ( )

① 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불안하다
② 교육, 보육, 노인 등 교육 및 돌봄시설 여건이 부족하다
③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건강시설 여건이 불편하다
④ 문화, 여가, 체육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접근성이 낮다
⑤ 다양한 주민공동체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
⑥ 주민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갈등이 있다
⑦ 기타( )

문3. 마을에서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귀하의 마을에서는 어떻게 대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마을의 공동 대응팀에서 해결	② 가족 또는 이웃(친구)들 간에 해결
③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	④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
⑤ 잘 모르겠음	⑥ 기타( )

성평등마을에 대한 인식

※ 다음은 평소 귀하가 생각하는 성평등마을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이 다른 마을에 비해 농가소득 및 재산에 대한 여성 소유권 인정, 마을 운영에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인정,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정 등 성평등마을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문5. 다음의 사항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일치하는 번호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 마을에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	전혀 필요없다	거의 필요없다	조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남성 중심적인 마을의 의사결정 구조	①	②	③	④
(2) 여성의 단체 및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비협조적 문화	①	②	③	④
(3) 마을 의사결정기구에서 낮은 여성비율 (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등)	①	②	③	④
(4) 마을 일에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구분되는 경향	①	②	③	④
(5) 가사 및 육아에 남성의 낮은 참여 경향	①	②	③	④
(6) 이주민, 한부모, 비혼 등에 대한 차별적 시선	①	②	③	④
(7)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 등에 무관심	①	②	③	④

시범마을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요구

※ 다음은 성평등마을규약 개정 시범마을에 대한 귀하의 인식 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평등마을규약」은 원래 귀하가 살고 있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기존 마을규약(향약)에다가,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게 민주적이고 평등한 마을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을 추가하여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된 표준안입니다.

구분	성평등마을규약 표준 조항(안)
목적	본 향약(규약)은 주민 스스로가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녀노소 마을 주민 모두가 평등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	모든 주민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마을의 모든 의사결정에

권리	서 배제되지 않고,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권리
주민 의무	모든 주민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연령·성별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의무
의결권·선거권	마을 내 의결권·선거권은 1인 1표를 기본으로 한다.
마을임원조직	개발위원회 구성 시 남녀 평등한 참여를 위해 위촉직 개발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외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문6. 귀하는 성평등마을규약 개정 시범마을 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문6-1번** 문항으로) ② 없다 (☞**문7번** 문항으로)

문6-1. (문6에서 '있다' 응답자) 참여했다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까?

① 성평등규약만들기 사업 TF팀 ② 성평등마을프로그램 영화보기
③ 성평등(성인지 감수성) 교육 ④ 기타( )

「성평등마을규약 개정」 시범마을 사업은 현재 대부분 **「마을규약」**들이 평등한 마을운영을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확대 등 요즘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구분되는 경향이 뚜렷해, 여성들의 입장과 생각들이 전체 마을 운영에 제대로 잘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전국 최초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효과는 마을에서의 여성 과소대표성 문제를 개선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문7. 귀하는 현재 마을규약(향약)을 시대흐름에 맞게 성평등마을규약으로 제(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 있다 (☞**문7-1번** 문항으로) ② 필요 없다 (☞**문7-2번** 문항으로)

문7-1. (문7에서 '필요 있다' 응답자) 제(개)정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1인 1투표제 등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남녀 평등한 권리 보장
② 마을 의결기구의 여성비율 30% 이상(개발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등)
③ 주민 권리 및 의무 보장(모든 계층과 세대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내용 반영)
④ 성 역할을 구분하거나 규정하는 조항 삭제

문7-2. (문7에서 '필요 없다' 응답자) 제(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성평등 마을 '선언'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② 전통적인 자치 규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
③ 민주적인 의사결정 등 마을 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④ 성평등마을 규약 개정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⑤ 기타 ( )

문8. 「성평등 마을」관련 다음 사항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과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민주적 마을 운영(성평등마을규약, 주민총회 등)	①	②	③	④
(2) 마을공동체와 주민의 성인지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3)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생활환경 조성	①	②	③	④
(4) 주민 공동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①	②	③	④

문9. 귀하는 「성평등 마을」을 확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주도정의 정책적 지원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마지막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보고서 2021-12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 방안

- 성평등규약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

발 행 일 2021년 11월 26일

발 행 인 민 무 숙

발 행 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오로 89, 3층

☎064-720-4914, Fax.064-711-2350

www.jewfri.kr

인 쇄 사 참디자인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ISBN : 979-11-87026-75-4

제주지역 성평등마을 활성화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63145 제주시 연오로 89(연동) 3층
jewfri@jewfri.kr www.jewfri.kr

93330
9 791187 026754
ISBN 979-11-87026-75-4